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2015 디자인전문회사 피해실태조사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목차

Chapter 1. 조사개요	1
1.1 조사 목적 및 내용	2
1.2 응답기업 일반현황	3
Chapter 2. 피해실태 종합	7
2.1 디자인 전문회사 피해 현황	8
2.2 피해 대처방법	15
2.3 피해대응 희망제도	17
Chapter 3. 피해 실태별 분석	21
3.1 불공정거래 관련 피해	22
3.1.1 총괄	22
3.1.2 피해유형별 분석	25
3.1.3 분쟁대상별 분석	52
3.2 지식재산권 관련 피해	58
3.2.1 총괄	58
3.2.2 피해유형별 분석	60
3.2.3 분쟁대상별 분석	70
Chapter 4. 기타	71
4.1 피해가 아닌 디자인개발 진행과정상 발생한 사례	72
부록1 실태조사 설문지	76
부록2 통계표	84

Chapter 1

조사개요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1

1.1 조사목적 및 내용

1.2 응답기업 일반현황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1.1 조사목적 및 내용

□ 조사의 목적

2015 디자인전문회사 피해실태조사는 디자인전문회사의 정확한 피해 실태 파악을 통한 효과적인 정책수립 건의와 디자인산업 발전방향 모색을 위해 수행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를 통해 디자인 전문회사의 일반현황 및 디자인 전문회사의 프로젝트 수행 관련, 불공정거래, 지적권 분쟁 사례 등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디자인 전문회사의 피해를 예방하고 발전적인 <디자인기업 피해지원센터>를 만들기 위한 초석이 되는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 조사의 내용

2015 디자인전문회사 피해실태조사에서는 디자인전문회사의 피해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제 디자인 전문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CEO 및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모집단) 전국 디자인전문회사(4,902개사)
- (표본크기) 303개사
- (조사기간) 2015년 7월 6일 ~ 7월 31일
- (조사목적) 디자인전문회사를 대상으로 피해실태 파악
- (자료수집 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설문조사 및 전화, FAX, E-Mail 조사 병행 실시
- (표준오차) ± 0.0528 (신뢰수준 95%)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1.2 응답기업 일반현황

□ 응답기업 현황 및 지역적 분포

2015 디자인전문회사 피해실태조사의 응답 기업은 총 303개 기업이었으며, 그 중 수도권지역에 위치해 있는 기업이 총 191개 업체로 전체의 63.0%를 차지하였습니다. 수도권 지역 이외에는 경상권(15.2%), 호남권(11.6%), 충청강원권(7.9%), 제주(2.3%)에 소재한 기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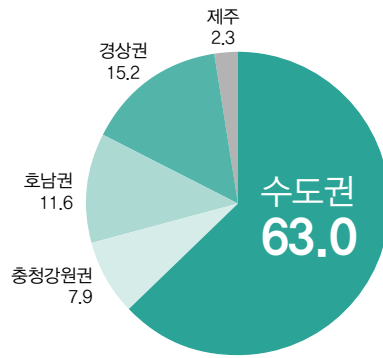


그림 1
응답기업
지역적 분포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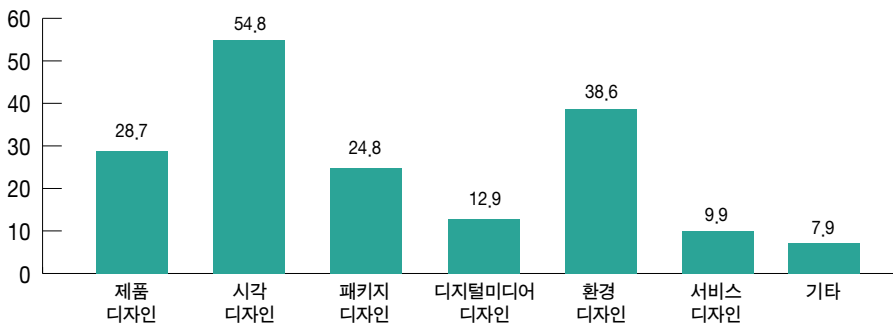
참고 :
〈표-부록2-1〉
응답기업
일반현황, 84p

□ 디자인전문회사 유형별 분포도

유형별 분포도를 살펴보면 시각디자인 기업이 54.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환경디자인 38.6%, 제품 디자인 28.7%, 패키지 디자인 24.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디자인전문회사들은 평균 1.8개의 디자인 분야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호남권과 경상권의 경우에는 평균 2.0개의 디자인 분야에 종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림 2 디자인전문회사 유형별 분포도

(단위 : %)



참고 : 〈표-부록2-2〉 디자인전문회사 유형별 분포도, 84p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 매출액 규모별 현황

매출규모별로는 10억원 이상 기업이 전체의 31.7%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22.1%),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21.5%),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19.1%), 1억원미만(5.6%)순으로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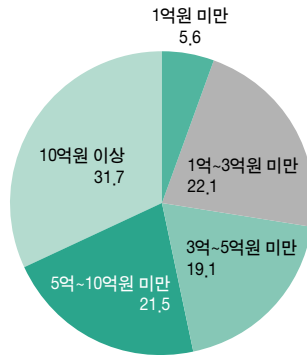


그림3
응답기업
매출규모별 특성

(단위 : %)

참고 :
〈표-부록2-1〉
응답기업
일반현황, 84p

□ 종사자 규모별 현황

종사자수 규모별로는 5인 이하 기업이 전체의 38.9%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6인 이상 10인 미만(31.4%), 11인 이상 20인 이하(20.5%), 21인 이상(9.2 %)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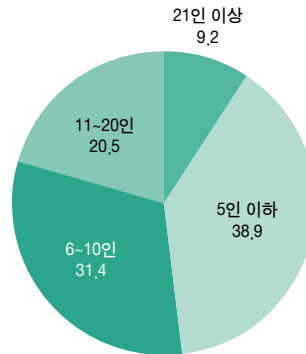


그림4
응답기업
종사자 수별 특성

(단위 : %)

참고 :
〈표-부록2-1〉
응답기업
일반현황, 84p)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Chapter 2

피해실태 종합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2

21 디자인 전문회사 피해 현황

22 피해 대처방법

23 피해대응 희망제도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2.1 디자인 전문회사 피해 현황

□ 디자인개발 프로젝트 수행시의 피해 종합

설문 결과, 참여한 전체 303개 디자인 전문회사 중 158개사(52.1%)가 디자인 개발 프로젝트 수행 시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지난 2012년 설문결과(59.0%)의 피해경험 수치와 비교하였을 때, 피해의 규모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피해경험 기업 비율이 59.2%로 가장 높았고, 기업규모별로는 3~5억 규모 기업의 피해비율이 72.4%로 매우 높았으며, 종사자규모별로는 5명 이하 기업의 피해비율이 64.4%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디자인전문회사들은 지난 1년(2014년) 동안 본 조사를 위해 정의되어 있는 17종류의 피해 유형 중 평균 10종류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형별로 평균 2.3회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디자인 전문회사들이 연간 수행하는 프로젝트 수를 감안하여 추산하여 본다면 1회의 프로젝트 수행 시 여러 건의 피해를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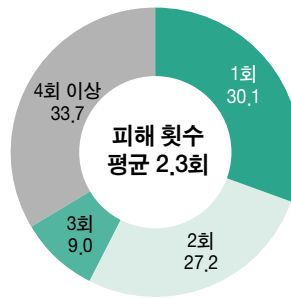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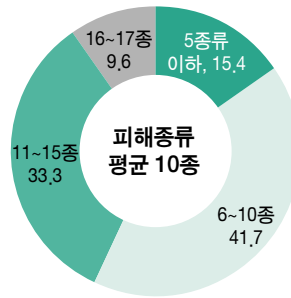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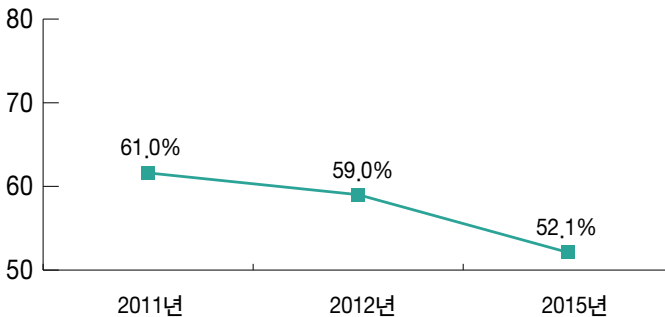


그림6
디자인 개발 프로젝트 수행 시 경험한 피해 종류 및 평균 피해경험 횟수
(단위 : %)

참고 :
〈표-부록2-4〉
디자인 피해유형 경험 종류, 85p
〈표-부록2-4-1〉
디자인 피해경험 횟수, 86p

그림5 디자인 개발 프로젝트 수행 시 피해를 입은 경험 유무 추이 (단위 : %)



(참고 : 〈표-부록2-3〉 디자인개발 프로젝트 수행 시 피해를 입은 경험 유무, 85p)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이번 조사에 참여한 기업들의 응답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응답기업들의 총 피해비용은 약 400억 원 규모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디자인전문회사 4,902개(한국디자인진흥원 신고업체에 한함)으로 짐작할 때, 디자인 분쟁으로 인한 지난 1년간 발생한 피해금액은 약 6,078.9억여원으로 추산될 수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디자인 전문회사들은 연간 평균 약 1.2억원의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 규모는 지난 2012년 조사에서 추산한 2,724억여원에 비해 약 2.2배 증가된 수치이며, 이는 전체 모집단의 증가(3023업체 → 4,902업체) 및 이에 따른 조사 업체수가 증가(148개 업체 → 303개 업체)하면서 피해 금액이 크게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지난번 조사에 비해 피해유형이 추가로 정의되었고, 한 번의 프로젝트에서 여러 건의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금액이 중복 집계되었기 때문에 실제 피해규모는 조사를 통해 추정된 규모에 비해 적어질 수 있습니다.

표1 디자인 개발 프로젝트 수행 시 피해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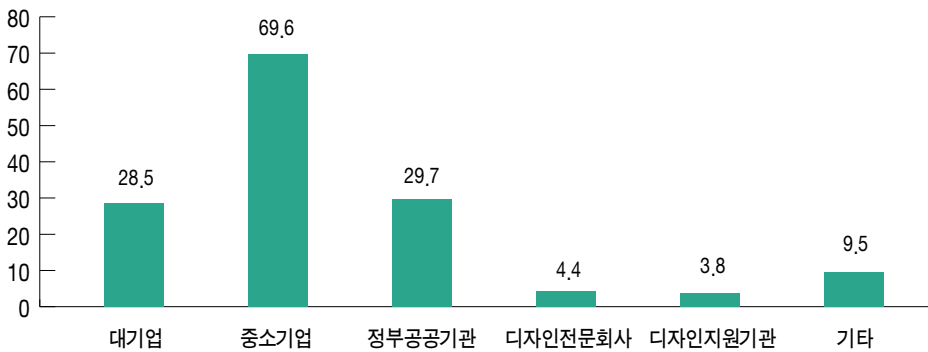
(단위 : 개, %, 억원)

	피해기업 수	피해비율	피해금액	
			응답금액(억원)	전체추정(환산) 금액(억원)
전체	(158)	52.1	400.5	6,078.9
구두계약 후 계약서 미비로 인한 비용결제 거부	(90)	29.7	25.3	384.0
중도계약 해지 시 소요된 비용 불인정	(97)	32.0	20.2	303.9
일방적 해지로 인한 타 프로젝트 수행기회 상실	(80)	26.4	32.5	492.5
제안서 제출 후 프로젝트 무산 관련 일방적 통보	(110)	36.3	39.7	603.0
시안경쟁PT 리젝트피 미지급	(117)	38.6	26.2	398.0
계약 후 무리한 디자인 개발 방향변경 및 수정 요청	(129)	42.6	45.8	694.4
계약과 상관없는 별도의 개발 요구	(127)	41.9	33.8	513.0
결과물 납품 후 결과물에 대한 추가 요구	(106)	35.0	28.4	431.1
프로젝트 완료 후 개발비 지급 지연 및 거부	(89)	29.4	35.7	541.5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불인정	(91)	30.0	33.0	501.3
규정 책임한도를 벗어난 지식재산권 저촉문제 배상요구	(19)	6.3	3.9	58.4
경쟁입찰에 제출한 시안의 무단 도용	(75)	24.8	38.1	577.5
계약조항 외의 지식재산권 양도 요구	(74)	24.4	37.3	565.8
과도한 항응접대 요구	(48)	15.8	9.6	14.5

특히 계약 후 무리한 디자인 개발 방향 변경 및 수정요청의 피해비율이 42.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피해 금액 또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년간 분쟁이 있었던 상대방의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응답을 종합하여 분석해보면 중소기업과 분쟁이 있었던 경험이 있는 비율이 69.6%로 가장 많았고, 대기업은 28.5%로 나타났습니다.

그림7 지난 1년간 분쟁이 있었던 상대방_1+2+3+4순위(복수응답) (단위 : %)



참고 : <표-부록2-5> 지난 1년간 분쟁이 있었던 상대방_1+2+3+4순위(복수응답), 88p

□ 불공정거래 피해

디자인개발 프로젝트 수행 시 피해 중 불공정거래 피해를 경험한 기업의 비율은 전체의 51.5%로 나타났습니다. 불공정 거래는

1. 일방적으로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2. 터무니없이 싸게 팔거나 혹은 비싸게 구입하여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
3. 지위의 우월함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변경하는 행위 등을 의미합니다.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불공정 거래 피해를 경험한 디자인전문기업들의 경우에는 지난 1년간(2014년도) 평균 8.9종의 불공정 거래 피해를 경험했고, 피해횟수는 평균 2.3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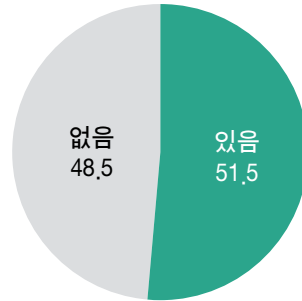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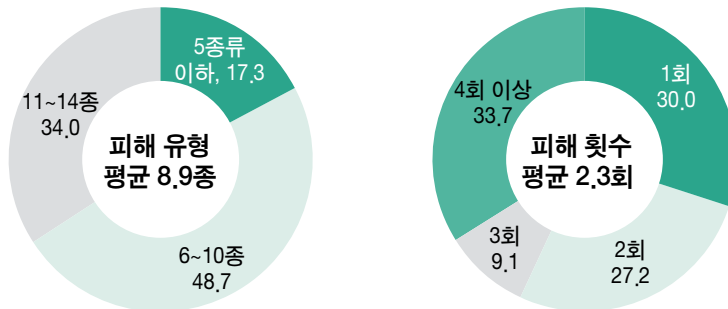
그림8
불공정거래 피해유무
(단위 : %)

참고 : <표2> 불공정거래 피해금액, 12p

조사를 통해 응답된 불공정거래 피해 금액은 총 330.2억여원이었으며, 국내 디자인전문회사 4,902개(한국디자인진흥원 신고업체에 한함)으로 짐작할 때, 불공정 거래로 인한 지난 1년간 발생한 피해 추산금액은 약 4,877.2억여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디자인 전문회사들은 연간 평균 약 1억원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그림9 불공정거래 피해유형 경험 종류 및 피해 횟수

(단위 : %)



참고 : <표-부록2-4-2> 디자인 피해유형 경험 종류 - 불공정거래, <표-부록2-4-3> 디자인피해경험 횟수-불공정거래, 86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표2 불공정거래 피해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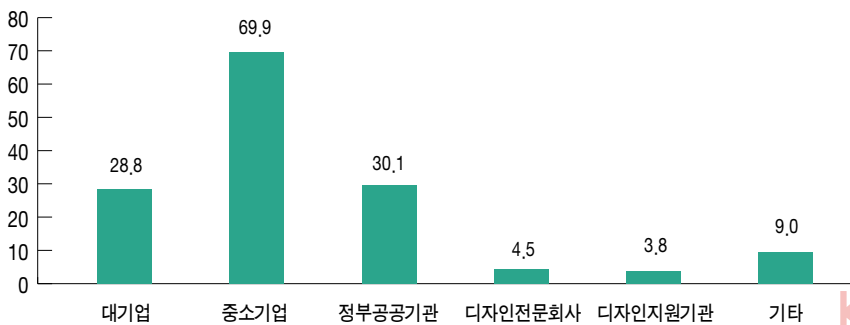
(단위 : 개, %, 억원)

	피해기업 수	피해비율	피해금액	
			응답금액(억원)	전체추정(환산) 금액(억원)
전체	(156)	51,5	330,2	4,877,2
구두계약 후 계약서 미비로 인한 비용결재 거부	(90)	29,7	25,3	384,0
중도계약 해지 시 소요된 비용 불인정	(97)	32,0	20,2	303,9
일방적 해지로 인한 타 프로젝트 수행기회 상실	(80)	26,4	32,5	492,5
제안서 제출 후 프로젝트 무산 관련 일방적 통보	(110)	36,3	39,7	603,0
시간경쟁PT 리젝트피 미지급	(117)	38,6	26,2	398,0
계약 후 무리한 디자인 개발 방향변경 및 수정 요청	(129)	42,6	45,8	694,4
계약과 상관없는 별도의 개발 요구	(127)	41,9	33,8	513,0
결과물 납품 후 결과물에 대한 추가 요구	(106)	35,0	28,4	431,1
프로젝트 완료 후 개발비 지급 지연 및 거부	(89)	29,4	35,7	541,5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불인정	(91)	30,0	33,0	501,3
과도한 항응접대 요구	(48)	15,8	9,6	14,5

불공정거래 피해 경험시의 분쟁 대상은 중소기업인 경우가 69.9%로, 약 2/3에 해당하는 디자인 기업들이 중소기업과의 분쟁을 경험하였습니다. 대기업과의 분쟁경험 비율은 28.8%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림10〉 불공정거래 피해경험 대상

(단위 : %)



(참고 : <표-부록2-5-2> 지난 1년간 분쟁이 있었던 상대방_1+2+3+4순위(복수응답) - 불공정거래, 89p)

□ 지재산권 관련 피해

디자인개발 프로젝트 수행 시 피해 중 지식재산권 관련 피해를 경험한 기업의 비율은 전체의 35.0%로 나타났습니다. 지식재산권은 발명, 상표, 의장 등의 산업재산권과 문학·음악·미술 작품 등에 관한 저작권의 총칭으로 저작권법,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특허법, 상표법, 발명보호법 등을 통해 보호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지식재산권으로 인한 피해는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보다 낮은 수준으로 집계되었지만, 최근 지식재산권의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지식재산권에 대한 분쟁이 보다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공정한 디자인 산업환경 조성을 위해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식재산권 피해를 경험한 디자인 전문기업들은 평균 1.6종의 피해를 경험하였고 피해 횟수는 평균 2.4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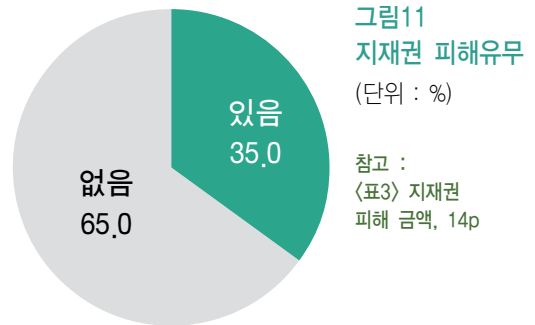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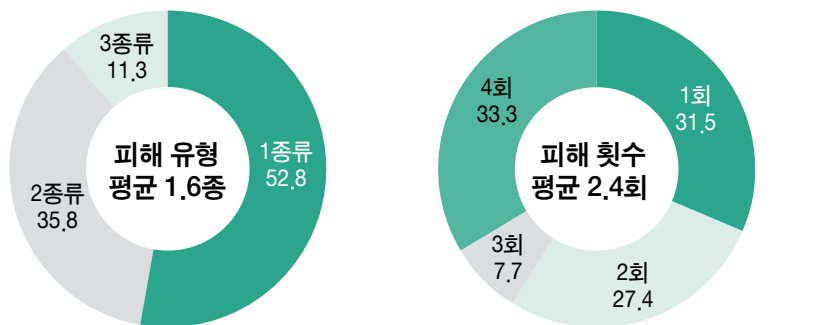


그림12 불공정거래 피해유형 경험 종류 및 피해 횟수



(참고 : <표-부록2-4-4> 디자인 피해유형 경험 종류 - 지재산권, <표-부록2-4-5> 디자인피해경험 횟수-지재산권, 87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지식재산권 피해로 인한 피해금액은 총 79.3억여원으로 조사되었으며, 국내 디자인전문회사 4,902개(한국디자인진흥원 신고업체에 한함)으로 짐작할 때, 디자인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피해 금액은 총 1,201억여원으로 추산됩니다. 이를 감안하면 디자인 전문회사들은 연간 평균 약 2400만원의 지식재산권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표3 지재권 피해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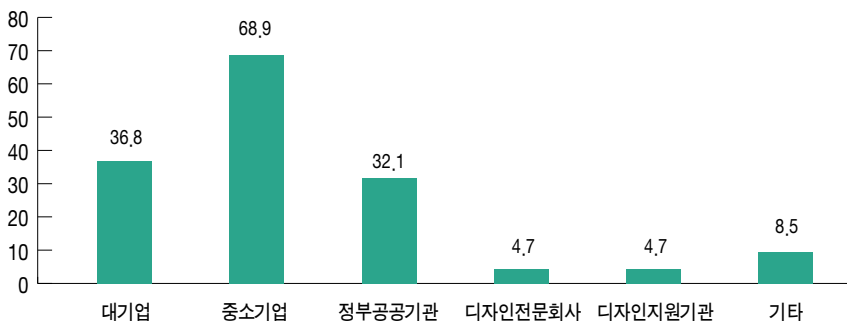
(단위 : 개, %, 억원)

	피해기업 수	피해비율	피해금액	
			응답금액(억원)	전체추정(환산) 금액(억원)
전체	(106)	35.0	79.3	1,201.7
규정 책임한도를 벗어난 지식재산권 저촉문제 배상요구	(19)	6.3	3.9	58.4
경쟁입찰에 제출한 시안의 무단 도용	(75)	24.8	38.1	577.5
계약조항 외의 지식재산권 양도 요구	(74)	24.4	37.3	565.8

지식재산권 피해 경험시의 분쟁 대상은 중소기업인 경우가 68.9%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대기업과의 피해경험 비율은 36.8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림13 지재권 피해경험 대상

(단위 : %)



(참고 : <표-부록2-5-3> 지난 1년간 분쟁이 있었던 상대방_1+2+3+4순위(복수응답) - 지재권, 89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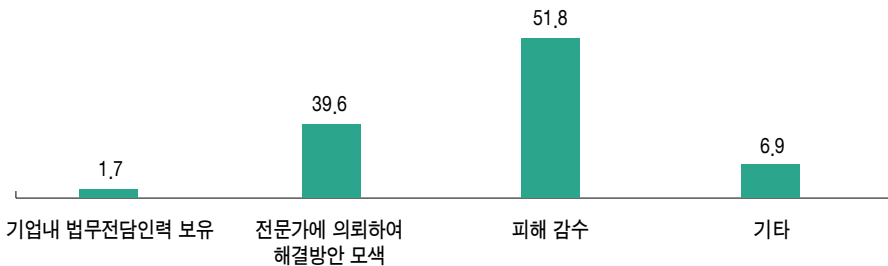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2.2 피해 대처방법

□ 불공정거래 또는 지재권 분쟁 피해 발생 시 대처방안

디자인전문기업들 중 51.8%는 불공정거래 또는 지재권 분쟁시 일방적으로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에 의뢰하여 해결방안을 모색(39.6%)하거나 기업내 법무전담인력을 보유하여 대응(1.7%) 하는 비율은 41.3%에 불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림14 불공정거래 또는 지재권 분쟁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 대처 방안 (단위 : %)



참고 : <표-부록2-6> 불공정거래 또는 지재권 분쟁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 대처방안, 90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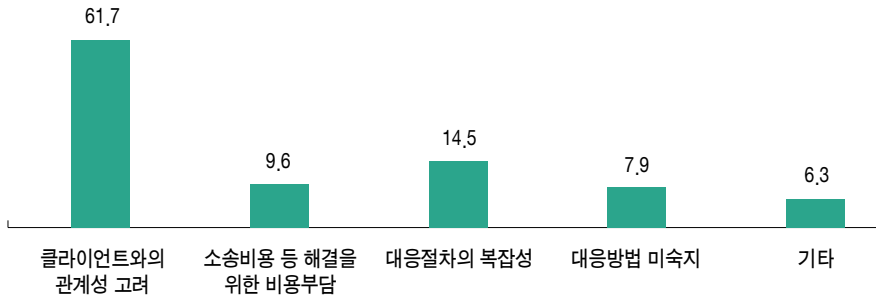
특히 호남권(57.1%)와 수도권(55.5%), 충청강원권(54.2%) 기업들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감수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경상권기업들의 경우에는 전문가에 의뢰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비율이 57.1%로 타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습니다.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매출액 1억 원 미만 기업의 경우에는 응답기업의 약 2/3 수준인 64.7%의 기업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감수하고 있었으며, 3~5억원 규모 기업들의 경우에도 58.6%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종사자 규모별로 살펴보면 종사자 규모가 커질수록 일방적으로 피해를 감수하는 기업의 비율이 감소하여 21명 이상 기업의 경우에는 피해 감수의 비율이 25.0%로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 피해를 감수하는 이유

디자인 전문기업들은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성으로 인해 피해를 감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피해를 감수하는 이유에 대해 61.7%가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성을 고려해서 피해를 감수한다고 응답하였고, 이 외에는 대응절차의 복잡성 14.5%, 소송비용 등 해결을 위한 비용 부담 9.6%, 대응방법 미숙지 7.9%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림15 피해를 감수하는 이유

(단위 : %)



참고 : <표-부록2-7> 피해를 감수하는 이유, 90p

□ 피해를 입었을 때 구제를 위하여 알고 있는 방법이나 타기관 유무

디자인 전문기업들의 피해를 입었을 때 구제를 위하여 알고 있는 방법이나 타 유관기관의 유무에 대해 81.8%가 없다고 응답하여, 대부분이 피해를 입었을 때 구제를 위한 방법이나 관련 기관의 존재여부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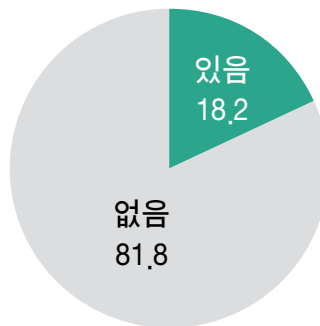


그림16

피해를 입었을 때 구제를 위하여 알고 있는 방법이나 타 유관기관 유무

(단위 : %)

참고 : <표-부록2-8> 피해를 입었을 때 구제를 위하여 알고 있는 방법이나 타 유관기관 유무, 91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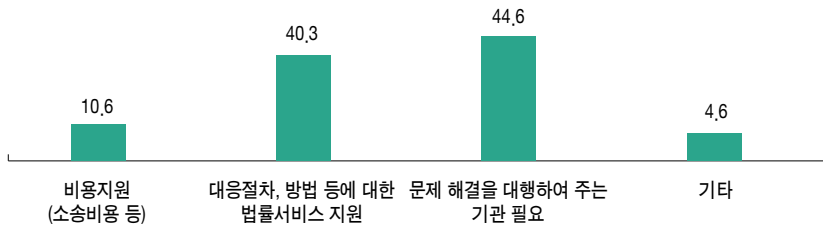
2.3 피해 대응 희망제도

□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

디자인 전문기업들은 디자인 프로젝트 수행 관련 피해 구제를 위해서 문제 해결을 대행하여 주는 기관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에 대해 44.6%가 문제 해결을 대행하여 주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두 번째로는 대응 절차, 방법 등에 대한 법률서비스 지원이 40.3%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종사자 규모 21명 이상 기업의 경우에는 대응 절차, 방법 등에 대한 법률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3.6%로 더 높게 나타나, 기업의 규모와 니즈에 따른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림17〉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

(단위 : %)



(참고 : 〈표-부록2-9〉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 91p)

□ 디자인전문회사 피해예방을 위해 해야 할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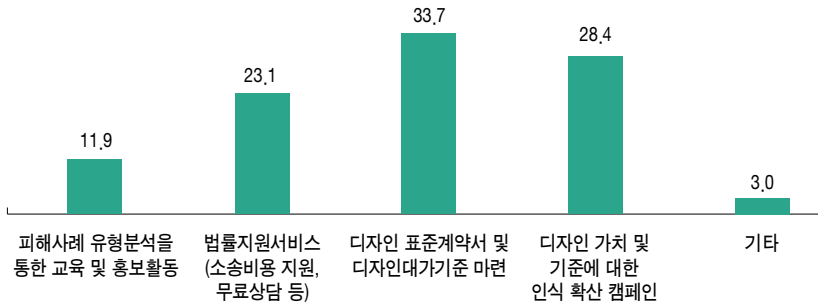
디자인전문회사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디자인 표준계약서 및 디자인 대가기준 마련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디자인전문회사 피해예방을 위해 해야 할 일에 대해 디자인 표준계약서 및 디자인 대가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응답의 비율이 33.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 외에는 디자인 가치 및 기준에 대한 인식 확산 캠페인 28.4%, 법률 지원서비스(소송비용 지원, 무료 상담 등) 23.1%, 피해사례 유형분석을 통한 교육 및 홍보활동 11.9%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그림18〉 디자인전문회사 피해예방을 위해 해야할 일

(단위 : %)



(참고 : 〈표-부록2-10〉 디자인전문회사 피해예방을 위해 해야할 일, 92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Chapter 3

피해 실태별 분석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3

3.1 불공정거래 관련 피해

3.2 지식재산권 관련 피해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3.1 불공정거래 관련 피해

3.1.1 총괄

디자인개발 프로젝트 수행 시 피해 중 불공정거래 피해를 경험한 기업의 비율은 전체의 51.5%로 나타났습니다. 불공정 거래는

1. 일방적으로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2. 터무니없이 싸게 팔거나 혹은 비싸게 구입하여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
3. 지위의 우월함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변경하는 행위 등을 의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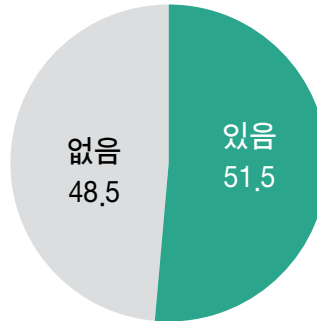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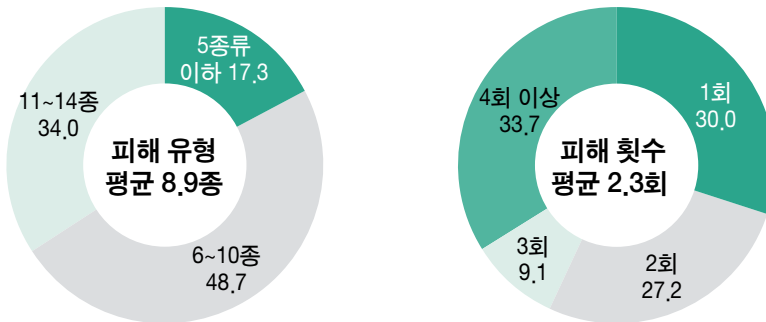
그림19
불공정거래
피해유무
(단위 : %)

참고 :
〈표4〉 불공정거래
피해금액, 23p

불공정 거래 피해를 경험한 디자인전문기업들의 경우에는 지난 1년간(2014년도) 평균 8.9종의 불공정 거래 피해를 경험했고, 피해횟수는 평균 2.3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림20〉 불공정거래 피해유형 경험 종류 및 피해 횟수

(단위 : %)



참고 : 〈표-부록2-4-2〉 디자인 피해유형 경험 종류 - 불공정거래, 〈표-부록2-4-3〉 디자인피해경험 횟수-불공정거래, 86p

조사를 통해 응답된 303개 업체의 불공정거래 피해 금액은 총 330.2억여원이었으며, 국내 디자인전문회사 4,902개(한국디자인진흥원 신고업체에 한함)으로 비례환산 하면, 불공정 거래로 인한 지난 1년간 발생한 피해 추산금액은 약 4,877.2억여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피해 금액이 1~2억 내외인 기업의 비율이 27.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5억 내외 19.6%, 5천만원~1억 16.5% 순이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디자인 전문회사들은 연간 평균 약 1억원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모집단의 증가(3023업체 → 4,902업체) 및 이에 따른 조사 업체수가 증가(148개 업체 → 303개 업체)하면서 피해 금액이 크게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한 번의 프로젝트에서 겪은 피해가 중복된 사유로 인한 경우가 많기에 피해 금액이 사유 별로 중복 집계될 수 있어 실제 피해규모는 조사를 통해 추정된 규모에 비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표4 불공정거래 피해 금액

(단위 : 개, %, 억원)

	피해기업 수	피해비율	피해금액	
			응답금액(억원)	전체추정(환산) 금액(억원)
전체	(156)	51.5	330.2	4,877.2
구두계약 후 계약서 미비로 인한 비용결재 거부	(90)	29.7	25.3	384.0
중도계약 해지 시 소요된 비용 불인정	(97)	32.0	20.2	303.9
일방적 해지로 인한 타 프로젝트 수행기회 상실	(80)	26.4	32.5	492.5
제안서 제출 후 프로젝트 무산 관련 일방적 통보	(110)	36.3	39.7	603.0
시안경쟁PT 리젝트피 미지급	(117)	38.6	26.2	398.0
계약 후 무리한 디자인 개발 방향변경 및 수정 요청	(129)	42.6	45.8	694.4
계약과 상관없는 별도의 개발 요구	(127)	41.9	33.8	513.0
결과물 납품 후 결과물에 대한 추가 요구	(106)	35.0	28.4	431.1
프로젝트 완료 후 개발비 지급 지연 및 거부	(89)	29.4	35.7	541.5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불인정	(91)	30.0	33.0	501.3
과도한 항응접대 요구	(48)	15.8	9.6	1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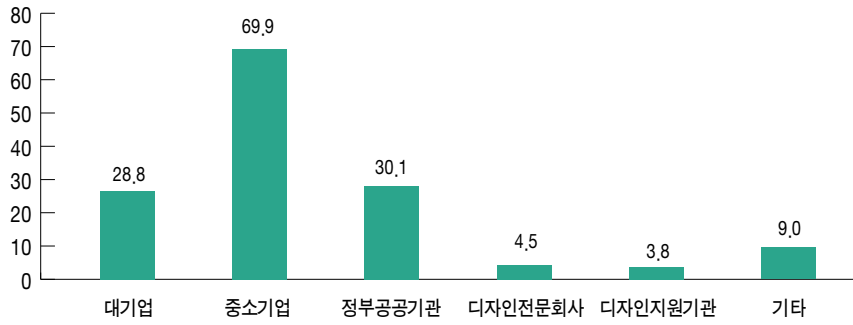
불공정거래 피해 경험시의 분쟁 대상은 중소기업인 경우가 69.9%로, 약 2/3에 해당하는 디자인 기업들이 중소기업과의 분쟁을 경험하였습니다. 대기업과의 분쟁경험 비율은 28.8%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그림21 불공정거래 피해경험 대상

(단위 : %)



참고 : <표-부록2-5-2> 지난 1년간 분쟁이 있었던 상대방_1+2+3+4순위(복수응답) - 불공정거래, 89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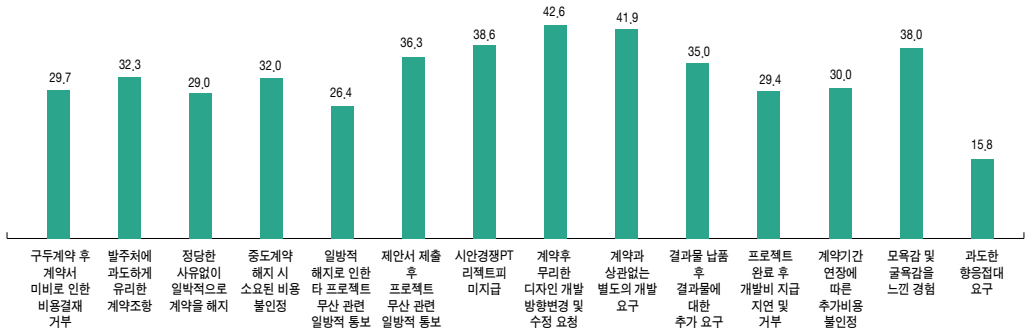
3.1.2 피해 유형별 분석

3.1.2.1 종합

디자인 전문기업들이 겪은 불공정거래 피해 유형별 피해비율을 살펴보면 계약 후 무리한 디자인 개발 방향 변경 및 수정요청의 피해 비율이 42.6%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외에도 계약과 상관없는 별도의 개발을 요구하는 경우가 41.9%, 시안경쟁 PT 리젝트피 미지급 38.6%, 클라이언트로부터 모욕감 및 굴욕감을 느낀 경험 38.0% 등이 높게 나타나, 관련 피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림22〉 불공정거래 피해유형별 피해 비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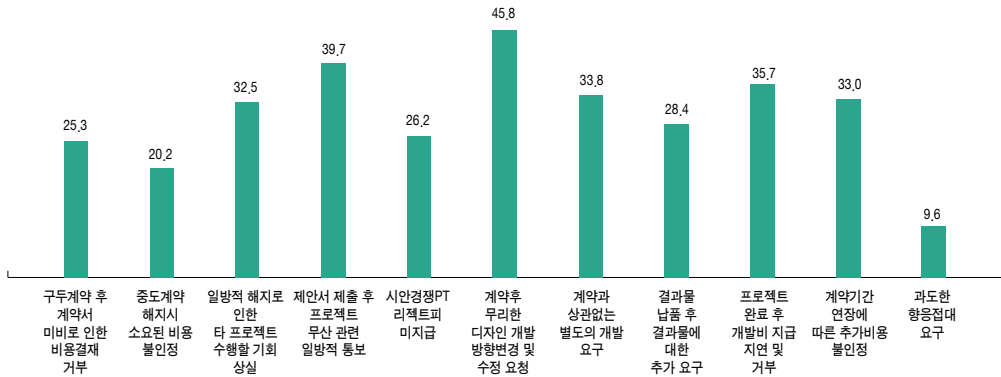


(참고 : 92p~124p의 통계표 중 불공정거래 관련 피해경험 유무 비율만 집계)

불공정거래 피해 금액 또한 계약 후 무리한 디자인 개발 방향 변경 및 수정요청의 피해 금액이 45.8억원으로 많았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제안서 제출 후 프로젝트 무산 관련 일방적 통보로 인한 피해금액이 39.7억원으로 많았습니다.

그림23 불공정거래 피해유형별 피해 금액

(단위 : %)



참고 : <표-4> 불공정거래 피해금액, 23p

3.1.2.2 계약체결 관련 피해 현황

□ 구두계약으로 진행 후 계약서 미비로 인해 비용결제 거부

디자인전문기업 중 구두계약으로 진행 후 계약서 미비로 인해 비용결제를 거부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비중은 전체 응답기업 중 29.7%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수도권 기업의 피해비율이 34.6%로 높게 나타났고, 매출액 규모별로는 3~5억원 미만 기업의 피해비율이 39.7%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종사자 규모별로는 5인 이하 기업의 피해비율이 36.4%로 가장 높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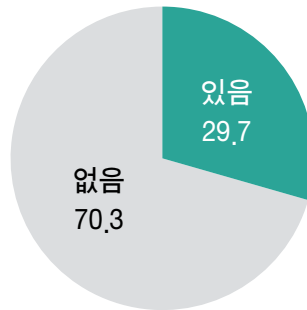


그림24 구두계약 진행 후 계약서 미비로 인해 비용결제 거부 피해 경험 유무

(단위 : %)

참고 : <표-부록2-11> 구두계약 진행 후 계약서 미비로 인해 비용결제 거부 피해 경험 유무, 92p

피해 경험 횟수는 1회, 2회의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중이 각각 38.9%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기업들은 피해를 1회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39.4%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경상권의 경우에는 피해를 2회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70.0%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기업규모별로는 매출액 5~10억 미만 업체들의 경우 피해를 1회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1~3억원 미만 업체들의 경우에 피해를 2회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직원규모별로 살펴보면 5인 이하 규모 기업의 경우에는 1회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6인~10인의 기업인 경우에는 2회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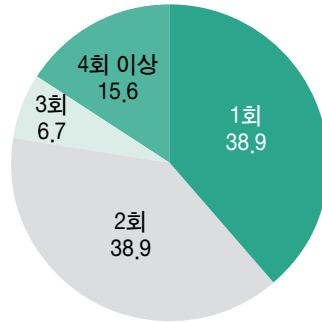


그림25
구두계약 진행 후 계약서 미비로 인해 비용결제 거부 피해 경험 횟수
(단위 : %)

참고 :
〈표-부록2-12〉
구두계약 진행 후 계약서 미비로 인해 비용결제 거부 피해 경험 횟수, 93p

구두계약으로 진행 후 계약서 미비로 인해 비용결제를 거부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경우 피해금액은 5백만원~2천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8.9%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호남권 기업들은 피해금액이 5백만원~2천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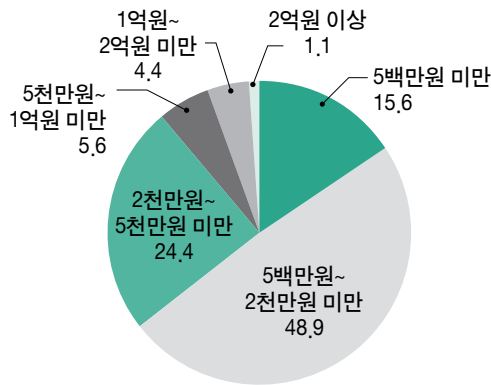


그림26
구두계약 진행 후 계약서 미비로 인해 비용결제 거부 총 피해비용
(단위 : %)

참고 :
〈표-부록2-13〉
구두계약 진행 후 계약서 미비로 인해 비용결제 거부 총 피해비용, 93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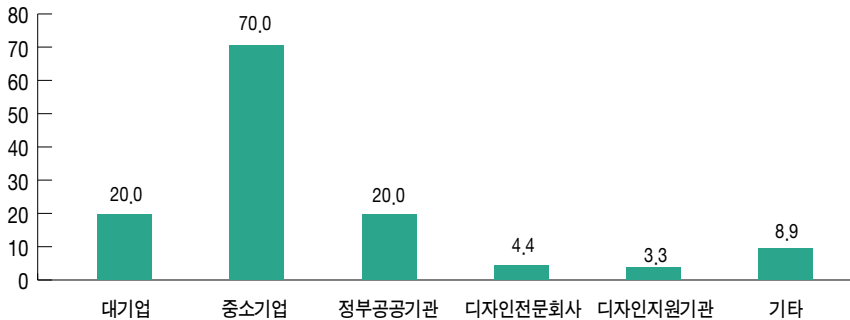
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5.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외에는 피해금액이 2천만원~5천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기업규모별로는 매출액 5억원~10억원 미만 기업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기업규모에서 피해금액이 5백만원~2천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직원규모별로 살펴보면 6~10명 규모 기업의 경우에는 피해금액이 2천만원~5천만원 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를 제외한 규모의 경우에는 5백만원~2천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구두계약으로 진행 후 계약서 미비로 인해 비용결제를 거부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과의 분쟁경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대기업, 정부공공기관과

의 분쟁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기업에서 중소기업과의 분쟁 경험이 가장 많았다고 응답했고, 기업규모별 및 직원규모별로는 모든 기업규모에서 중소기업과의 분쟁 경험이 가장 많았다고 응답되었습니다.

〈그림27〉 구두계약 진행 후 계약서 미비로 인해 비용결제 거부 분쟁대상 (단위 : %)



(참고 : 〈표-부록2-14〉 구두계약 진행 후 계약서 미비로 인해 비용결제 거부 분쟁 대상, 94p)

□ 계약서 작성시 용역발주처에게 유리한 계약 조항을 요구당한 경험

디자인 피해기업 중 계약서 작성시 용역 발주처에게 과도하게 유리한 계약 조항을 요구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비율이 전체 응답기업 중 32.3%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기업의 피해 비율이 37.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매출액 규모별로는 3~5억원 규모 기업의 피해비율이 50.0%로 절반의 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종사자 규모별로는 5인 이하 기업의 피해 비율이 40.7%로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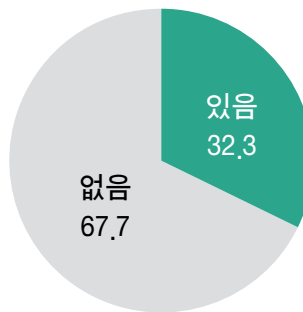


그림28
계약서 작성시
용역발주처에게
과도하게 유리한
계약조항 요구당한
경험 유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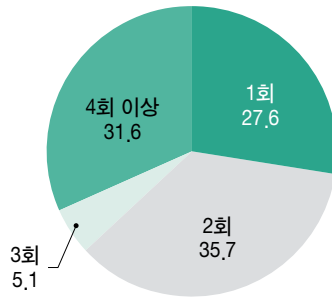
참고 :
〈표-부록2-15〉 계약서
작성시 용역발주처에 과
도하게 유리한 계약조항
요구당한 경험 유무, 94p

계약서 작성시 용역발주처에게 과도하게 유리한 계약조항을 요구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중 2회의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중이 35.7%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상권 기업들은 피해를 2회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44.4%로 가장 높



게 나타났고, 호남권의 경우에는 피해를 1회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55.6%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기업규모별로는 매출액 1억~3억원 미만 업체들의 경우 피해를 4회 이상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47.1%로 가장 높았고, 10억원 이상 기업들의 경우에 피해를 2회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림29〉 계약서 작성시 용역발주처에게 과도하게 유리한 계약조항 요구당한 경험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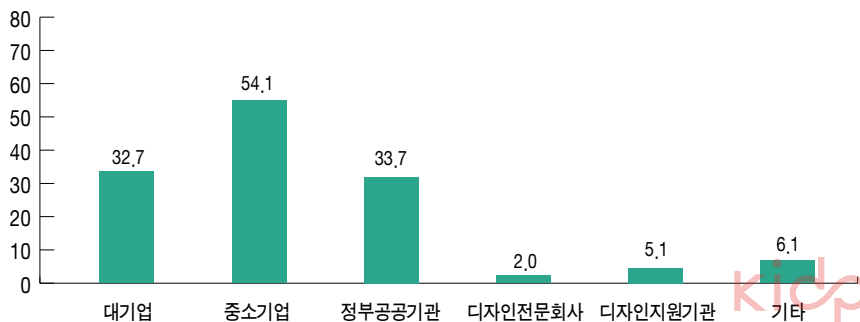
(단위 : %)

참고 :

〈표-부록2-16〉 계약서 작성시 용역발주처에 과도하게 유리한 계약조항 요구당한 경험 횟수, 95p)

계약서 작성시 용역발주처에게 과도하게 유리한 계약조항을 요구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과의 분쟁경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정부공공기관, 대기업과의 분쟁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충청강원권에서 중소기업과의 분쟁 경험이 가장 많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71.4%로 타 지역에 비해서 매우 높게 나타났고, 수도권의 경우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대기업과의 분쟁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규모별로는 매출액 10억원 이상의 기업의 경우 정부공공기관과의 분쟁 경험이 가장 많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6.2%로 높게 나타났고, 그 외 규모의 기업에서는 모두 중소기업과의 분쟁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원규모별로는 21인 이상 규모의 기업의 경우 대기업과의 분쟁 경험이 가장 많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0.0%로 타 규모에 비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림30 계약서 작성시 용역발주처에게 유리한 계약조항 요구당한 피해 경험 분쟁 대상 (단위 : %)



참고 : 〈표-부록2-17〉 계약서 작성시 용역발주처에 과도하게 유리한 계약조항 요구당한 경험 분쟁대상, 95p



3.1.2.3 계약해지 관련 피해 현황

□ 정당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당한 경험

디자인 전문기업 중 정당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비율은 전체 응답기업 중 29.0%로 조사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충청강원권기업의 피해비율이 37.5%로 가장 높았고, 매출액 규모별로는 3~5억원 기업 39.7%, 종사자 규모별로는 5인 이하기업 40.7% 등의 피해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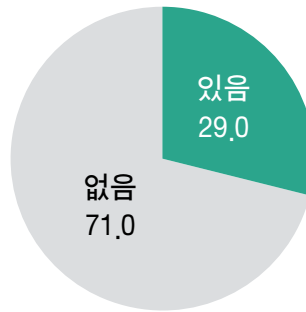


그림31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당한 경험 유무
(단위 : %)

참고 :
〈표-부록2-18〉 정당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당한 경험 유무, 96p

정당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피해를 1회 경험했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율이 40.9%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기업들은 피해를 1회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44.4%로 높게 나타났고, 충청강원권, 호남권, 경상권의 경우에는 피해를 2회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기업규모별로는 매출액 10억원 이상 업체들의 경우 피해를 1회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59.1%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직원규모별로 살펴보면 11인~20인 이하 규모 기업의 경우에는 특히 1회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57.1%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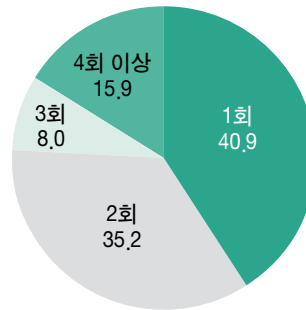


그림32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당한 경험 횟수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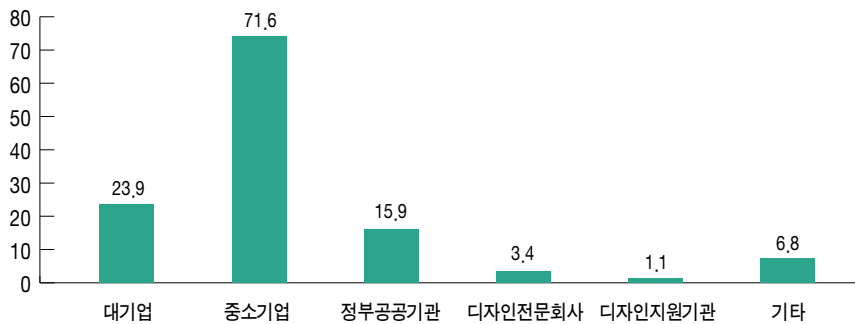
참고 :
〈표-부록2-19〉 정당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당한 경험 횟수, 96p

정당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과의 분쟁경험 비율이 71.6%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대기업과의 분쟁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모든 지역의 기업에서 중소기업과의 분쟁 경험이 가장 많았

다고 응답했고, 기업규모별로는 대부분의 기업규모에서 중소기업과의 분쟁 경험이 가장 많았다고 응답했으나, 10억원 이상의 기업규모에서는 대기업과의 분쟁 경험이 36.4%로 타 규모 업체들보다 높은 편이었습니다. 직원규모별로는 모든 직원규모에서 중소기업과의 분쟁 경험이 가장 많았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림33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당한 경험 분쟁대상

(단위 : %)



참고 : <표-부록2-20> 정당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당한 경험 분쟁 대상, 97p

□ 중도계약 해지시에 소요된 비용이 일방적으로 불인정된 경험

디자인 전문기업 중 중도계약 해지 시에 소요된 비용이 일방적으로 불인정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비율은 전체 응답기업 중 32.0%였습니다. 특히 충청강원권기업의 피해비율이 45.8%로 높게 나타났고, 기업규모별로는 3~5억원 기업의 비율이 46.6%, 종사자 규모별로는 5인 이하 기업의 비율이 41.5% 등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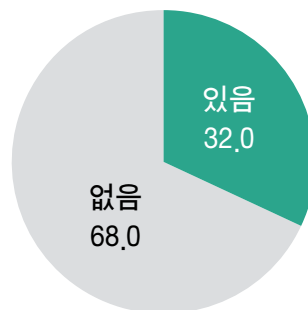


그림34 중도계약 해지시에 소요된 비용이 일방적으로 불인정된 경험 유무

(단위 : %)

참고 : <표-부록2-21> 중도계약 해지시에 소요된 비용이 일방적으로 불인정된 경험 유무, 97p

중도계약 해지 시에 소요된 비용이 일방적으로 불인정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피해를 1회 경험했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중이 39.2%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기업들은 피해를 1회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38.2%로 높게 나타났고, 호남권의 경우에는 피해를 2회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50.0%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기업규모별로는 매출액 5~10억 미만 업체들의 경우 피해를 4회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36.8%로 가장 높았고, 나머지 업체들의 경우에 피해를 1회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직원규모별로는 11~20인 미만 규모 기업의 경우에는 1회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53.3%로 가장 높았고, 21인 이상 기업인 경우에는 2회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6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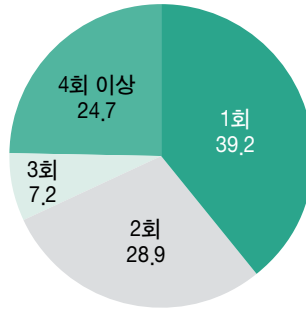


그림35
중도계약 해지시에
소요된 비용이 일
방적으로 불인정된
경험 횟수
(단위 : %)

참고 :
〈표-부록2-22〉
중도계약 해지시에
소요된 비용이
일방적으로 불인정된
경험 횟수, 98p

중도계약 해지시에 소요된 비용이 일방적으로 불인정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경우 피해금액은 5백만원~2천만원 미만이었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율이 45.4%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호남권 기업들의 경우 피해금액이 5백만원~2천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0.0%로 높게 나타났고, 경상권 기업들은 5백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7.1%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기업규모별로는 매출액 1억원 미만 기업의 경우 피해금액이 5백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피해규모도 커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직원 규모별로 살펴보면 5명 이하 규모 기업의 경우에는 피해금액이 5백만원~2천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1.2%로 가장 높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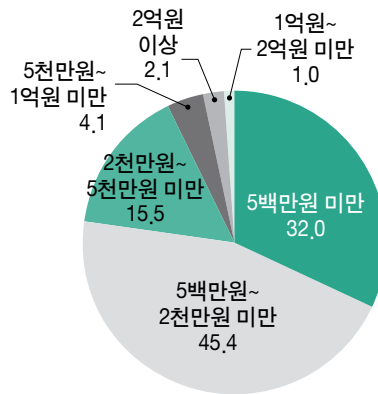


그림36
중도계약 해지시에
소요된 비용이 일
방적으로 불인정된
경험 총 피해비용
(단위 : %)

참고 :
〈표-부록2-23〉
중도계약 해지시에
소요된 비용이
일방적으로 불인정된
경험 피해비용, 98p

중도계약 해지시에 소요된 비용이 일방적으로 불인정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과의 분쟁경험 비율이 74.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대기업, 정부공공기관과의 분쟁경험 비율이 높았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기업에서 중소

기업과의 분쟁 경험이 가장 많았다고 응답했고, 기업규모별로는 대부분의 기업이 중소기업과의 분쟁 경험 비율이 매우 높다고 응답했으나, 매출액 10억원 이상 규모의 기업에서는 대기업과의 분쟁 경험 비율이 34.8%로 타 기업규모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났습니다. 직원규모별로는 5인 이하 기업에서 중소기업과의 분쟁 경험 비율이 81.6%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21인 이상 기업에서는 중소기업과의 분쟁 경험 비율이 40.0%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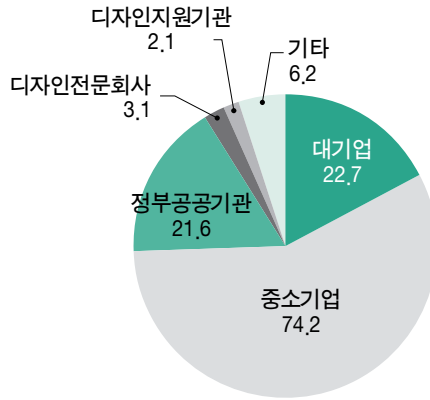


그림37
중도계약 해지시에 소요된 비용이 일방적으로 불인정된 경험 분쟁 대상 (단위 : %)

참고 :
〈표-부록2-24〉 중도계약 해지시에 소요된 비용이 일방적으로 불인정된 경험 분쟁대상, 99p

□ 일방적 해지로 인해 다른 프로젝트 수행기회를 상실한 경험

디자인 피해기업 중 일방적 해지로 인해 다른 프로젝트 수행기회를 상실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비중은 전체 응답기업 중 26.4%였습니다. 지역별로는 충청강원권 33.3%, 수도권 32.5%등의 피해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매출규모별로는 3~5억원 기업이 32.8%, 5인 이하 기업 33.9%등의 피해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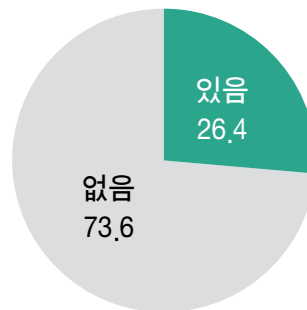


그림38
일방적 해지로 인해 다른 프로젝트 수행기회를 상실한 경험 유무 (단위 : %)

참고 :
〈표-부록2-25〉 일방적 해지로 인해 다른 프로젝트 수행기회를 상실한 경험 유무, 99p

일방적 해지로 인해 다른 프로젝트 수행기회를 상실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1회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중이 51.3%로 가장 많았습니다.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매출액 3~5억 미만 업체들의 경우 피해를 4회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38.9%로 가장 높았고, 나머지 규모의 업체들은 피해를 1회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역별 및 직원규모별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일방적 해지로 인해 다른 프로젝트 수행기회를 상실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경우 피해금액은 5백만원~2천만원 미만 이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42.5%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기업 들은 피해금액이 5백만원~2천만원 미만 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2.3%였으며, 충청 강원/호남권은 75.0%, 경상권은 83.3%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직원규모별로 살펴보면 5명 이 하 규모 기업의 경우에는 피해금 액이 5백만원~2천만원 미만이 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 고, 21인 이상 규모의 경우에는 5 백만원~2천만원 미만과 2천만 원~5천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0.0%로 높게 나타났습 니다.

일방적 해지로 인해 다른 프로젝 트 수행기회를 상실한 경험을 가 지고 있는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과의 분쟁경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대기업, 정부공공기관과의 분쟁경험 비 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의 경 우 대기업과의 분쟁 경험 비율이 40.3%로 타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습니다. 기업규모별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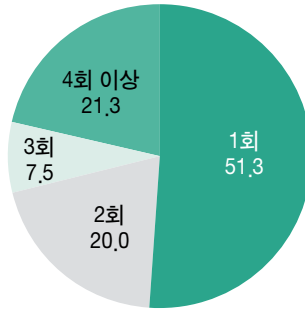


그림39
일방적 해지로 인 해 다른 프로젝트 수행기회를 상실한 경험 횟수 (단위 : %)

참고 : <표-부록2-26> 일방적 해지로 인해 다른 프로젝트 수행기회를 상실한 경험 횟수, 100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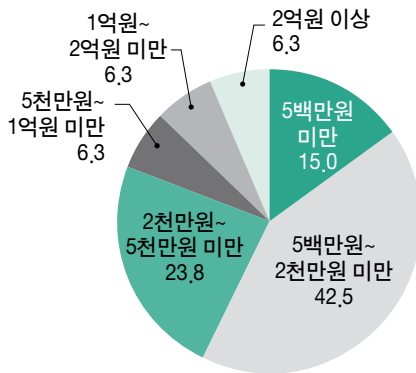


그림40
일방적 해지로 인 해 다른 프로젝트 수행기회를 상실한 경험 총 피해비용 (단위 : %)

참고 : <표-부록2-27> 일방적 해지로 인해 다른 프로젝트 수행기회를 상실한 경험 총 피해비용, 100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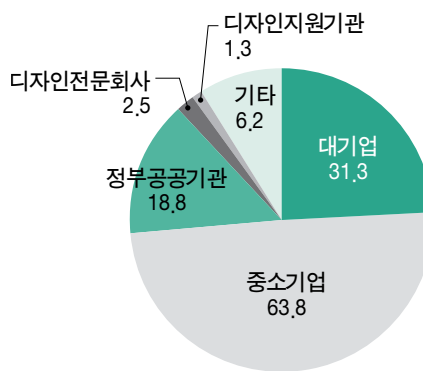


그림41
일방적 해지로 인 해 다른 프로젝트 수행기회를 상실한 경험 분쟁 대상 (단위 : %)

참고 : <표-부록2-28> 일방적 해지로 인해 다른 프로젝트 수행기회를 상실한 경험 분쟁대상, 101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모든 기업에서 중소기업과의 분쟁 경험이 가장 많았다고 응답했으며, 직원규모별로 보면 11~20인 규모의 기업들에서는 대기업과의 분쟁 경험 비율이 6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3.1.2.4 제안 및 시안 PT 관련 피해 현황

□ 제안서 제출 후 내부사정으로 프로젝트가 무산되었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받은 경험

제안서 제출 후 내부사정으로 프로젝트가 무산되었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받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비율은 전체 응답 기업 중 36.3%였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기업의 피해 기업 비율이 44.5%로 높게 나타났고, 매출액 규모별로는 3~5억원 기업의 피해 비율이 53.4%로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종사자 규모별로는 5인 이하 기업의 피해 비율이 42.4%로 가장 높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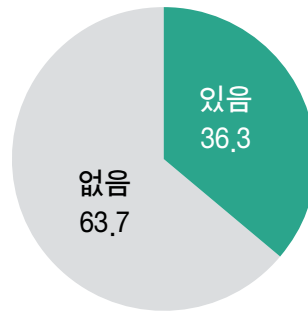


그림42
제안서 제출 후 내부사정으로 프로젝트가 무산되었다고 일방적으로 통보 받은 경험 유무
(단위 : %)

참고 :
〈표-부록2-29〉 제안서 제출 후 내부사정으로 프로젝트가 무산되었다고 일방적으로 통보 받은 경험 유무, 101p

제안서 제출 후 내부사정으로 프로젝트가 무산되었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받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1회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중이 33.6%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특히 호남권의 경우에는 피해를 4회 이상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44.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업규모별로는 5~10억원 미만 업체들의 경우에 피해를 4회 이상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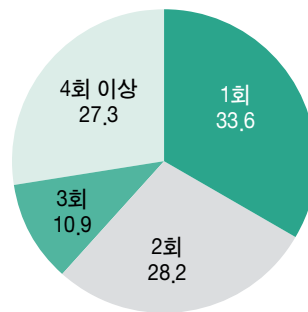


그림43
제안서 제출 후 내부사정으로 프로젝트가 무산되었다고 일방적으로 통보 받은 경험 횟수
(단위 : %)

참고 :
〈표-부록2-30〉 제안서 제출 후 내부사정으로 프로젝트가 무산되었다고 일방적으로 통보 받은 경험 횟수, 102p

났습니다. 직원규모별로 살펴보면 5인 이하 규모 기업의 경우에는 1회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21인 이상 기업인 경우에는 2회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제안서 제출 후 내부사정으로 프로젝트가 무산되었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받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경우 피해금액은 5백만원~2천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6.4%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충청강원권의 경우 피해금액이 5백만원~2천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2.5%로 타 지역에 비해서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기업규모별로는 매출액 3~5억원 미만 기업의 경우 피해금액이 5백만원~2천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1.6%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직원규모별로 살펴보면 5명 이하 규모 기업의 경우에는 피해금액이 5백만원~2천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6.0%로 가장 높았습니다.

제안서 제출 후 내부사정으로 프로젝트가 무산되었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받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과의 분쟁경험 비율이 70.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대기업, 정부공공기관과의 분쟁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외의 경우 대기업과의 분쟁 경험이 타 지역에 비해 많았고, 기업규모별 및 직원규모별로는 모두 중소기업과의 분쟁 경험이 가장 많았다고 응답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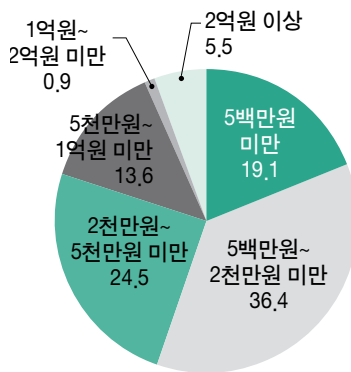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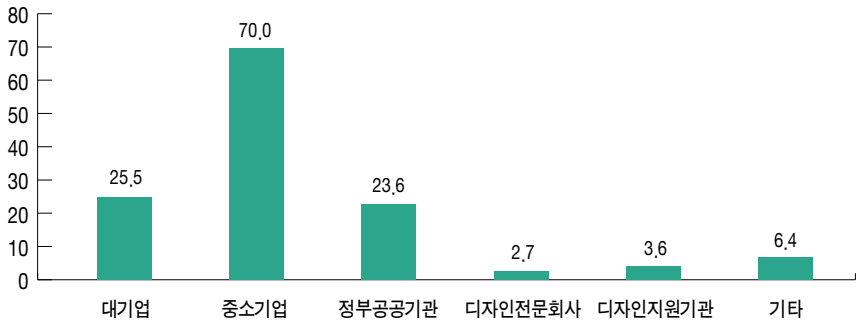


그림44
제안서 제출 후 내부사정으로 프로젝트가 무산되었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받은 경험 피해비용 (단위 : %)

참고 :
〈표-부록2-31〉 제안서 제출 후 내부사정으로 프로젝트가 무산되었다고 일방적으로 통보 받은 경험 피해비용, 102p

그림45 제안서 제출 후 내부사정으로 프로젝트가 무산되었다고 일반적으로 통보 받은 경험 분쟁대상

(단위 : %)



참고 : <표-부록2-32> 제안서 제출 후 내부사정으로 프로젝트가 무산되었다고 일반적으로 통보 받은 경험 분쟁대상, 103p

□ 시안경쟁 PT에 참가하여 리젝트피를 받지 못한 경험

시안경쟁 PT에 참가하여 리젝트피를 받지 못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4회 이상의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중이 48.7%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특히 충청강원권에서 피해를 4회 이상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71.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업규모별로는 매출액 1억 미만 업체들의 경우 피해를 2회 혹은 4회 경험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직원규모별로 살펴보면 11~20명 이상 규모 기업의 경우에는 4회 이상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66.7%로 가장 높았고, 5인 이하 기업인 경우 또한 54.3%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시안경쟁 PT에 참가하여 리젝트피를 받지 못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경우 피해금액은 5백만원~2천만원 미만이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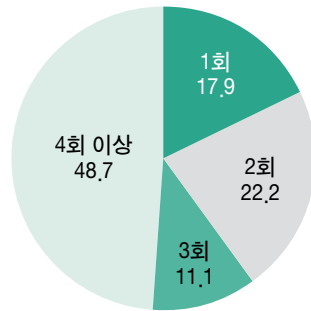


그림46 시안경쟁 PT에 참가하여 리젝트피를 받지 못한 경험 횟수

(단위 : %)

참고 : <표-부록2-34> 시안경쟁 PT에 참가하여 리젝트피를 받지 못한 경험 횟수, 104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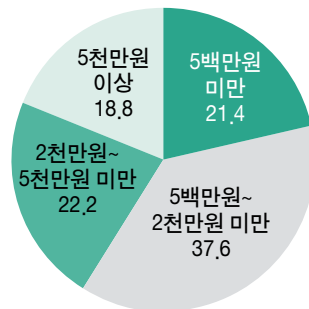


그림47 시안경쟁 PT에 참가하여 리젝트피를 받지 못한 경험 피해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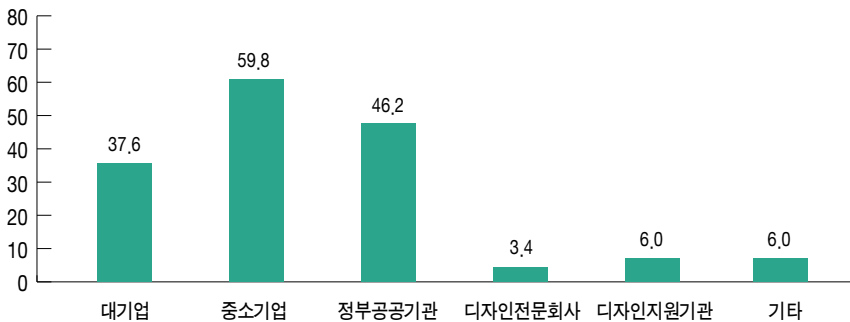
(단위 : %)

참고 : <표-부록2-35> 시안경쟁 PT에 참가하여 리젝트피를 받지 못한 경험 피해비용, 104p

다고 응답한 비율이 37.6%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호남권 기업들은 피해금액이 5백만원~2천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3.6%로 매우 높았고, 기업규모별로는 매출액 1억원 미만 기업의 경우 피해금액이 5백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직원규모별로 살펴보면 21명 이상 기업의 경우에는 피해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3.3%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시안경쟁 PT에 참가하여 리젝트피를 받지 못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과의 분쟁경험 비율이 59.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정부공공기관, 대기업과의 분쟁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지역의 기업에서 중소기업과의 분쟁 경험이 60.0%로 나타났고, 호남권 지역의 기업에서 중소기업과의 분쟁 경험이 81.8%로 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기업규모별로는 매출액 1~3억원 미만 기업규모에서 중소기업과의 분쟁 경험 비율이 74.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직원규모별로는 5명 이하 직원규모에서 중소기업과의 분쟁 경험비율이 71.4%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림48 시안경쟁 PT에 참가하여 리젝트피를 받지 못한 경험 분쟁 대상 (단위 : %)



참고 : <표-부록2-36> 시안경쟁 PT에 참가하여 리젝트피를 받지 못한 경험 분쟁대상, 105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3.1.2.5 디자인 개발과정 상의 피해 현황

□ 계약 후 무리한 디자인개발 방향 변경 및 수정작업을 요구당한 경험

디자인 전문기업 중 계약 후 무리한 디자인개발 방향 변경 및 수정작업을 요구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비중은 전체 응답기업 중 42.6%로 조사되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기업의 피해경험 비율이 49.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매출액 규모별로는 3~5억원 기업의 피해경험 비율이 58.6%, 종사자 규모별로는 5인 이하 기업의 피해경험 비율이 50.0%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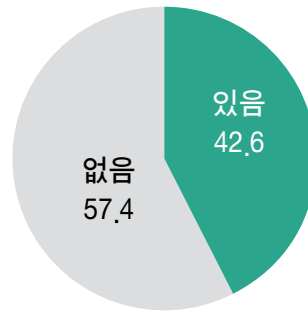


그림49
계약 후 무리한 디자인개발 방향 변경 및 수정작업을 요구당한 경험 유무 (단위 : %)

참고 :
〈표-부록2-37〉 계약 후 무리한 디자인개발 방향 변경 및 수정작업을 요구당한 경험 유무, 105p

계약 후 무리한 디자인개발 방향 변경 및 수정작업을 요구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기업 중 4회 이상 요구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43.4%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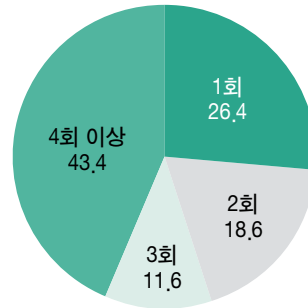


그림50
계약 후 무리한 디자인개발 방향 변경 및 수정작업을 요구당한 경험 횟수 (단위 : %)

참고 :
〈표-부록2-38〉 계약 후 무리한 디자인개발 방향 변경 및 수정작업을 요구당한 경험 횟수, 106p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상권의 기업들이 4회 이상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50.0%로 매우 높았고, 충청강원권 또한 45.5%로 높았습니다. 기업규모별로는 매출액 5~10억 미만 업체들의 4회 이상 피해 경험비율이 56.0%로 매우 높았습니다. 직원규모별로 살펴보면 21명 이상 기업의 4회 이상 피해 경험 비율이 5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계약 후 무리한 디자인개발 방향 변경 및 수정작업을 요구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경우 피해금액은 5백만원~2천만원 미만이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42.6%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호남권 기업들은 5백만원~2천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90.9%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기업규모 별로는 매출액 1억원 미만의 기업들은 피해금액이 5백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7.1%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직원규모별로 살펴보면 5명 이하 규모인 기업들은 피해금액이 5백만원~2천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4.2%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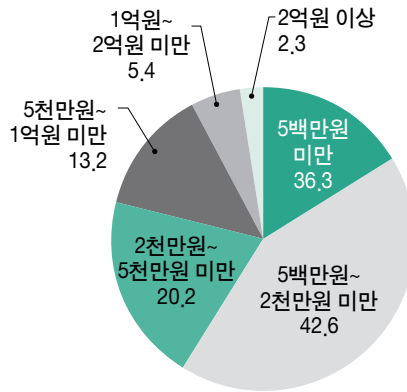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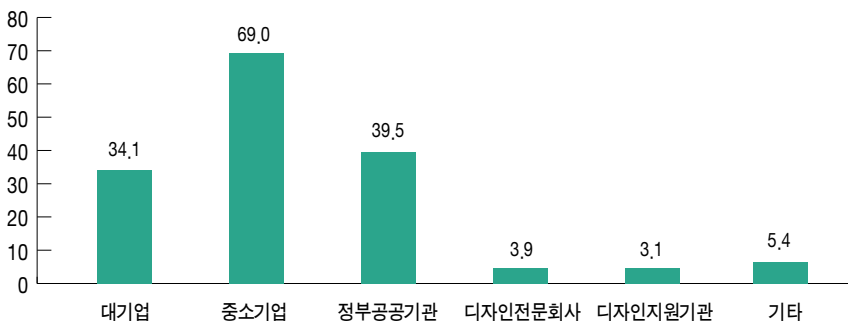


그림51
계약 후 무리한 디자인개발 방향 변경 및 수정작업을 요구당한 경험 총 피해 비용 (단위 : %)

참고 : <표-부록2-39> 계약 후 무리한 디자인개발 방향 변경 및 수정작업을 요구당한 총 피해비용, 106p

계약 후 무리한 디자인개발 방향 변경 및 수정작업을 요구당한 경험이 있는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과의 분쟁경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중소기업과의 분쟁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수도권의 경우 대기업과의 분쟁 비율이 43.6%로 타 지역 기업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습니다. 기업규모별로도 중소기업과의 분쟁비율이 대부분 높았으나, 10억원 이상 기업의 경우에는 정부공공기관과의 분쟁비율이 52.8%로 타 규모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이 특징입니다.

그림52 계약 후 무리한 디자인개발 방향 변경 및 수정작업을 요구당한 경험 분쟁 대상 (단위 : %)



참고 : <표-부록2-40> 계약 후 무리한 디자인개발 방향 변경 및 수정작업을 요구당한 분쟁 대상, 107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 계약내용과는 상관없는 별도의 개발을 무상 혹은 낮은 가격으로 요구당한 경험

디자인 피해기업 중 계약내용과는 상관없는 별도의 개발을 무상 혹은 낮은 가격으로 요구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비중은 전체 응답기업 중 41.9%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기업의 피해경험 비율이 49.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매출액 규모별로는 3~5억원 기업의 피해경험 비율이 56.9%, 종사자 규모별로는 5인 이하 기업의 피해경험 비율이 48.3%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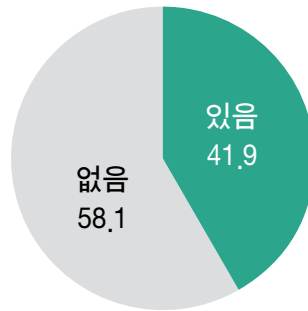


그림53
계약내용과는 상관없는 별도의 개발을 무상 혹은 낮은 가격으로 요구당한 경험 유무 (단위 : %)

참고 :
〈표-부록2-41〉 계약내용과는 상관없는 별도의 개발을 무상 혹은 낮은 가격으로 요구당한 경험 유무, 107p

계약내용과는 상관없는 별도의 개발을 무상 혹은 낮은 가격으로 요구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4회 이상의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중이 41.7%로 가장 많았습니다. 기업규모별로는 매출액 1억 미만 업체들의 경우 피해를 4회 이상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57.1%로 타 규모에 비해서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직원 규모별로 살펴보면 5인 이하 규모 기업이 4회 이상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50.9%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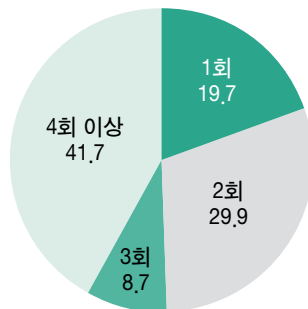


그림54
계약내용과는 상관없는 별도의 개발을 무상 혹은 낮은 가격으로 요구당한 경험 횟수 (단위 : %)

참고 :
〈표-부록2-42〉 계약내용과는 상관없는 별도의 개발을 무상 혹은 낮은 가격으로 요구당한 경험 횟수, 108p

계약내용과는 상관없는 별도의 개발을 무상 혹은 낮은 가격으로 요구당한 경험이 있는 기업의 경우 피해 금액이 5백만원~2천만원 미만이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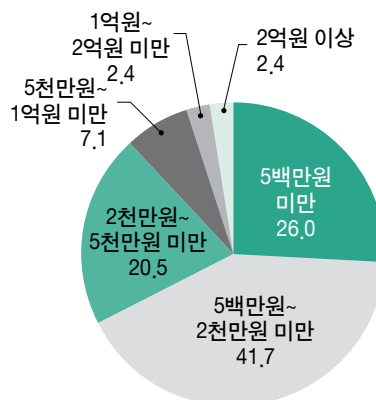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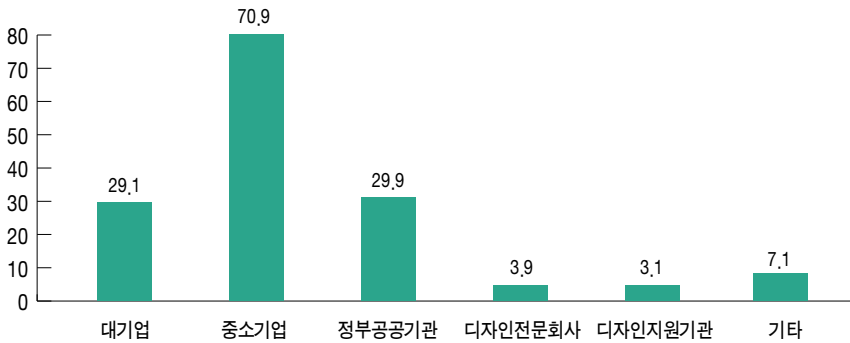
그림55
계약내용과는 상관없는 별도의 개발을 무상 혹은 낮은 가격으로 요구당한 경험 총 피해비용 (단위 : %)

참고 :
〈표-부록2-43〉 계약내용과는 상관없는 별도의 개발을 무상 혹은 낮은 가격으로 요구당한 경험 총 피해비용, 108p

다고 응답한 비율이 41.7%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호남권 기업들은 피해금액이 5백만원~2천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81.8%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종사자규모 21명 이상인 기업의 경우에는 피해비용이 5백만원~2천만원 미만과 2천만원~5천만원 미만이라는 응답 또한 각각 50.0%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계약내용과는 상관없는 별도의 개발을 무상 혹은 낮은 가격으로 요구당한 경험이 있는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과의 분쟁경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외에 특별히 다른점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림56 계약내용과는 상관없는 별도의 개발을 무상 혹은 낮은 가격으로 요구당한 경험 분쟁 대상 (단위 : %)



참고 : <표-부록2-44> 계약내용과는 상관없는 별도의 개발을 무상 혹은 낮은 가격으로 요구당한 경험 분쟁대상, 109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 결과물 납품 후 결과물에 대한 추가 요구를 당한 경험

디자인 피해기업 중 결과물 납품 후 결과물에 대한 추가 요구를 당한 경험이 있는 기업의 비중은 전체 응답기업 중 35.0%였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기업의 피해경험 비율이 40.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매출액 규모별로는 3~5억원 기업의 피해경험 비율이 51.7%, 종사자 규모별로는 5인 이하 기업의 피해경험 비율이 37.3%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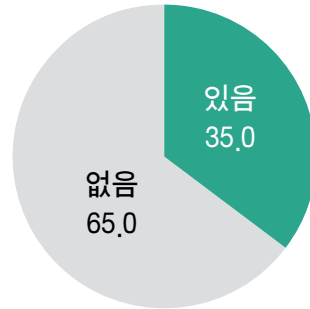


그림57
결과물 납품 후 결과물에 대한 추가 요구를 당한 경험 유무
(단위 : %)

참고 :
〈표-부록2-45〉 결과물 납품 후 결과물에 대한 추가요구를 당한 경험 유무, 109p

결과물 납품 후 결과물에 대한 추가 요구를 당한 경험이 있는 기업들은 4회 이상의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중이 34.9%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호남권과 경상권의 경우에는 피해를 1회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44.4%와 40.0%로 타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충청강원권은 4회 이상이라는 응답이 55.6%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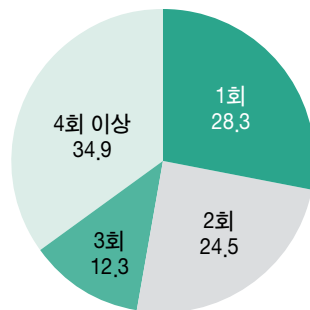


그림58
결과물 납품 후 결과물에 대한 추가 요구를 당한 경험 횟수
(단위 : %)

참고 :
〈표-부록2-46〉 결과물 납품 후 결과물에 대한 추가요구를 당한 경험 횟수, 110p

기업규모별로는 매출액 1억원 미만 업체와 3억원 미만업체들의 경우 피해를 4회 이상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50.0%와 47.1%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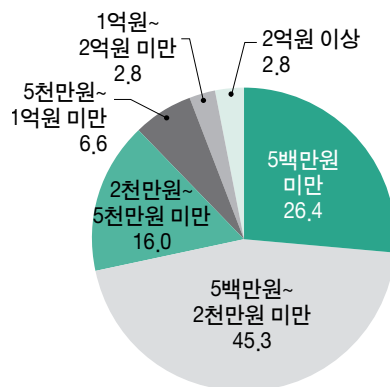


그림59
결과물 납품 후 결과물에 대한 추가 요구를 당한 경험 총 피해 비용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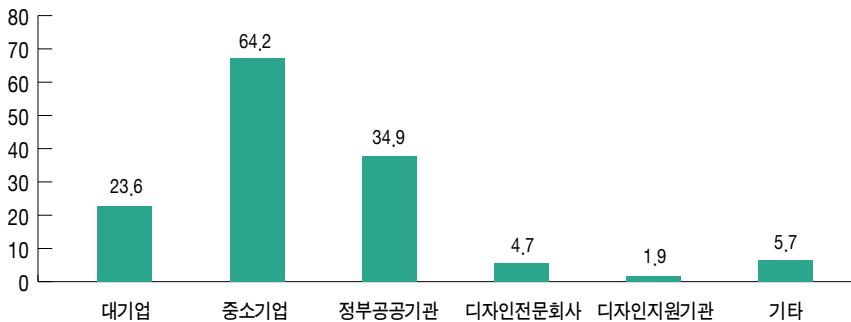
참고 :
〈표-부록2-47〉 결과물 납품 후 결과물에 대한 추가요구를 당한 경험 피해 비용, 110p

결과물 납품 후 결과물에 대한 추가 요구를 당한 경험이 있는 기업의 경우 피해금액은 5백만원~2천

만원 미만이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45.3%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충청강원권에서는 피해금액이 5백만원~2천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7.8%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수도권 기업들은 피해금액이 5백만원~2천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2.3%로 나타났습니다. 기업규모별로는 1억~3억원 미만 규모 기업들의 경우 피해비용이 5백만원~2천만원 미만인 비율이 64.7%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결과물 납품 후 결과물에 대한 추가 요구를 당한 경험이 있는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과의 분쟁 경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정부공공기관, 대기업과의 분쟁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림60 결과물 납품 후 결과물에 대한 추가 요구를 당한 경험 분쟁 대상 (단위 : %)



참고 : <표-부록2-48> 결과물 납품 후 결과물에 대한 추가요구를 당한 경험 분쟁 대상, 111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 프로젝트 완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비 지급을 지연하거나 거부당한 경험

디자인 전문기업 중 프로젝트 완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비 지급을 지연하거나 거부당한 경험이 있는 기업의 비중은 전체 응답기업 중 29.4%로 조사되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기업의 피해경험 비율이 35.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매출액 규모별로는 3~5억원 기업의 피해경험 비율이 44.8%, 종사자 규모별로는 5인 이하 기업의 피해경험 비율이 38.1%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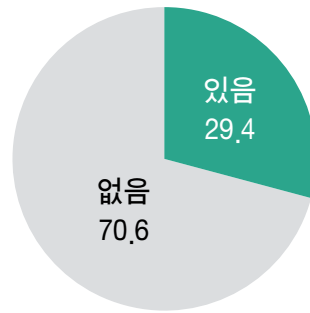


그림61
프로젝트 완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비 지급을 지연하거나 거부당한 경험 유무 (단위 : %)

참고 :
〈표-부록2-49〉 프로젝트 완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비 지급을 지연하거나 거부당한 경험 유무, 111p

프로젝트 완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비 지급을 지연하거나 거부당한 경험이 있는 기업들은 4회 이상의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중이 34.8%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기업들의 4회이상 피해경험 비율이 38.2%로 가장 높았고, 경상권 및 제주의 경우에는 1회라는 응답 비율이 높았습니다. 기업규모별로는 5억~10억원 미만 기업들의 4회 이상 피해경험 비율이 63.2%로 가장 높고, 종사자 규모별로는 11~20명 규모 기업의 피해경험 비율이 53.8%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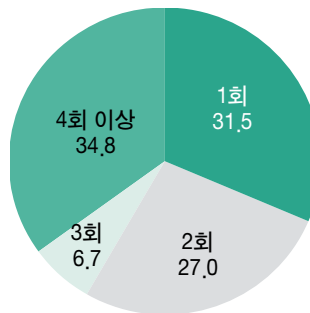


그림62
프로젝트 완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비 지급을 지연하거나 거부당한 경험 횟수 (단위 : %)

참고 :
〈표-부록2-50〉 프로젝트 완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비 지급을 지연하거나 거부당한 경험 횟수, 112p

프로젝트 완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비 지급을 지연하거나 거부당한 경험이 있는 기업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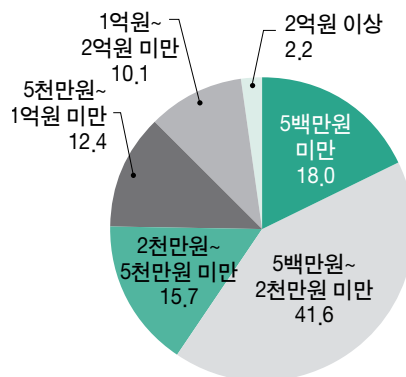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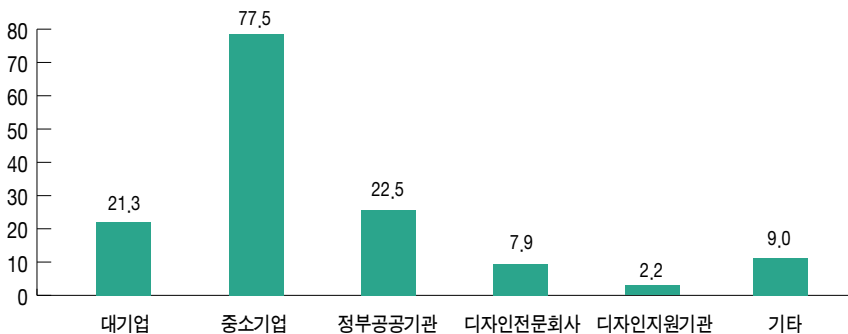
그림63
프로젝트 완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비 지급을 지연하거나 거부당한 경험 총 피해비용 (단위 : %)

참고 :
〈표-부록2-51〉 프로젝트 완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비 지급을 지연하거나 거부당한 경험 총 피해비용, 112p

피해금액은 5백만원~2천만원 미만이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41.6%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호남권, 충청강원권에서는 피해금액이 5백만원~2천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83.3%와 85.7%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기업규모별로는 매출액 1억원 미만 기업의 경우 피해금액이 5백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5.0%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직원규모별로 살펴보면 11~20명 규모 기업의 경우에는 피해금액이 1억원~2억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0.8%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프로젝트 완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비 지급을 지연하거나 거부당한 경험이 있는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과의 분쟁경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지역별로 살펴보면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기업에서 중소기업과의 분쟁 경험이 가장 많았다고 조사되었습니다. 기업규모별로는 매출액 10억원 이상 기업들의 경우 대기업과의 분쟁 경험이 35.0%, 정부공공기관 40.0%로 타 기업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직원규모별로는 21명 이상 기업들의 경우 대기업과의 분쟁 경험 비율이 50.0%로 타 기업에 비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림64 프로젝트 완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비 지급을 지연하거나 거부당한 경험 분쟁 대상
(단위 : %)



참고 : <표-부록2-52> 프로젝트 완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비 지급을 지연하거나 거부당한 경험 분쟁 대상, 113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불인정 경험

디자인 전문기업 중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불인정 경험을 보유한 기업의 비율은 전체의 30.0%였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충청강원권 기업의 피해경험 비율이 37.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매출액 규모별로는 3~5억원 기업의 피해경험 비율이 44.8%, 종사자 규모별로는 6~10인 이하 기업의 피해경험 비율이 33.7%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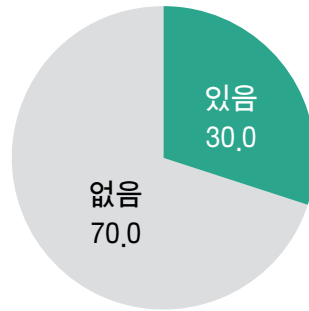


그림65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불인정 경험 유무
(단위 : %)

참고 :
〈표-부록2-53〉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불인정 경험 유무, 113p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불인정 피해를 경험한 횟수에 대해서는 4회 이상이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36.3%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역별로는 특히 호남권에서 4회 이상의 피해를 경험한 기업의 비율이 50.0%로 가장 높았고, 경상권은 1회라는 응답이 83.3%로 가장 높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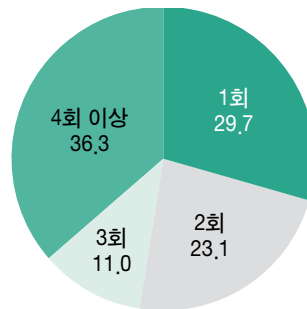


그림66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불인정 경험 횟수
(단위 : %)

참고 :
〈표-부록2-54〉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불인정 경험 횟수, 114p

기업규모별로는 5~10억 미만 규모 기업의

4회 이상 피해 경험 비율이 47.1%로 가장 높았고, 10억원 이상 기업은 1회 경험했다는 비율이 33.3%로 가장 높았습니다. 종사자규모별로는 11~20명 기업의 4회 이상 피해경험 비율이 47.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6~10명 기업은 1회라는 응답이 43.8%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불인정과 관련된 피해비용에 대해서는 5백만원~2천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46.2%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5백만원~2천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높은 가운데 호남권이 8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기업규모별로도 대부분 5백만원~2천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하였으나 10억원 이상 기업의 경우에는 5천만원~1억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25.9%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종사자 규모별로도 대부분 5백만원~2천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하였으나 11~20명 기업은 5천만원~1억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35.3%로 가장 높았습니다.₩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불인정 경험이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중소기업과의 분쟁을 경험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정부공공기관, 대기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중소기업과의 분쟁 비율이 높은 가운데 특히 호남권이 90.0%로 높았으며, 종사자 규모별로는 21명 이상 기업의 60%가 대기업과의 분쟁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것이 특이점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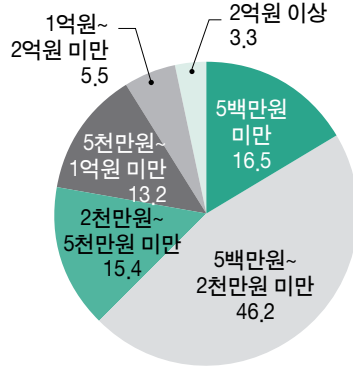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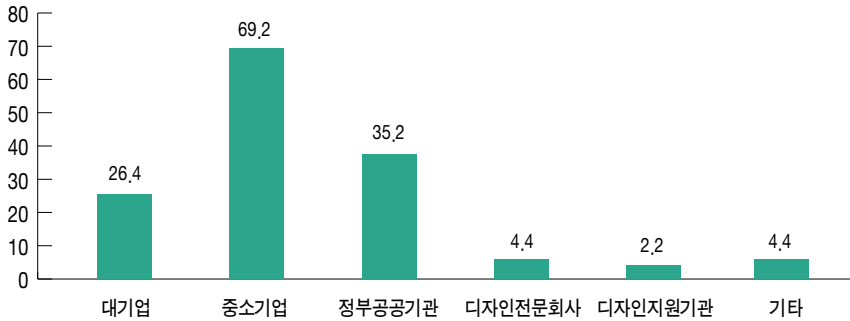


그림67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불인정 경험 총 피해 비용
(단위 : %)

참고 :
〈표-부록2-55〉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불인정 경험 총 피해 비용, 114p

그림68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불인정 경험 분쟁 대상

(단위 : %)



참고 : 〈표-부록2-56〉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불인정 경험 분쟁대상, 115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3.1.2.6 업무 관계 관련 피해 현황

□ 프로젝트 진행 중 용역발주처로부터 모욕감이나 굴욕감을 느낀 경험

프로젝트 진행 중 용역발주처로부터 모욕감이나 굴욕감을 느낀 경험을 보유한 기업의 비율은 38.0%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기업의 피해경험 비율이 44.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매출액 규모별로는 3~5억원 기업의 피해경험 비율이 53.4%, 종사자 규모별로는 5인 이하기업의 피해경험 비율이 44.9%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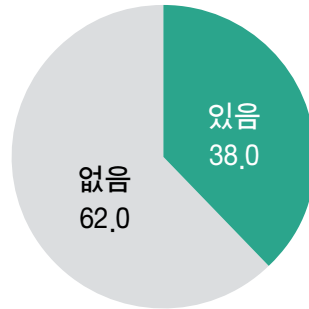


그림69
프로젝트 진행 중 용역발주처로부터 모욕감이나 굴욕감을 느낀 경험 유무 (단위 : %)

참고 :
〈표-부록2-69〉
프로젝트 진행 중 용역발주처로부터 모욕감이나 굴욕감을 느낀 경험 유무, 121p

프로젝트 진행 중 용역발주처로부터 모욕감이나 굴욕감 느낀 경험의 횟수는 4회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3.5%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충청강원권 기업의 경우 경험횟수가 4회 이상인 경우가 66.7%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기업규모별로는 5억~10억원 미만 기업이 4회 이상 경험한 비율이 57.1%로 가장 높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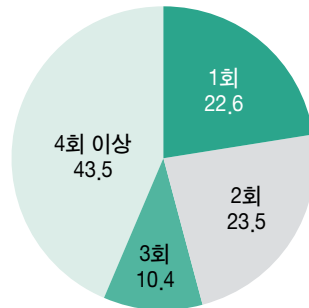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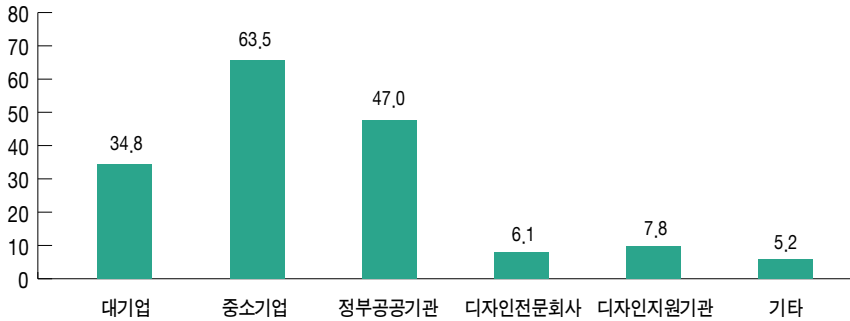


그림70
프로젝트 진행 중 용역발주처로부터 모욕감이나 굴욕감을 느낀 경험 횟수 (단위 : %)

참고 :
〈표-부록2-70〉
프로젝트 진행 중 용역발주처로부터 모욕감이나 굴욕감을 느낀 경험 횟수, 122p

용역발주처로부터 모욕감이나 굴욕감을 느낀 경우의 분쟁 대상은 중소기업인 경우가 63.5%로 가장 많았고, 대기업은 34.8%였습니다.

그림71 프로젝트 진행 중 용역발주처로부터 모욕감이나 굴욕감 느낀 경험 분쟁 대상 (단위 : %)



참고 : <표-부록2-71> 프로젝트 진행 중 용역발주처로부터 모욕감이나 굴욕감을 느낀 경험 분쟁 대상, 122p

□ 프로젝트 진행 중 과도한 항응 접대요구를 받은 경험

디자인 피해기업 중 프로젝트 진행 중 과도한 항응접대 요구를 받은 경험을 보유한 기업의 비율은 15.8%로 비교적 낮았습니다.

프로젝트 진행 중 과도한 항응접대 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는 기업들의 경우 4회 이상 요구받은 경우가 41.7%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역별, 기업규모별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종사자 규모별로는 5명 이하 기업의 경우 2회라고 응답한 비율이 38.5%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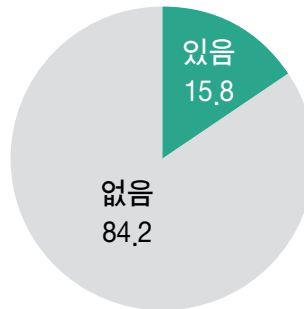


그림72 프로젝트 진행 중 과도한 항응 접대요구를 받은 경험 유무 (단위 : %)

참고 : <표-부록2-72> 프로젝트 진행 중 과도한 항응 접대요구를 받은 경험 유무, 123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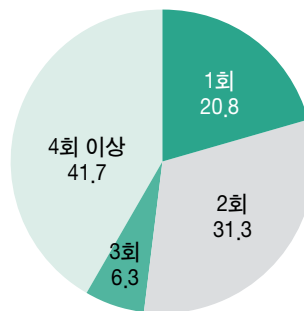


그림73 프로젝트 진행 중 과도한 항응 접대요구를 받은 경험 횟수 (단위 : %)

참고 : <표-부록2-73> 프로젝트 진행 중 과도한 항응 접대요구를 받은 경험 횟수, 123p

피해비용은 100~300만원 미만인 경우가 45.8%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기업규모별로 보면 10억원 이상 기업에서 100만원~300만원과 300만원 이상 접대한 경우가 각각 50.0%로 높게 나타났으며, 종사자규모별로 보면 11~20명 기업의 경우 300만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7.8%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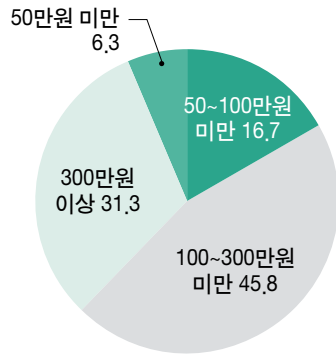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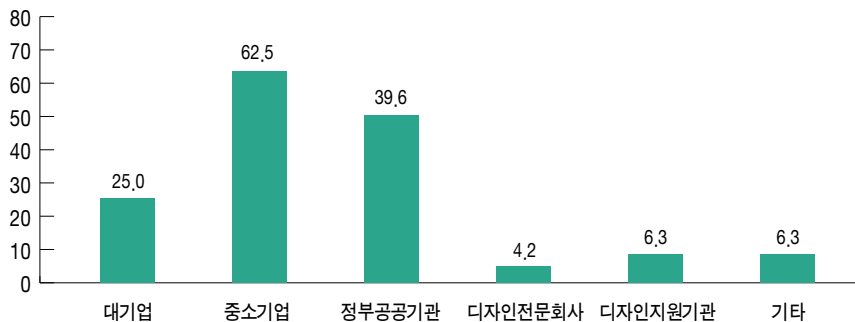
그림74
프로젝트 진행 중 과도한 항응 접대요구를 받은 경험 총 피해비용 (단위 : %)

참고 : <표-부록2-74> 프로젝트 진행 중 과도한 항응 접대요구를 받은 경험 총 피해비용, 124p

프로젝트 진행 중 과도한 항응 접대요구를 받은 경우의 분쟁대상은 중소기업인 경우가 62.5%로 가장 높았고, 대기업은 25.0%였습니다.

그림75 프로젝트 진행 중 과도한 항응 접대요구를 받은 경험 분쟁 대상

(단위 : %)



참고 : <표-부록2-75> 프로젝트 진행 중 과도한 항응 접대요구를 받은 경험 분쟁대상, 124p

3.1.3 분쟁대상별 분석

3.1.3.1 대기업

불공정거래 피해 중 대기업과 관련된 피해의 피해금액 비율은 계약 후 무리한 디자인 개발 방향 변경 및 수정 요청이 17.6%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외에는 일방적 해지로 인한 타 프로젝트 수행기회 상실, 제안서 제출 후 프로젝트 무산 관련 일방적 통보 등의 피해금액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표5 피해대상이 대기업일 경우 피해 유형 순위

(단위 : %)

순위	설문지 문항	피해 유형	비율
1	문14	계약 후 무리한 디자인 개발 방향변경 및 수정 요청	17.6
2	문11	일방적 해지로 인한 타 프로젝트 수행기회 상실	11.5
3	문12	제안서 제출 후 프로젝트 무산 관련 일방적 통보	11.4
4	문13	시안경쟁PT 리젝트피 미지급	11.2
5	문15	계약과 상관없는 별도의 개발 요구	11.1
6	문18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불인정	9.9
7	문17	프로젝트 완료 후 개발비 지급 지연 및 거부	8.6
8	문16	결과물 납품 후 결과물에 대한 추가 요구	7.6
9	문7	구두계약 후 계약서 미비로 인한 비용결재 거부	5.7
10	문10	중도계약 해지 시 소요된 비용 불인정	5.1
11	문23	과도한 항응접대 요구	0.3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3.1.3.2 중소기업

불공정거래 피해 중 중소기업과 관련된 피해의 피해금액 비율은 계약 후 무리한 디자인 개발 방향 변경 및 수정 요청의 피해금액 비율이 14.2%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외에는 제안서 제출 후 프로젝트 무산 관련 일방적 통보, 프로젝트 완료 후 개발비 지급 지연 및 거부 등의 피해금액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표6 피해대상이 중소기업일 경우 피해 유형 순위

(단위 : %)

순위	설문지 문항	피해 유형	비율
1	문14	계약 후 무리한 디자인 개발 방향변경 및 수정 요청	14.2
2	문12	제안서 제출 후 프로젝트 무산 관련 일방적 통보	12.5
3	문17	프로젝트 완료 후 개발비 지급 지연 및 거부	12.5
4	문15	계약과 상관없는 별도의 개발 요구	10.8
5	문18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불인정	10.3
6	문11	일방적 해지로 인한 타 프로젝트 수행기회 상실	9.3
7	문16	결과물 납품 후 결과물에 대한 추가 요구	8.2
8	문7	구두계약 후 계약서 미비로 인한 비용결재 거부	8.0
9	문13	시안경쟁PT 리젝트피 미지급	7.1
10	문10	중도계약 해지 시 소요된 비용 불인정	6.7
11	문23	과도한 항응접대 요구	0.3

3.1.3.3 정부·공공기관

불공정거래 피해 중 정부공공기관과 관련된 피해의 피해금액 비율은 계약 후 무리한 디자인 개발 방향 변경 및 수정 요청의 피해금액 비율이 19.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 외에는 시안 경쟁PT 리젝트피 미지급,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불인정 등의 피해금액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표7 피해대상이 정부공공기관일 경우 피해 유형 순위 (단위 : %)

순위	설문지 문항	피해 유형	비율
1	문14	계약 후 무리한 디자인 개발 방향변경 및 수정 요청	19.0
2	문13	시안경쟁PT 리젝트피 미지급	12.7
3	문18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불인정	12.2
4	문15	계약과 상관없는 별도의 개발 요구	10.6
5	문16	결과물 납품 후 결과물에 대한 추가 요구	10.4
6	문12	제안서 제출 후 프로젝트 무산 관련 일방적 통보	9.9
7	문17	프로젝트 완료 후 개발비 지급 지연 및 거부	8.4
8	문11	일방적 해지로 인한 타 프로젝트 수행기회 상실	6.4
9	문7	구두계약 후 계약서 미비로 인한 비용결재 거부	5.3
10	문10	중도계약 해지 시 소요된 비용 불인정	4.6
11	문23	과도한 향응접대 요구	0.4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3.1.3.4 디자인 전문회사

불공정거래 피해 중 디자인 전문회사와 관련된 피해의 피해금액 비율은 프로젝트 완료 후 개발비 지급 지연 및 거부가 21.1%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외에는 계약 후 무리한 디자인 개발 방향변경 및 수정 요청,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불인정 등의 피해금액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표8 피해대상이 디자인 전문회사일 경우 피해 유형 순위

(단위 : %)

순위	설문지 문항	피해 유형	비율
1	문17	프로젝트 완료 후 개발비 지급 지연 및 거부	21.1
2	문14	계약 후 무리한 디자인 개발 방향변경 및 수정 요청	13.4
3	문18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불인정	10.9
4	문16	결과물 납품 후 결과물에 대한 추가 요구	10.1
5	문15	계약과 상관없는 별도의 개발 요구	10.0
6	문7	구두계약 후 계약서 미비로 인한 비용결재 거부	8.5
7	문12	제안서 제출 후 프로젝트 무산 관련 일방적 통보	8.2
8	문13	시안경쟁PT 리젝트피 미지급	6.8
9	문11	일방적 해지로 인한 타 프로젝트 수행기회 상실	6.1
10	문10	중도계약 해지 시 소요된 비용 불인정	4.7
11	문23	과도한 항응접대 요구	0.3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3.1.3.5 디자인 지원기관

불공정거래 피해 중 디자인 지원기관과 관련된 피해의 피해금액 비율은 시안경쟁 PT 리젝트 피 미지급과 관련된 비율이 16.9%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외에는 제안서 제출 후 프로젝트 무산 관련 일방적 통보, 계약 후 무리한 디자인 개발 방향변경 및 수정요청 등의 피해금액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표9 피해대상이 디자인 지원기관일 경우 피해 유형 순위 (단위 : %)

순위	설문지 문항	피해 유형	비율
1	문13	시안경쟁PT 리젝트피 미지급	16.9
2	문12	제안서 제출 후 프로젝트 무산 관련 일방적 통보	15.6
3	문14	계약 후 무리한 디자인 개발 방향변경 및 수정 요청	15.3
4	문15	계약과 상관없는 별도의 개발 요구	11.5
5	문7	구두계약 후 계약서 미비로 인한 비용결재 거부	9.1
6	문17	프로젝트 완료 후 개발비 지급 지연 및 거부	8.6
7	문18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불인정	7.8
8	문16	결과물 납품 후 결과물에 대한 추가 요구	5.8
9	문10	중도계약 해지 시 소요된 비용 불인정	4.4
10	문11	일방적 해지로 인한 타 프로젝트 수행기회 상실	4.4
11	문23	과도한 향응접대 요구	0.6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3.1.3.6 기타

불공정거래 피해 중 기타 거래대상과 관련된 피해의 피해금액 비율은 일방적 해지로 인한 타 프로젝트 수행기회 상실, 프로젝트 완료 후 개발비 지급 지연 및 거부, 제안서 제출 후 프로젝트 무산 관련 일방적 통보 등의 피해 금액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표10 피해대상이 기타일 경우 피해 유형 순위

(단위 : %)

순위	설문지 문항	피해 유형	비율
1	문11	일방적 해지로 인한 타 프로젝트 수행기회 상실	16.3
2	문17	프로젝트 완료 후 개발비 지급 지연 및 거부	14.3
3	문12	제안서 제출 후 프로젝트 무산 관련 일방적 통보	11.3
4	문14	계약 후 무리한 디자인 개발 방향변경 및 수정 요청	11.1
5	문15	계약과 상관없는 별도의 개발 요구	10.7
6	문7	구두계약 후 계약서 미비로 인한 비용결재 거부	10.0
7	문16	결과물 납품 후 결과물에 대한 추가 요구	7.2
8	문13	시안경쟁PT 리젝트피 미지급	7.0
9	문18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불인정	6.5
10	문10	중도계약 해지 시 소요된 비용 불인정	5.5
11	문23	과도한 항응접대 요구	0.3

3.2 지식재산권 관련 피해

3.2.1. 총괄

디자인개발 프로젝트 수행 시 피해 중 지식재산권 관련 피해를 경험한 기업의 비율은 전체의 35.0%로 나타났습니다. 지식재산권은 발명, 상표, 의장 등의 산업재산권과 문학·음악·미술 작품 등에 관한 저작권의 총칭으로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특허법, 상표법, 발명보호법 등을 통해 보호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지식재산권으로 인한 피해는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보다 낮은 수준으로 집계되었지만, 최근 지식재산권의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지식재산권에 대한 분쟁이 보다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공정한 디자인 산업환경 조성을 위해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식재산권 피해를 경험한 디자인 전문기업들은 평균 1.6종의 피해를 경험하였고 피해 횟수는 평균 2.4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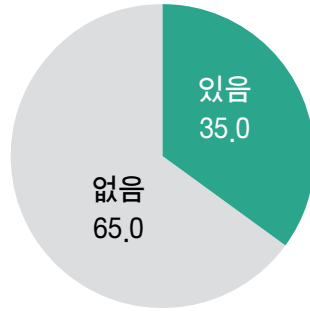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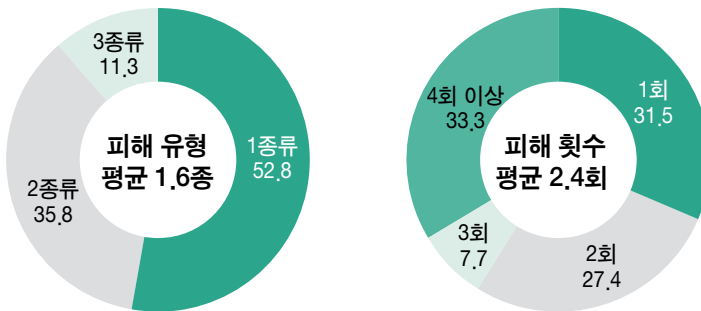


그림76
지재권 피해유무
(단위 : %)

참고 :
〈표11〉 지재권 피해
금액, 59p

그림77 불공정거래 피해유형 경험 종류 및 피해 횟수

(단위 : %)



참고 : 〈표-부록2-4-4〉 디자인 피해유형 경험 종류 - 지재권, 〈표-부록2-4-5〉 디자인피해경험 횟수-지재권, 87p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지식재산권 피해로 인한 피해금액은 총 79.3억여원으로 조사되었으며, 국내 디자인전문회사 4,902개(한국디자인진흥원 신고업체에 한함)으로 짐작할 때, 디자인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피해 금액은 총 1,201억여원으로 추산됩니다. 이를 감안하면 디자인 전문회사들은 연간 평균 약 2400만원의 지식재산권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표11 지재권 피해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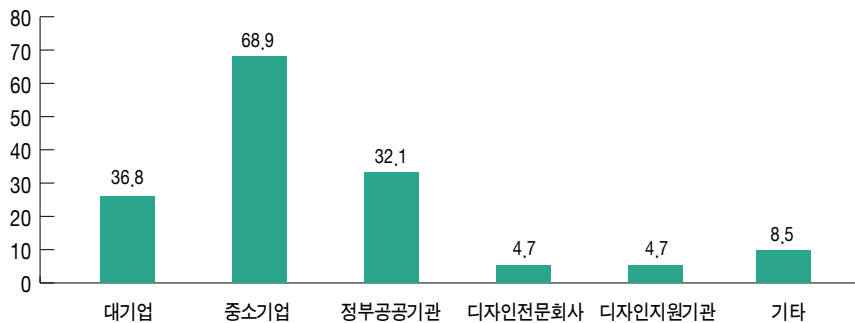
(단위 : 개, %, 억원)

	피해기업 수	피해비율	피해금액	
			응답금액(억원)	전체추정(환산) 금액(억원)
전체	(106)	35.0	79.3	1,201.7
규정 책임한도를 벗어난 지식재산권 저촉문제 배상요구	(19)	6.3	3.9	58.4
경쟁입찰에 제출한 시안의 무단 도용	(75)	24.8	38.1	577.5
계약조항 외의 지식재산권 양도 요구	(74)	24.4	37.3	565.8

지식재산권 피해 경험시의 분쟁 대상은 중소기업인 경우가 68.9%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대기업과의 피해경험 비율은 36.8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림78 지재권 피해경험 대상

(단위 : %)



참고 : <표-부록2-5-3> 지난 1년간 분쟁이 있었던 상대방_1+2+3+4순위(복수응답) - 지재권, 89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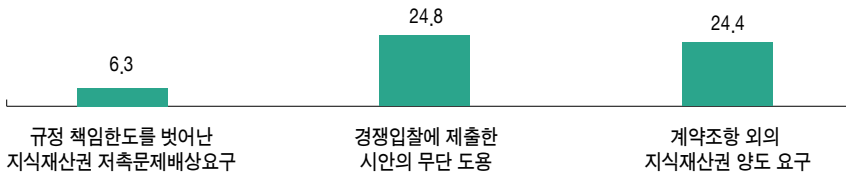
3.2.2. 피해 유형별 분석

3.2.2.1 종합

지식재산권 피해를 경험한 디자인 전문기업들은 경쟁입찰에 제출한 시안을 무단도용 당한 경험의 비율이 24.8%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외에도 계약 조항외의 지식재산권 양도 요구 또한 24.4%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림79 지식재산권 피해유형별 피해 비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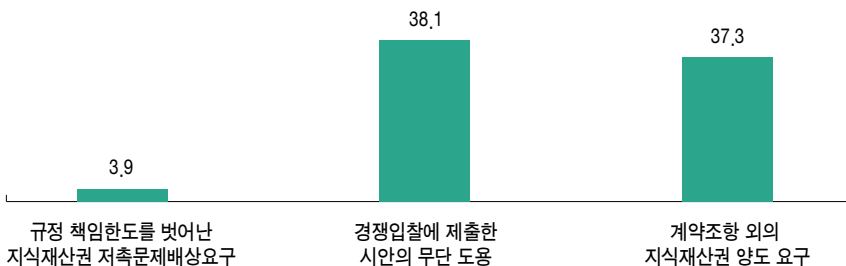


참고 : <표11> 지재권 피해금액, 59p

지식재산권 피해유형별 피해금액은 경쟁입찰에 제출한 시안의 무단도용 관련 피해금액이 38.1억원으로 조사되었고, 계약조항 외의 지식재산권 양도요구는 37.3억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림80 지식재산권 피해유형별 피해 금액

(단위 : %)



참고 : <표11> 지재권 피해금액, 59p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3.2.2.2 지식재산권 관련 피해 현황

□ 계약에서 규정한 책임한도를 벗어난 지식재산권 저촉문제를 이유로 배상을 요구당한 경험

디자인 전문기업 중 계약에서 규정한 책임한도를 벗어난 지식재산권 저촉문제를 이유로 배상을 요구당한 경험을 보유한 기업의 비율은 6.3%로 낮은편이었습니다.

계약에서 규정한 책임한도를 벗어난 지식재산권 저촉문제를 이유로 배상을 요구당한 경험이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1회 정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종사자 규모 11~20명 기업의 경우에는 2회라는 응답이 50.0%였으며, 4회 이상이라는 응답 또한 25.0%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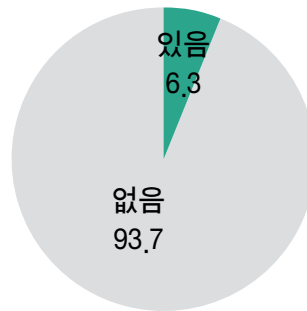


그림81
계약에서 규정한 책임한도를 벗어난 지식재산권 저촉문제를 이유로 배상을 요구당한 경험 유무 (단위 : %)

참고 :
〈표-부록2-57〉 계약에서 규정한 책임한도를 벗어난 지식재산권 저촉문제를 이유로 배상을 요구당한 경험 유무, 115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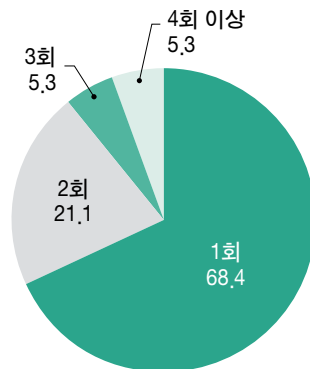


그림82
계약에서 규정한 책임한도를 벗어난 지식재산권 저촉문제를 이유로 배상을 요구당한 경험 횟수 (단위 : %)

참고 :
〈표-부록2-58〉 계약에서 규정한 책임한도를 벗어난 지식재산권 저촉문제를 이유로 배상을 요구당한 경험 횟수, 116p

계약에서 규정한 책임한도를 벗어난 지식재산권 저촉문제를 이유로 배상을 요구당한 경우의 총 피해비용은 5백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42.1%로 가장 높았습니다. 다만, 기업규모 5~10억원인 기업의 경우 33.3%가 1억~2억원 미만인 경우가 있었다고 응답하였으며, 종사자 규모 11~20명인 경우에도 25.0%가 1~2억원 규모였다고 응답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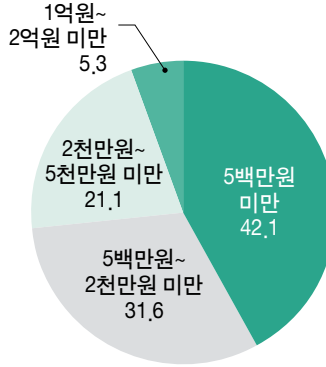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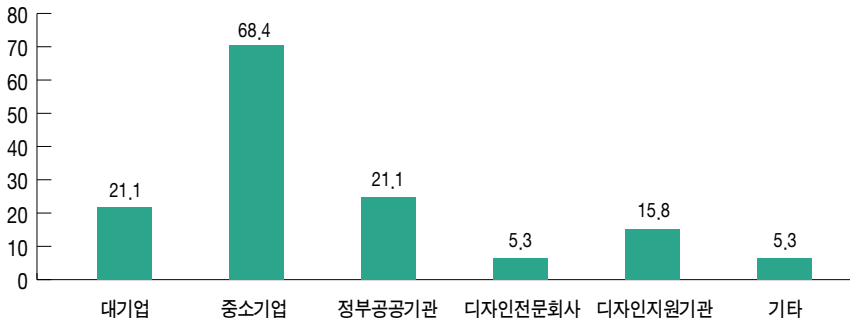


그림83
계약에서 규정한 책임한도를 벗어난 지식재산권 저촉문제를 이유로 배상을 요구당한 경험 총 피해비용
(단위 : %)

참고 :
〈표-부록2-59〉 계약에서 규정한 책임한도를 벗어난 지식재산권 저촉문제를 이유로 배상을 요구당한 경험 총 피해비용, 116p

계약에서 규정한 책임한도를 벗어난 지식재산권 저촉문제는 주로 중소기업과의 분쟁이 68.4%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림84 계약에서 규정한 책임한도를 벗어난 지식재산권 저촉문제를 이유로 배상을 요구당한 경험 분쟁 대상
(단위 : %)



참고 : 〈표-부록2-60〉 계약에서 규정한 책임한도를 벗어난 지식재산권 저촉문제를 이유로 배상을 요구당한 경험 분쟁대상, 117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 경쟁입찰에 제출한 시안을 무단으로 도용당한 경험

디자인 피해기업 중 경쟁입찰에 제출한 시안을 무단으로 도용당한 경험이 있는 기업의 비율은 24.8%였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기업의 피해 비율이 29.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매출규모별로는 3~5억원 기업이 31.0%, 종사자 규모별로는 5인 이하 기업이 33.9%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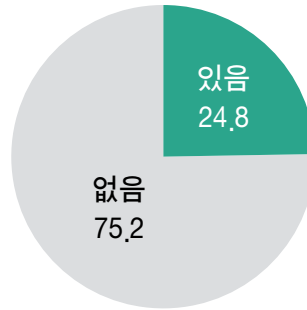


그림85
경쟁입찰에 제출한 시안을 무단으로 도용당한 경험 유무
(단위 : %)

참고 :
〈표-부록2-61〉 경쟁입찰에 제출한 시안을 무단으로 도용당한 경험 유무, 117p

경쟁입찰에 제출한 시안을 무단으로 도용당한 경험이 있는 기업들은 1회 경험한 비율이 33.3%로 가장 많고 2회 또한 32.0%로 많았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호남권은 1회 경험한 기업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경상권은 2회 경험한 기업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기업규모별로 보면 5~10억원 규모 기업의 경우 2회 경험한 기업의 비율이 43.8%, 4회 경험한 기업의 비율이 37.5% 등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종사자 규모별로는 11~20명 규모 기업의 경우 4회 이상 경험한 기업의 비율이 53.8%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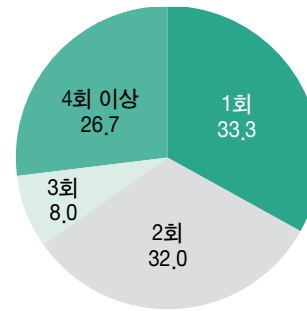


그림86
경쟁입찰에 제출한 시안을 무단으로 도용당한 경험횟수
(단위 : %)

참고 :
〈표-부록2-62〉 경쟁입찰에 제출한 시안을 무단으로 도용당한 경험 횟수, 118p

경쟁입찰에 제출한 시안을 무단으로 도용당한 경우의 피해비용은 5백만원~2천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38.7%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대부분 5백만원~2천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가운데 충청강원권이 6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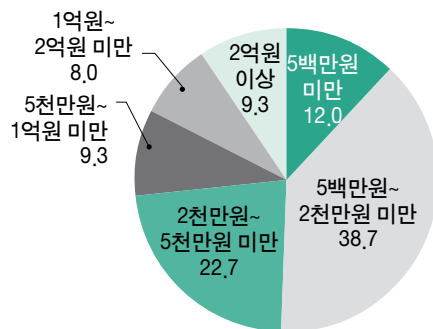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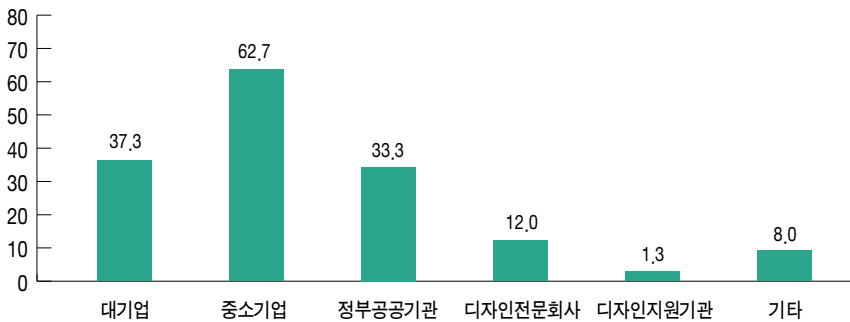
그림87
경쟁입찰에 제출한 시안을 무단으로 도용당한 경험 총 피해비용
(단위 : %)

참고 :
〈표-부록2-63〉 경쟁입찰에 제출한 시안을 무단으로 도용당한 경험 총 피해비용, 118p

가장 높았고, 경상권의 경우에는 5천만원~1억원 규모 기업의 비율이 33.3%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기업규모별로도 큰 차이는 없었으며, 종사자 규모별로는 21명 이상 기업의 경우 2천만원~5천만원 미만과 1억원~2억원 미만의 피해 규모가 다소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쟁입찰에 제출한 시안을 무단으로 도용당한 경우 주로 중소기업과 분쟁이 있었던 경우가 62.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대기업이 37.3%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종사자 규모별로 21명 이상 기업의 경우 대기업과의 분쟁 경험이 있었던 기업의 비율이 66.7%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림88 경쟁입찰에 제출한 시안을 무단으로 도용당한 경험 분쟁 대상 (단위 : %)



참고 : <표-부록2-64> 경쟁입찰에 제출한 시안을 무단으로 도용당한 경험 분쟁대상, 119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 계약조항 외에 디자인 개발에 따른 모든 지식재산권 양도를 요구당한 경험

디자인 피해기업 중 계약조항 외에 디자인 개발에 따른 모든 지식재산권 양도를 요구당한 경험을 보유한 기업의 비율은 24.4%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기업의 피해 비율이 29.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매출규모별로는 3~5억원 기업이 37.9%, 종사자 규모별로는 6~10인 기업이 28.4%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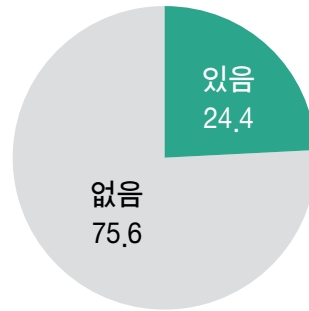


그림89
계약조항 외에 디자인 개발에 따른 모든 지식재산권 양도를 요구당한 경험 유무
(단위 : %)

참고 :
〈표-부록2-65〉 계약조항 외에 디자인 개발에 따른 모든 지식재산권 양도를 요구당한 경험 유무, 119p

계약조항 외에 디자인 개발에 따른 모든 지식재산권 양도를 요구당한 경험 횟수는 4회 이상인 기업의 비율이 47.3%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특히 수도권기업들의 4회 이상 경험 비율이 56.1%로 높게 나타났으며, 호남권의 경우에는 3회라고 응답한 비율이 6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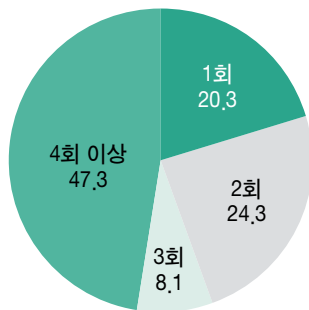


그림90
계약조항 외에 디자인 개발에 따른 모든 지식재산권 양도를 요구당한 경험 횟수
(단위 : %)

참고 :
〈표-부록2-66〉 계약조항 외에 디자인 개발에 따른 모든 지식재산권 양도를 요구당한 경험 횟수, 120p

기업규모별로는 5억~10억원 미만 규모 기업의 4회 이상 경험 비율이 56.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종사자 규모별로는 11~20명 규모 기업의 4회 이상 경험 비율이 54.5%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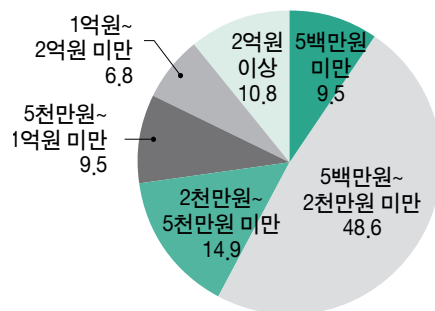


그림91
계약조항 외에 디자인 개발에 따른 모든 지식재산권 양도를 요구당한 경험 총 피해비용
(단위 : %)

참고 :
〈표-부록2-67〉 계약조항 외에 디자인 개발에 따른 모든 지식재산권 양도를 요구당한 경험 총 피해비용, 120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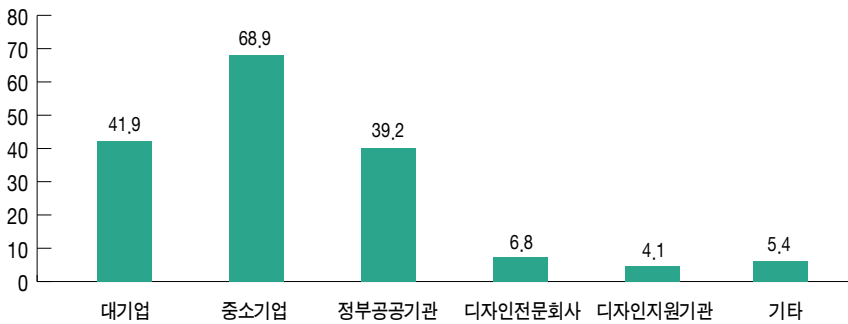
계약조항 외에 디자인 개발에 따른 모든 지식재산권 양도를 요구당한 경우의 피해비용은 5백만원~2천만원 미만이었다고 응답한 기업이 48.6%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역별, 기업규모별로는 큰 차이점이 나타나지는 않았으며, 종사자 규모별로 살펴보면 11~20명 기업의 경우 피해비용이 2억원 이상이었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율이 36.4%로 매우 높게 나타난 것이 특징적이었습니다.

계약조항 외에 디자인 개발에 따른 모든 지식재산권 양도를 요구당한 경험이 있는 경우의 분쟁대상은 중소기업인 경우가 68.9%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대기업이 41.9%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수도권외의 경우 50.9%의 기업이 대기업과의 분쟁 경험도 보유하고 있었으며, 매출액 10억원 이상 기업의 경우에도 대기업과의 분쟁비율이 59.1%로 타 기업군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종사자 규모별로는 11명~20명 규모 기업의 대기업과의 분쟁 비율이 72.7%, 21명 이상 기업의 경우에도 66.7%로 높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림92 계약조항 외에 디자인 개발에 따른 모든 지식재산권 양도를 요구당한 경험 분쟁대상

(단위 : %)



참고 : <표-부록2-68> 계약조항 외에 디자인 개발에 따른 모든 지식재산권 양도를 요구당한 경험 분쟁대상, 121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3.2.3. 분쟁대상별 분석

3.2.3.1 대기업

지식재산권 피해 중 대기업과의 피해를 경험한 경우에는 계약조항 외의 지식재산권 양도 요구와 관련된 피해 금액의 비율이 51.0%로 절반 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표12 피해대상이 대기업일 경우 피해 유형 순위

(단위 : %)

순위	설문지 문항	피해 유형	비율
1	문21	계약조항 외의 지식재산권 양도 요구	51.0
2	문20	경쟁입찰에 제출한 시안의 무단 도용	46.4
3	문19	규정 책임한도를 벗어난 지식재산권 저촉문제 배상요구	2.6

3.2.3.2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피해 중 중소기업과의 피해를 경험한 경우 또한 계약조항 외의 지식재산권 양도 요구의 피해금액 비율이 49.2%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표13 피해대상이 중소기업일 경우 피해 유형 순위

(단위 : %)

순위	설문지 문항	피해 유형	비율
1	문21	계약조항 외의 지식재산권 양도 요구	49.2
2	문20	경쟁입찰에 제출한 시안의 무단 도용	45.7
3	문19	규정 책임한도를 벗어난 지식재산권 저촉문제 배상요구	5.0

3.2.3.3 정부·공공기관

지식재산권 피해 중 정부공공기관과의 피해를 경험한 경우에도 계약조항 외의 지식재산권 양도 요구와 관련된 피해 금액 비율이 52.0%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표14 피해대상이 정부공공기관기업일 경우 피해 유형 순위

(단위 : %)

순위	설문지 문항	피해 유형	비율
1	문21	계약조항 외의 지식재산권 양도 요구	52.0
2	문20	경쟁입찰에 제출한 시안의 무단 도용	45.1
3	문19	규정 책임한도를 벗어난 지식재산권 저촉문제 배상요구	2.9

3.2.3.4 디자인 전문회사

지식재산권 피해 중 대기업과의 피해를 경험한 경우에는 경쟁입찰에 제출한 시안의 무단도용과 관련된 피해 금액 비율이 62.7%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동종업계라는 특징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됩니다.

표15 피해대상이 디자인 전문회사일 경우 피해 유형 순위 (단위 : %)

순위	설문지 문항	피해 유형	비율
1	문20	경쟁입찰에 제출한 시안의 무단 도용	62.7
2	문21	계약조항 외의 지식재산권 양도 요구	34.6
3	문19	규정 책임한도를 벗어난 지식재산권 저촉문제 배상요구	2.8

3.2.3.5 디자인 지원기관

지식재산권 피해 중 디자인 지원기관과의 피해를 경험한 경우에는 계약조항 외의 지식재산권 양도 요구와 관련된 피해금액 비율이 57.5%로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표16 피해대상이 디자인 지원기관일 경우 피해 유형 순위 (단위 : %)

순위	설문지 문항	피해 유형	비율
1	문21	계약조항 외의 지식재산권 양도 요구	57.5
2	문19	규정 책임한도를 벗어난 지식재산권 저촉문제 배상요구	23.1
3	문20	경쟁입찰에 제출한 시안의 무단 도용	19.3

3.2.3.6 기타

지식재산권 피해 중 디자인 지원기관과의 피해를 경험한 경우에는 경쟁입찰에 제출한 시안의 무단도용과 관련된 피해의 피해금액 비율이 57.9%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표17 피해대상이 기타일 경우 피해 유형 순위

(단위 : %)

순위	설문지 문항	피해 유형	비율
1	문20	경쟁입찰에 제출한 시안의 무단 도용	57.9
2	문21	계약조항 외의 지식재산권 양도 요구	38.3
3	문19	규정 책임한도를 벗어난 지식재산권 저촉문제 배상요구	3.8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Chapter

기타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4

4.1 피해가 아닌 디자인개발 진행과정상 발생한 사례



4.1 피해가 아닌 디자인개발 진행과정상 발생한 사례

□ 개발결과물의 하자를 이유로 잔금지연 혹은 못받은 경험

전체 응답기업들 중 개발결과물의 하자를 이유로 잔금 지급을 지연당하거나 못 받은 경험이 있는 기업의 비율은 32.3%였습니다. 특히 수도권 기업의 경험 비율이 37.2%로 높게 나타났고, 기업규모별로는 3~5억원 기업 41.4%, 종사자규모별로는 5명 이하 기업이 37.3%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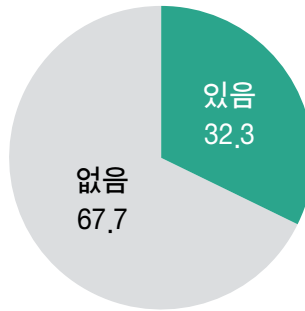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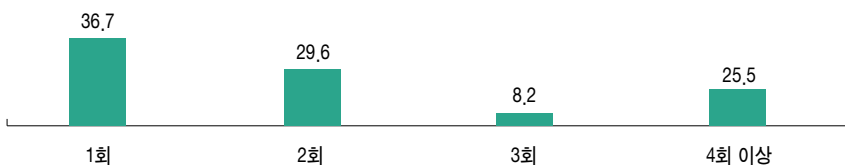


그림93
개발결과물의 하자를 이유로 잔금 지연 혹은 못받은 경험 유무
(단위 : %)

참고 :
〈표-부록2-76〉
개발결과물의 하자를
이유로 잔금 지연 혹은
못받은 경험 유무, 125p

개발결과물의 하자를 이유로 잔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못 받은 경우를 경험해 본 횟수는 1회인 경우가 36.7%로 가장 많았고, 2회 29.6%, 4회 이상 25.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강원권 기업의 경우에는 2회라는 응답 비율이 42.9%로 가장 높았고, 기업규모 1~3억원 및 5~10억원 기업의 경우에도 2회라는 응답의 비율이 45.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종사자 규모별로는 21명 이상 기업의 경우 4회 이상이라는 응답이 42.9%로 높게 나타났고, 11~20명 기업의 경우에도 4회 이상이라는 응답이 45.0%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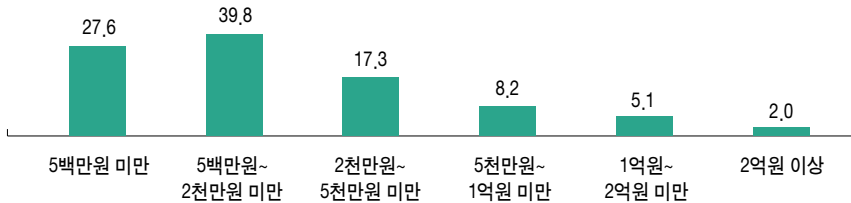
그림94 개발결과물의 하자를 이유로 잔금 지연 혹은 못 받은 경험 횟수 (단위 : %)



참고 : 〈표-부록2-77〉 개발결과물의 하자를 이유로 잔금 지연 혹은 못받은 경험 횟수, 125p

개발 결과물의 하자를 이유로 잔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못받은 경우의 피해비용은 5백만원~2천만원 미만이었다는 응답 비율이 39.8%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충청강원권의 경우에는 5백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71.4%로 높게 나타난 것이 특징이며, 기업규모별로는 1~3억원 규모 기업의 경우 5백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의 비율이 45.5%로 가장 높았습니다. 종사자 규모별로는 21명 이상 기업의 경우 2천만원~5천만원 미만이라는 응답 비율이 42.9%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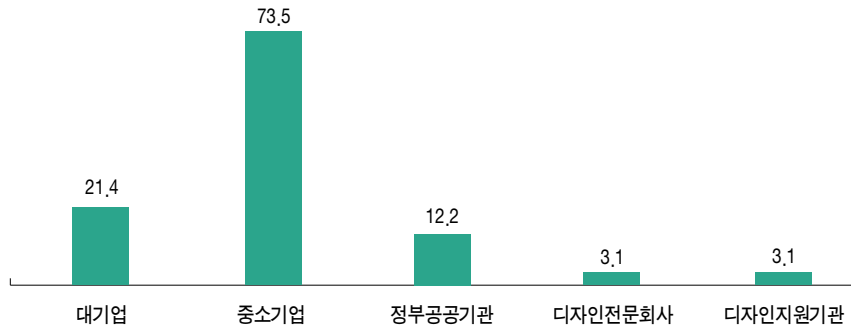
그림95 개발결과물의 하자를 이유로 잔금 지연 혹은 못 받은 경험 총 피해비용 (단위 : %)



참고 : <표-부록2-78> 개발결과물의 하자를 이유로 잔금 지연 혹은 못 받은 경험 총 피해비용, 126p

개발결과물의 하자를 이유로 잔금 지연 혹은 못 받은 경우 73.5%가 중소기업과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 기업규모별, 종사자 규모별로 큰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종사자 규모 11~20명 규모 기업의 경우 대기업과의 분쟁 비율이 45.0%로 타 기업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이 특징입니다.

그림96 개발결과물의 하자를 이유로 잔금 지연 혹은 못 받은 경험 분쟁 대상 (단위 : %)



참고 : <표-부록2-79> 개발결과물의 하자를 이유로 잔금 지연 혹은 못 받은 경험 분쟁대상, 126p

□ 표준계약서 활용 경험

응답기업들 중 표준계약서를 활용한 경험을 보유한 기업의 비율은 48.8%로 아직까지는 절반 이하였습니다. 표준계약서 활용 경험 기업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수도권으로 54.5%가 활용 경험이 있었으며, 제주도를 제외하면 호남권의 활용 비율이 34.3%로 가장 낮았습니다. 기업규모별로는 10억원 이상 기업의 활용 비율이 54.2%로 가장 높았고, 종사자 규모별로는 21명 이상 기업의 활용 비율이 64.3%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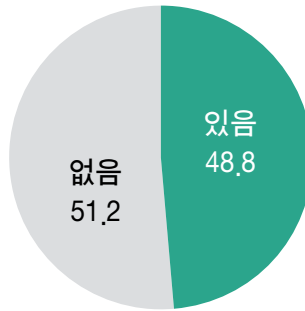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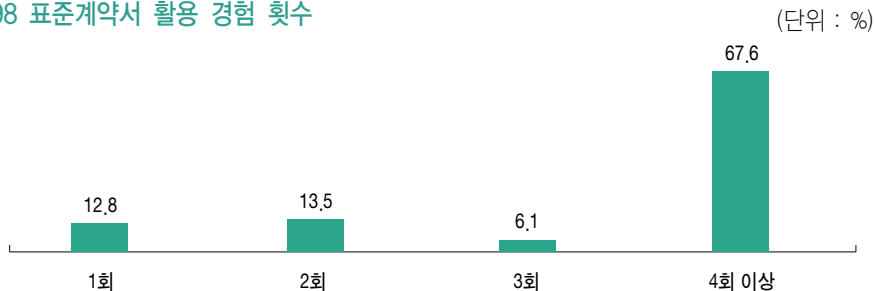


그림97
표준계약서 활용
경험 유무
(단위 : %)

참고 :
〈표-부록2-80〉
표준계약서 활용 경험
유무, 127p

표준계약서를 활용한 기업들의 경우 활용 횟수는 4회 이상인 경우가 67.6%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림98 표준계약서 활용 경험 횟수



참고 : 〈표-부록2-81〉 표준계약서 활용 경험 횟수, 127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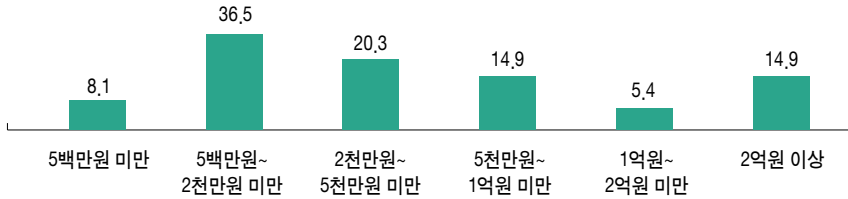
표준계약서 활용 경험이 있는 경우의 총 용역비 규모는 5백만원~2천만원 미만인 경우가 36.5%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충청강원권의 경우에는 2천만원~5천만원인 경우가 40.0%로 가장 많았고, 호남권 또한 2천만원~5천만원인 경우가 3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기업규모별로 보면 10억원 이상 기업의 경우 용역비 규모가 2억원 이상이라는 응답 비율이 26.9%로 높게 나타난 것이 특징이며, 종사자규모별로는 21명 이상 기업의 경우 2억원 이상이라는 응답 비율이 27.8%로 높은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그림99 표준계약서 활용 경험 총 용역비 규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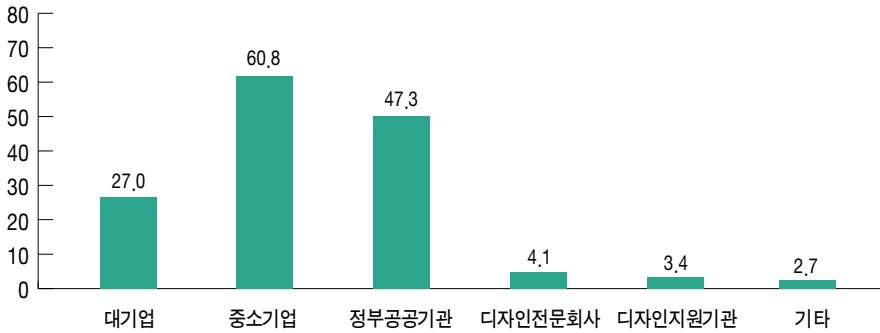


참고 : <표-부록2-82> 표준계약서 활용 경험 총 용역비 규모, 128p

표준계약서 활용시의 대상으로는 중소기업인 경우가 60.8%로 가장 많았으며, 정부공공기관 47.3%, 대기업 27.0%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권의 경우에는 정부공공기관과의 표준계약서 활용 경험 비율이 65.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업규모별로는 5억~10억원 미만 기업에서 정부공공기관과의 표준계약서 활용 경험 비율이 63.6%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림101 표준계약서 활용 경험 대상

(단위 : %)



참고 : <표-부록2-83> 표준계약서 활용 경험 대상, 128p

디자인전문회사 피해사례 실태조사 설문

안녕하십니까?

한국디자인진흥원과 (사)한국디자인기업협회에서는 디자인전문회사의 정확한 피해 실태 파악을 통한 효과적인 정책 수립 건의와 디자인산업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디자인전문회사 피해사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는 디자인전문회사의 일반현황 및 디자인전문회사의 프로젝트 수행 관련, 불공정 거래, 지적권 분쟁사례 등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디자인전문회사의 피해를 예방하고 발전적인 <디자인기업 피해지원센터>를 만들기 위한 초석이 되는 중요한 조사입니다.

응답해주신 모든 내용은 통계 처리되어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조사의 설문내용 및 개인 신상은 통계법(2014. 11. 19 시행) 제33조에 의해 비밀이 보장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어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공정거래란?

1. 일방적으로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2. 터무니없이 싸게 팔거나 혹은 비싸게 구입하여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
3. 지위의 우월함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변경하는 행위

지식재산권이란?

지식재산권은 발명·상표·의장(意匠) 등의 산업재산권과 문학·음악·미술 작품 등에 관한 저작권의 총칭으로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특허법, 상표법, 발명보호법 등을 통해 보호 받을 수 있는 권리



SECTION 1. 디자인전문회사 소재 파악

문항1) 귀사의 소재지에 V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복가능)

- | | | | |
|----------|----------|----------|----------|
| ① 서울 () | ② 부산 () | ③ 대구 () | ④ 인천 () |
| ⑤ 대전 () | ⑥ 울산 () | ⑦ 경기 () | ⑧ 강원 () |
| ⑨ 충남 () | ⑩ 전북 () | ⑪ 전남 () | ⑫ 경북 () |
| ⑬ 제주 () | ⑭ 광주 () | ⑮ 충북 () | ⑯ 경남 () |

문항2) 귀사에서 주로 생산하거나 서비스하는 품목에 V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복가능)

- | | | | |
|-------------|--------------|--------------|-----------------|
| ① 제품디자인 () | ② 시각디자인 () | ③ 패키지디자인 () | ④ 디지털미디어디자인 () |
| ⑤ 환경디자인 () | ⑥ 서비스디자인 () | ⑦ 기타 () | |

문항3) 귀사의 기업규모 확인을 위한 설문입니다. 지난 1년간 귀사의 총 매출액에 해당되는 항목에 대해 V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① 1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 ②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③ 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 ④ 2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 ⑤ 3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 ⑥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⑦ 10억원 이상

문항4) 현재 귀사의 직원은 모두 몇 명입니까?

- | | | | |
|--------------|----------|----------|----------|
| ① (대표 포함) 3명 | ② 4-5명 | ③ 6-10명 | ④ 11-15명 |
| ⑤ 16-20명 | ⑥ 21-50명 | ⑦ 51명 이상 | |

SECTION 2. 디자인전문회사 피해 사례 현황

문항5) 귀사에서 디자인개발 프로젝트 수행 시 피해를 입으신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문항6** 으로 이동하여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② 없다 (SECTION 3으로 이동하여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문항6) 지난 1년간 귀사와 분쟁이 있었던 상대방에 V표시를 해주시고 ()에 빈도수가 많았던 순위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가능)

- ① 대기업 ()
- ② 중소기업 ()
- ③ 정부공공기관 ()
- ④ 디자인전문회사 ()
- ⑤ 디자인지원기관 ()
- ⑥ 기타 ()

다음 17개의 문항은 디자인전문회사에서 경험하는 피해사례입니다. 지난 2014년(2014. 01 ~ 2014. 12.)동안 귀사의 경우에 해당하는 곳에 V 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계약체결관련 피해사례

문항	피해유형	유무여부	횟수	총 피해비용	분쟁대상(중복가능)
문항7)	구두계약으로 프로젝트를 진행 완료하였으나 계약서 미비로 인해 비용 결제를 거부당한 경험이 있다.	① 있다	① 1회	① 5백만원 미만 ② 5백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③ 2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④ 5천만원 이상 - 1억 미만 ⑤ 1억 이상 - 2억 미만 ⑥ 2억 이상	① 대기업 ② 중소기업 ③ 정부·공공기관 ④ 디자인전문회사 ⑤ 디자인지원기관 ⑥ 기타()
		② 없다	② 2회 ③ 3회 ④ 4회 이상		
문항8)	계약서 작성 시, “용역발주처(갑)”에게 과도하게 유리한 계약조항을 요구당한 경험이 있다.	① 있다	① 1회	-	① 대기업 ② 중소기업 ③ 정부·공공기관 ④ 디자인전문회사 ⑤ 디자인지원기관 ⑥ 기타()
		② 없다	② 2회 ③ 3회 ④ 4회 이상		

2. 계약해지관련 피해사례

문항	피해유형	유무여부	횟수	총 피해비용	분쟁대상(중복가능)
문항9)	디자인개발 프로젝트 진행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당한 경험이 있다	① 있다	① 1회	-	① 대기업 ② 중소기업 ③ 정부·공공기관 ④ 디자인전문회사 ⑤ 디자인지원기관 ⑥ 기타()
		② 없다	② 2회 ③ 3회 ④ 4회 이상		
문항10)	중도계약 해지 시에 소요된 비용(개발비, 인건비등)이 일방적으로 불인정된 경험이 있다.	① 있다	① 1회	① 5백만원 미만 ② 5백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③ 2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④ 5천만원 이상 - 1억 미만 ⑤ 1억 이상 - 2억 미만 ⑥ 2억 이상	① 대기업 ② 중소기업 ③ 정부·공공기관 ④ 디자인전문회사 ⑤ 디자인지원기관 ⑥ 기타()
		② 없다	② 2회 ③ 3회 ④ 4회 이상		

문항	피해유형	유무여부	횟수	총 피해비용	분쟁대상(중복가능)
문항11)	일방적 해지로 인해 다른 프로젝트 수행기회를 상실한 경우가 있다.	① 있다 ② 없다	① 1회 ② 2회 ③ 3회 ④ 4회 이상	① 5백만원 미만 ② 5백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③ 2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④ 5천만원 이상 - 1억 미만 ⑤ 1억 이상 - 2억 미만 ⑥ 2억 이상	① 대기업 ② 중소기업 ③ 정부공공기관 ④ 디자인전문회사 ⑤ 디자인지원기관 ⑥ 기타()

3. 제안 및 시안PT관련 피해사례

문항	피해유형	유무여부	횟수	총 피해비용	분쟁대상(중복가능)
문항12)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내 부사정으로 프로젝트가 무산되었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은 경험이 있다. (피해비용의 기준 : 제안 준비기간에 투입된 실비)	① 있다 ② 없다	① 1회 ② 2회 ③ 3회 ④ 4회 이상	① 5백만원 미만 ② 5백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③ 2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④ 5천만원 이상 - 1억 미만 ⑤ 1억 이상 - 2억 미만 ⑥ 2억 이상	① 대기업 ② 중소기업 ③ 정부공공기관 ④ 디자인전문회사 ⑤ 디자인지원기관 ⑥ 기타()
문항13)	시안경쟁PT에 참가하여 리젝트피(제안서 보상비)를 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 (시안경쟁PT 시 아이디어만 받고 비용을 주지 않은 경우를 포함)	① 있다 ② 없다	① 1회 ② 2회 ③ 3회 ④ 4회 이상	① 5백만원 미만 ② 5백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③ 2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④ 5천만원 이상	① 대기업 ② 중소기업 ③ 정부공공기관 ④ 디자인전문회사 ⑤ 디자인지원기관 ⑥ 기타()

4. 디자인개발과정상의 피해사례

문항	피해유형	유무여부	횟수	총 피해비용	분쟁대상(중복가능)
문항14)	계약 후 무리한 디자인개발 방향변경 및 수정작업을 요구당한 경험이 있다.	① 있다 ② 없다	① 1회 ② 2회 ③ 3회 ④ 4회 이상	① 5백만원 미만 ② 5백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③ 2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④ 5천만원 이상 ⑤ 1억 이상 - 2억 미만 ⑥ 2억 이상	① 대기업 ② 중소기업 ③ 정부공공기관 ④ 디자인전문회사 ⑤ 디자인지원기관 ⑥ 기타()
문항15)	계약내용과는 상관없는 별도의 개발을 (무상 혹은 낮은 가격으로) 요구당한 경험이 있다.	① 있다 ② 없다	① 1회 ② 2회 ③ 3회 ④ 4회 이상	① 5백만원 미만 ② 5백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③ 2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④ 5천만원 이상 - 1억 미만 ⑤ 1억 이상 - 2억 미만 ⑥ 2억 이상	① 대기업 ② 중소기업 ③ 정부공공기관 ④ 디자인전문회사 ⑤ 디자인지원기관 ⑥ 기타()

문항	피해유형	유무여부	횟수	총 피해비용	분쟁대상(중복가능)
문항16)	결과물 납품 완료 후, 결과물에 대하여 추가 요구를 당한 경험이 있다.	① 있다 ② 없다	① 1회 ② 2회 ③ 3회 ④ 4회 이상	① 5백만원 미만 ② 5백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③ 2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④ 5천만원 이상 - 1억 미만 ⑤ 1억 이상 - 2억 미만 ⑥ 2억 이상	① 대기업 ② 중소기업 ③ 정부·공공기관 ④ 디자인전문회사 ⑤ 디자인지원기관 ⑥ 기타()
문항17)	프로젝트 완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비 지급을 지연하거나 거부당한 경험이 있다.	① 있다 ② 없다	① 1회 ② 2회 ③ 3회 ④ 4회 이상	① 5백만원 미만 ② 5백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③ 2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④ 5천만원 이상 - 1억 미만 ⑤ 1억 이상 - 2억 미만 ⑥ 2억 이상	① 대기업 ② 중소기업 ③ 정부·공공기관 ④ 디자인전문회사 ⑤ 디자인지원기관 ⑥ 기타()
문항18)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이 불인정된 경험이 있다.	① 있다 ② 없다	① 1회 ② 2회 ③ 3회 ④ 4회 이상	① 5백만원 미만 ② 5백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③ 2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④ 5천만원 이상 - 1억 미만 ⑤ 1억 이상 - 2억 미만 ⑥ 2억 이상	① 대기업 ② 중소기업 ③ 정부·공공기관 ④ 디자인전문회사 ⑤ 디자인지원기관 ⑥ 기타()

5. 지재산권관련 피해사례

문항	피해유형	유무여부	횟수	총 피해비용	분쟁대상(중복가능)
문항19)	계약에서 규정한 책임한도를 벗어난 지식재산권 저촉 문제를 이유로 배상을 요구당한 경험이 있다.	① 있다 ② 없다	① 1회 ② 2회 ③ 3회 ④ 4회 이상	① 5백만원 미만 ② 5백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③ 2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④ 5천만원 이상 - 1억 미만 ⑤ 1억 이상 - 2억 미만 ⑥ 2억 이상	① 대기업 ② 중소기업 ③ 정부·공공기관 ④ 디자인전문회사 ⑤ 디자인지원기관 ⑥ 기타()
문항20)	경쟁 입찰에 참여하여 제출한 시안을 본인의 사용허락 없이 무단으로 도용당한 경험이 있다.	① 있다 ② 없다	① 1회 ② 2회 ③ 3회 ④ 4회 이상	① 5백만원 미만 ② 5백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③ 2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④ 5천만원 이상 - 1억 미만 ⑤ 1억 이상 - 2억 미만 ⑥ 2억 이상	① 대기업 ② 중소기업 ③ 정부·공공기관 ④ 디자인전문회사 ⑤ 디자인지원기관 ⑥ 기타()
문항21)	계약조항 외에 디자인 개발에 따른 모든 지식재산권의 양도를 요구당한 경험이 있다.	① 있다 ② 없다	① 1회 ② 2회 ③ 3회 ④ 4회 이상	① 5백만원 미만 ② 5백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③ 2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④ 5천만원 이상 - 1억 미만 ⑤ 1억 이상 - 2억 미만 ⑥ 2억 이상	① 대기업 ② 중소기업 ③ 정부·공공기관 ④ 디자인전문회사 ⑤ 디자인지원기관 ⑥ 기타()

6. 업무관계관련 피해사례

문항	피해유형	유무여부	횟수	총 피해비용	분쟁대상(중복가능)
문항22)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용역발주처(갑)”으로부터 모욕감이나 굴욕감을 느낀 경험이 있다. (응대회피, 지연, 무시 등)	① 있다 ② 없다	① 1회 ② 2회 ③ 3회 ④ 4회 이상	-	① 대기업 ② 중소기업 ③ 정부공공기관 ④ 디자인전문회사 ⑤ 디자인지원기관 ⑥ 기타()
문항23)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과도한 항응집대를 요구받은 사례가 있다.	① 있다 ② 없다	① 1회 ② 2회 ③ 3회 ④ 4회 이상	① 50만원 미만 ②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③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④ 300만원 이상	① 대기업 ② 중소기업 ③ 정부공공기관 ④ 디자인전문회사 ⑤ 디자인지원기관 ⑥ 기타()

SECTION 3. 디자인전문회사 피해 대응 현황

문항24) 귀사에서는 불공정거래 또는 지재권 분쟁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어떻게 대처 하십니까?

- ① 기업 내 법무전담인력 보유
- ② 전문가에 의뢰하여 해결 방안 모색
- ③ 피해 감수
- ④ 기 타 ()

문항25) 귀사가 피해를 감수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성 고려
- ② 소송비용 등 해결을 위한 비용부담
- ③ 대응절차의 복잡성
- ④ 대응방법 미숙지
- ⑤ 기 타 ()

문항26) 귀사가 피해를 입었을 때 구제를 위해 알고 있는 방법이나 타 유관기관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문항27) 귀사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① 비용 지원 (소송비용 등)
- ② 대응 절차, 방법 등에 대한 법률서비스 지원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 ③ 문제해결을 대행하여 주는 기관필요
- ④ 기 타 ()

문항28) 디자인전문회사 피해예방을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① 피해사례 유형분석을 통한 교육 및 홍보활동
- ② 법률지원서비스 (소송비용 지원, 무료상담 등)
- ③ 디자인 표준계약서 및 디자인대가기준 마련
- ④ 디자인가치 및 기준에 대한 인식 확산 캠페인
- ⑤ 기 타 ()

SECTION 4. 디자인기업피해지원센터 관련

문항29) 디자인산업 발전과 향후 불공정행위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1. 설문문항 이외에 디자인개발을 진행하며 발생한 사례
- 예2. 무료법률상담 및 피해예방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디자인기업피해지원센터>에 바라는 사항(필요한 지원정책)

SECTION 5. 피해가 아닌 디자인개발 진행과정상 발생한 사례 별도 조사

문항	유형	유무여부	횟수	금액	분쟁대상(중복가능)
문항 30)	개발결과물의 하자를 이유로 잔금을 지연 또는 못 받은 경험	① 있다 ② 없다	① 1회 ② 2회 ③ 3회 ④ 4회 이상	① 5백만원 미만 ② 5백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③ 2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④ 5천만원 이상 - 1억 미만 ⑤ 1억 이상 - 2억 미만 ⑥ 2억 이상	① 대기업 ② 중소기업 ③ 정부공공기관 ④ 디자인전문회사 ⑤ 디자인지원기관 ⑥ 기타()
문항 31)	표준계약서 양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험	① 있다 ② 없다	① 1회 ② 2회 ③ 3회 ④ 4회 이상	[용역비 규모] ① 5백만원 미만 ② 5백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③ 2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④ 5천만원 이상 - 1억 미만 ⑤ 1억 이상 - 2억 미만 ⑥ 2억 이상	① 대기업 ② 중소기업 ③ 정부공공기관 ④ 디자인전문회사 ⑤ 디자인지원기관 ⑥ 기타()

설문에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 031-780-2079
 (사)한국디자인기업협회 디자인기업피해지원센터 1577-4964 / www.designsos.co.kr

부록 2. 통계표

〈표-부록2-1〉 응답기업 일반현황

(단위 : 개, %)

		사례 수	비 중
전체		(303)	100.0
지역	수도권	(191)	63.0
	충청강원권	(24)	7.9
	호남권	(35)	11.6
	경상권	(46)	15.2
	제주	(7)	2.3
기업규모	1억원 미만	(17)	5.6
	1억~3억원 미만	(67)	22.1
	3억~5억원 미만	(58)	19.1
	5억~10억원 미만	(65)	21.5
	10억원 이상	(96)	31.7
종사자	5명 이하	(118)	38.9
	6~10명	(95)	31.4
	11~20명	(62)	20.5
	21명 이상	(28)	9.2
피해 경험	있음	(158)	52.1
	없음	(145)	47.9

문항1) 귀사의 소재지에 V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항2) 귀사에서 주로 생산하거나 서비스하는 품목에 V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항3) 귀사의 기업규모 확인을 위한 설문입니다. 지난 1년간 귀사의 총 매출액에 해당되는 항목에 대해 V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항4) 현재 귀사의 직원은 모두 몇 명입니까?

〈표-부록2-2〉 디자인전문회사 유형별 분포도

(단위 : 개, %)

	사례수	서비스 제공 분야							평균 분야수	
		제품 디자인	시각 디자인	패키지 디자인	디지털 미디어 디자인	환경 디자인	서비스 디자인	기타		
전체	(303)	28.7	54.8	24.8	12.9	38.6	9.9	7.9	1.8	
지역	수도권	(191)	25.7	50.8	20.9	12.6	36.1	9.9	8.9	1.6
	충청강원권	(24)	41.7	62.5	37.5	12.5	33.3	4.2	8.3	2.0
	호남권	(35)	28.6	68.6	37.1	14.3	37.1	8.6	5.7	2.0
	경상권	(46)	30.4	54.3	26.1	15.2	50.0	13.0	6.5	2.0
	제주	(7)	57.1	71.4	14.3	-	57.1	14.3	-	2.1
기업규모	1억원 미만	(17)	41.2	58.8	47.1	23.5	17.6	11.8	5.9	2.1
	1억~3억원 미만	(67)	29.9	64.2	37.3	14.9	28.4	7.5	6.0	1.9
	3억~5억원 미만	(58)	39.7	67.2	29.3	13.8	27.6	8.6	5.2	1.9
	5억~10억원 미만	(65)	23.1	46.2	21.5	9.2	50.8	10.8	3.1	1.6
	10억원 이상	(96)	22.9	45.8	11.5	11.5	47.9	11.5	14.6	1.7
종사자	5명 이하	(118)	30.5	61.0	30.5	7.6	33.1	11.9	6.8	1.8
	6~10명	(95)	25.3	47.4	20.0	14.7	47.4	7.4	5.3	1.7
	11~20명	(62)	32.3	58.1	24.2	17.7	38.7	9.7	9.7	1.9
	21명 이상	(28)	25.0	46.4	17.9	17.9	32.1	10.7	17.9	1.7

〈표-부록2-3〉 디자인 개발 프로젝트 수행 시 피해를 입은 경험 유무

(단위 : 개, %)

		사례수	피해경험		계
			있음	없음	
전체		(303)	52.1	47.9	100.0
지역	수도권	(191)	59.2	40.8	100.0
	충청강원권	(24)	50.0	50.0	100.0
	호남권	(35)	37.1	62.9	100.0
	경상권	(46)	41.3	58.7	100.0
	제주	(7)	14.3	85.7	100.0
기업규모	1억원 미만	(17)	47.1	52.9	100.0
	1억~3억원 미만	(67)	50.7	49.3	100.0
	3억~5억원 미만	(58)	72.4	27.6	100.0
	5억~10억원 미만	(65)	44.6	55.4	100.0
	10억원 이상	(96)	46.9	53.1	100.0
종사자	5명 이하	(118)	64.4	35.6	100.0
	6~10명	(95)	47.4	52.6	100.0
	11~20명	(62)	45.2	54.8	100.0
	21명 이상	(28)	32.1	67.9	100.0

〈표-부록2-4〉 디자인 피해유형 경험 종류

(단위 : 개, %, 종)

		사례수	피해유형 경험 종류				평균
			5종류 이하	6종~10종	11~15종	16~17종	
전체		(156)	15.4	41.7	33.3	9.6	10.0
지역	수도권	(112)	13.4	40.2	35.7	10.7	10.3
	충청강원권	(12)	8.3	33.3	50.0	8.3	10.5
	호남권	(13)	0.0	69.2	30.8	0.0	9.7
	경상권	(18)	44.4	33.3	11.1	11.1	7.7
	제주	(1)	0.0	100.0	0.0	0.0	7.0
기업규모	1억원 미만	(8)	37.5	37.5	25.0	0.0	8.5
	1억~3억원 미만	(34)	20.6	44.1	26.5	8.8	9.1
	3억~5억원 미만	(41)	12.2	39.0	34.1	14.6	10.4
	5억~10억원 미만	(28)	3.6	42.9	39.3	14.3	11.4
	10억원 이상	(45)	17.8	42.2	35.6	4.4	9.6
종사자	5명 이하	(75)	17.3	38.7	32.0	12.0	9.8
	6~10명	(44)	6.8	50.0	38.6	4.5	10.5
	11~20명	(28)	21.4	35.7	28.6	14.3	9.8
	21명 이상	(9)	22.2	44.4	33.3	0.0	8.7

〈표-부록2-4-1〉 디자인 피해경험 횟수

(단위 : 개, %, 증)

	사례수	피해유형 경험 종류				평균
		1회	2회	3회	4회 이상	
전체	1,252	468	423	139	523	2.3
비율	100.0	37.4	33.8	11.1	41.8	

〈표-부록2-4-2〉 디자인 피해유형 경험 종류 - 불공정거래

(단위 : 개, %, 증)

		사례수	피해유형 경험 종류			평균
			5종류 이하	6종~10종	11~15종	
전체		(156)	17.3	48.7	34.0	8.9
지역	수도권	(112)	14.3	48.2	37.5	9.2
	충청강원권	(12)	8.3	50.0	41.7	9.6
	호남권	(13)	7.7	76.9	15.4	8.9
	경상권	(18)	50.0	27.8	22.2	6.7
	제주	(1)	0.0	100.0	0.0	7.0
기업규모	1억원 미만	(8)	37.5	37.5	25.0	7.9
	1억~3억원 미만	(34)	20.6	52.9	26.5	8.2
	3억~5억원 미만	(41)	14.6	48.8	36.6	9.2
	5억~10억원 미만	(28)	3.6	50.0	46.4	10.1
	10억원 이상	(45)	22.2	46.7	31.1	8.5
종사자	5명 이하	(75)	18.7	49.3	32.0	8.7
	6~10명	(44)	9.1	50.0	40.9	9.4
	11~20명	(28)	25.0	46.4	28.6	8.8
	21명 이상	(9)	22.2	44.4	33.3	8.0

〈표-부록2-4-3〉 디자인 피해경험 횟수 - 불공정거래

(단위 : 개, %, 증)

	사례수	피해유형 경험 종류				평균
		1회	2회	3회	4회 이상	
전체	1,385	415	377	126	467	2.3
비율	100.0	30.0	27.2	9.1	33.7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표-부록2-4-4〉 디자인 피해유형 경험 종류 - 지재권

(단위 : 개, %, 종)

		사례수	피해유형 경험 종류			평균
			1종류 이하	2종	3종	
전체		(106)	52.8	35.8	11.3	1.6
지역	수도권	(75)	42.7	44.0	13.3	1.7
	충청강원권	(9)	88.9	0.0	11.1	1.2
	호남권	(9)	88.9	11.1	0.0	1.1
	경상권	(13)	61.5	30.8	7.7	1.5
	제주	(0)	0.0	0.0	0.0	0.0
기업규모	1억원 미만	(3)	66.7	0.0	33.3	1.7
	1억~3억원 미만	(21)	61.9	23.8	14.3	1.5
	3억~5억원 미만	(28)	50.0	35.7	14.3	1.6
	5억~10억원 미만	(22)	54.5	31.8	13.6	1.6
	10억원 이상	(32)	46.9	50.0	3.1	1.6
종사자	5명 이하	(51)	52.9	31.4	15.7	1.6
	6~10명	(34)	55.9	38.2	5.9	1.5
	11~20명	(17)	47.1	41.2	11.8	1.6
	21명 이상	(4)	50.0	50.0	0.0	1.5

〈표-부록2-4-5〉 디자인 피해경험 횟수 - 지재권

(단위 : 개, %, 종)

	사례수	피해유형 경험 종류				평균
		1회	2회	3회	4회 이상	
전체	168	53	46	13	56	2.4
비율	100.0	31.5	27.4	7.7	33.3	

〈표-부록2-5〉 지난 1년간 분쟁이 있었던 상대방_1+2+3+4순위(복수응답) (단위 : 개, %)

		사례 수	대기업	중소기업	정부공공 기관	디자인전 문화사	디자인지 원기관	기타
전체		(158)	28.5	69.6	29.7	4.4	3.8	9.5
지역	수도권	(113)	36.3	69.0	25.7	4.4	2.7	9.7
	충청강원권	(12)	8.3	75.0	50.0	8.3	8.3	8.3
	호남권	(13)	15.4	84.6	38.5	0.0	0.0	0.0
	경상권	(19)	5.3	63.2	31.6	5.3	10.5	15.8
	제주	(1)	0.0	0.0	100.0	0.0	0.0	0.0
기업규모	1억원 미만	(8)	0.0	87.5	25.0	0.0	0.0	0.0
	1억~3억원 미만	(34)	26.5	76.5	20.6	5.9	5.9	8.8
	3억~5억원 미만	(42)	16.7	78.6	23.8	2.4	2.4	4.8
	5억~10억원 미만	(29)	41.4	75.9	27.6	3.4	3.4	17.2
	10억원 이상	(45)	37.8	48.9	44.4	6.7	4.4	11.1
종사자	5명 이하	(76)	21.1	76.3	25.0	5.3	1.3	7.9
	6~10명	(45)	33.3	71.1	26.7	6.7	6.7	4.4
	11~20명	(28)	39.3	53.6	50.0	0.0	3.6	17.9
	21명 이상	(9)	33.3	55.6	22.2	0.0	11.1	22.2

문항6) 지난 1년간 귀사와 분쟁이 있었던 상대방에 V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표-부록2-5-1〉 지난 1년간 분쟁이 있었던 상대방_1순위 (단위 : 개, %)

		사례 수	대기업	중소기업	정부공공 기관	디자인전 문화사	디자인지 원기관	기타
전체		(158)	19.0	51.3	20.9	1.3	0.6	7.0
지역	수도권	(113)	26.5	47.8	16.8	0.9	0.9	7.1
	충청강원권	(12)	0.0	50.0	41.7	0.0	0.0	8.3
	호남권	(13)	0.0	76.9	23.1	0.0	0.0	0.0
	경상권	(19)	0.0	57.9	26.3	5.3	0.0	10.5
	제주	(1)	0.0	0.0	100.0	0.0	0.0	0.0
기업규모	1억원 미만	(8)	0.0	87.5	12.5	0.0	0.0	0.0
	1억~3억원 미만	(34)	23.5	50.0	17.6	2.9	0.0	5.9
	3억~5억원 미만	(42)	11.9	64.3	21.4	0.0	0.0	2.4
	5억~10억원 미만	(29)	24.1	55.2	10.3	0.0	0.0	10.3
	10억원 이상	(45)	22.2	31.1	31.1	2.2	2.2	11.1
종사자	5명 이하	(76)	15.8	55.3	19.7	2.6	0.0	6.6
	6~10명	(45)	20.0	62.2	15.6	0.0	0.0	2.2
	11~20명	(28)	25.0	25.0	39.3	0.0	0.0	10.7
	21명 이상	(9)	22.2	44.4	0.0	0.0	11.1	22.2

문항6) 지난 1년간 귀사와 분쟁이 있었던 상대방에 V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표-부록2-5-2〉 지난 1년간 분쟁이 있었던 상대방_1+2+3+4순위(복수응답) - 불공정거래

(단위 : 개, %)

		사례수	대기업	중소기업	정부공공 기관	디자인 전문회사	디자인 지원기관	기타
전체		(156)	28.8	69.9	30.1	4.5	3.8	9.0
지역	수도권	(112)	36.6	69.6	25.9	4.5	2.7	8.9
	충청강원권	(12)	8.3	75.0	50.0	8.3	8.3	8.3
	호남권	(13)	15.4	84.6	38.5	0.0	0.0	0.0
	경상권	(18)	5.6	61.1	33.3	5.6	11.1	16.7
	제주	(1)	0.0	0.0	100.0	0.0	0.0	0.0
기업규모	1억원 미만	(8)	0.0	87.5	25.0	0.0	0.0	0.0
	1억~3억원 미만	(34)	26.5	76.5	20.6	5.9	5.9	8.8
	3억~5억원 미만	(41)	17.1	80.5	24.4	2.4	2.4	2.4
	5억~10억원 미만	(28)	42.9	75.0	28.6	3.6	3.6	17.9
	10억원 이상	(45)	37.8	48.9	44.4	6.7	4.4	11.1
종사자	5명 이하	(75)	21.3	77.3	25.3	5.3	1.3	6.7
	6~10명	(44)	34.1	70.5	27.3	6.8	6.8	4.5
	11~20명	(28)	39.3	53.6	50.0	0.0	3.6	17.9
	21명 이상	(9)	33.3	55.6	22.2	0.0	11.1	22.2

문항6) 지난 1년간 귀사와 분쟁이 있었던 상대방에 V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표-부록2-5-3〉 지난 1년간 분쟁이 있었던 상대방_1+2+3+4순위(복수응답) - 지재권

(단위 : 개, %)

		사례수	대기업	중소기업	정부공공 기관	디자인 전문회사	디자인 지원기관	기타
전체		(106)	36.8	68.9	32.1	4.7	4.7	8.5
지역	수도권	(75)	48.0	68.0	30.7	4.0	2.7	8.0
	충청강원권	(9)	11.1	77.8	33.3	11.1	11.1	11.1
	호남권	(9)	11.1	77.8	44.4	0.0	0.0	0.0
	경상권	(13)	7.7	61.5	30.8	7.7	15.4	15.4
	제주	(0)	0.0	0.0	0.0	0.0	0.0	0.0
기업규모	1억원 미만	(3)	0.0	100.0	0.0	0.0	0.0	0.0
	1억~3억원 미만	(21)	42.9	71.4	19.0	4.8	9.5	14.3
	3억~5억원 미만	(28)	21.4	85.7	25.0	3.6	3.6	0.0
	5억~10억원 미만	(22)	40.9	81.8	31.8	4.5	4.5	13.6
	10억원 이상	(32)	46.9	40.6	50.0	6.3	3.1	9.4
종사자	5명 이하	(51)	31.4	78.4	25.5	5.9	2.0	7.8
	6~10명	(34)	32.4	70.6	29.4	5.9	8.8	5.9
	11~20명	(17)	58.8	47.1	64.7	0.0	5.9	11.8
	21명 이상	(4)	50.0	25.0	0.0	0.0	0.0	25.0

문항6) 지난 1년간 귀사와 분쟁이 있었던 상대방에 V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표-부록2-6〉 불공정거래 또는 지재권 분쟁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 대처 방안 (단위 : 개, %)

		사례 수	기업 내 법무전문인력 보유	전문가에 의뢰하여 해결방안 모색	피해 감수	기타
전체		(303)	1.7	39.6	51.8	6.9
지역	수도권	(191)	2.1	35.1	55.5	7.3
	충청강원권	(24)	0.0	37.5	54.2	8.3
	호남권	(35)	0.0	40.0	57.1	2.9
	경상권	(46)	2.2	56.5	34.8	6.5
	제주	(7)	0.0	57.1	28.6	14.3
기업규모	1억원 미만	(17)	0.0	23.5	64.7	11.8
	1억~3억원 미만	(67)	0.0	44.8	49.3	6.0
	3억~5억원 미만	(58)	1.7	31.0	58.6	8.6
	5억~10억원 미만	(65)	1.5	44.6	49.2	4.6
	10억원 이상	(96)	3.1	40.6	49.0	7.3
종사자	5명 이하	(118)	0.0	30.5	61.9	7.6
	6~10명	(95)	1.1	45.3	47.4	6.3
	11~20명	(62)	1.6	40.3	51.6	6.5
	21명 이상	(28)	10.7	57.1	25.0	7.1

문항24) 귀사에서는 불공정거래 또는 지재권 분쟁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표-부록2-7〉 피해를 감수하는 이유 (단위 : 개, %)

		사례 수	클라이언트 와의 관계성 고려	소송비용 등 해결을 위한 비용부담	대응절차의 복잡성	대응방법 미숙지	기타
전체		(303)	61.7	9.6	14.5	7.9	6.3
지역	수도권	(191)	61.8	10.5	14.1	5.8	7.9
	충청강원권	(24)	75.0	0.0	12.5	12.5	0.0
	호남권	(35)	60.0	14.3	11.4	11.4	2.9
	경상권	(46)	54.3	8.7	19.6	13.0	4.3
	제주	(7)	71.4	0.0	14.3	0.0	14.3
기업규모	1억원 미만	(17)	58.8	17.6	5.9	17.6	0.0
	1억~3억원 미만	(67)	56.7	11.9	17.9	9.0	4.5
	3억~5억원 미만	(58)	60.3	10.3	13.8	3.4	12.1
	5억~10억원 미만	(65)	64.6	6.2	15.4	10.8	3.1
	10억원 이상	(96)	64.6	8.3	13.5	6.3	7.3
종사자	5명 이하	(118)	58.5	11.0	15.3	9.3	5.9
	6~10명	(95)	64.2	8.4	14.7	6.3	6.3
	11~20명	(62)	61.3	8.1	17.7	9.7	3.2
	21명 이상	(28)	67.9	10.7	3.6	3.6	14.3

문항25) 귀사가 피해를 감수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표-부록2-8〉 피해를 입었을 때 구제를 위하여 알고 있는 방법이나 타 유관기관 유무

(단위 : 개, %)

		사례 수	방법 인지 유무	
			있다	없다
전체		(303)	18.2	81.8
지역	수도권	(191)	17.8	82.2
	충청강원권	(24)	16.7	83.3
	호남권	(35)	17.1	82.9
	경상권	(46)	19.6	80.4
	제주	(7)	28.6	71.4
기업규모	1억원 미만	(17)	17.6	82.4
	1억~3억원 미만	(67)	17.9	82.1
	3억~5억원 미만	(58)	13.8	86.2
	5억~10억원 미만	(65)	15.4	84.6
	10억원 이상	(96)	22.9	77.1
종사자	5명 이하	(118)	15.3	84.7
	6~10명	(95)	13.7	86.3
	11~20명	(62)	24.2	75.8
	21명 이상	(28)	32.1	67.9

문항26) 귀사가 피해를 입었을 때 구제를 위해 알고 있는 방법이나 타 유관기관이 있습니까?

〈표-부록2-9〉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

(단위 : 개, %)

		사례 수	비용지원 (소송비용 등)	대응 절차, 방법 등에 대한 법률서비스 지원	문제 해결을 대행하여 주는 기관 필요	기타
전체		(303)	10.6	40.3	44.6	4.6
지역	수도권	(191)	9.9	40.8	44.5	4.7
	충청강원권	(24)	16.7	25.0	50.0	8.3
	호남권	(35)	8.6	48.6	42.9	0.0
	경상권	(46)	13.0	37.0	45.7	4.3
	제주	(7)	0.0	57.1	28.6	14.3
기업규모	1억원 미만	(17)	17.6	29.4	47.1	5.9
	1억~3억원 미만	(67)	10.4	37.3	43.3	9.0
	3억~5억원 미만	(58)	6.9	41.4	50.0	1.7
	5억~10억원 미만	(65)	13.8	41.5	40.0	4.6
	10억원 이상	(96)	9.4	42.7	44.8	3.1
종사자	5명 이하	(118)	12.7	38.1	43.2	5.9
	6~10명	(95)	8.4	40.0	46.3	5.3
	11~20명	(62)	9.7	38.7	50.0	1.6
	21명 이상	(28)	10.7	53.6	32.1	3.6

문항27) 귀사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표-부록2-10〉 디자인전문회사 피해예방을 위해 해야 할 일

(단위 : 개, %)

		사례 수	피해사례 유형분석을 통한 교육 및 홍보활동	법률지원서비스 (소송비용 지원, 무료상담 등)	디자인 표준계약서 및 디자인대가기 준 마련	디자인 가치 및 기준에 대한 인식 확산 캠페인	기타
전체		(303)	11.9	23.1	33.7	28.4	3.0
지역	수도권	(191)	11.5	24.6	33.5	26.7	3.7
	충청강원권	(24)	4.2	8.3	33.3	54.2	0.0
	호남권	(35)	14.3	31.4	25.7	28.6	0.0
	경상권	(46)	13.0	21.7	37.0	23.9	4.3
	제주	(7)	28.6	0.0	57.1	14.3	0.0
기업규모	1억원 미만	(17)	5.9	23.5	35.3	35.3	0.0
	1억~3억원 미만	(67)	10.4	28.4	34.3	25.4	1.5
	3억~5억원 미만	(58)	8.6	25.9	29.3	36.2	0.0
	5억~10억원 미만	(65)	12.3	18.5	36.9	24.6	7.7
	10억원 이상	(96)	15.6	20.8	33.3	27.1	3.1
종사자	5명 이하	(118)	8.5	23.7	33.9	31.4	2.5
	6~10명	(95)	11.6	23.2	33.7	28.4	3.2
	11~20명	(62)	12.9	25.8	35.5	24.2	1.6
	21명 이상	(28)	25.0	14.3	28.6	25.0	7.1

문항28) 디자인전문회사 피해예방을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표-부록2-11〉 구두계약 진행 후 계약서 미비로 인해 비용결제 거부 피해 경험 유무

(단위 : 개, %)

		사례 수	피해경험 유무	
			있다	없다
전체		(303)	29.7	70.3
지역	수도권	(191)	34.6	65.4
	충청강원권	(24)	20.8	79.2
	호남권	(35)	22.9	77.1
	경상권	(46)	21.7	78.3
	제주	(7)	14.3	85.7
기업규모	1억원 미만	(17)	17.6	82.4
	1억~3억원 미만	(67)	29.9	70.1
	3억~5억원 미만	(58)	39.7	60.3
	5억~10억원 미만	(65)	30.8	69.2
	10억원 이상	(96)	25.0	75.0
종사자	5명 이하	(118)	36.4	63.6
	6~10명	(95)	29.5	70.5
	11~20명	(62)	22.6	77.4
	21명 이상	(28)	17.9	82.1

문항7) 구두계약으로 프로젝트를 진행 완료하였으나 계약서 미비로 인해 비용 결제를 거부당한 경험이 있다.

〈표-부록2-12〉 구두계약 진행 후 계약서 미비로 인한 비용결제 거부 피해 경험 횟수

(단위 : 개, %)

		사례 수	피해경험 횟수			
			1회	2회	3회	4회 이상
전체		(90)	38.9	38.9	6.7	15.6
지역	수도권	(66)	39.4	37.9	6.1	16.7
	충청강원권	(5)	60.0	20.0	0.0	20.0
	호남권	(8)	25.0	25.0	25.0	25.0
	경상권	(10)	30.0	70.0	0.0	0.0
	제주	(1)	100.0	0.0	0.0	0.0
기업규모	1억원 미만	(3)	33.3	66.7	0.0	0.0
	1억~3억원 미만	(20)	35.0	45.0	5.0	15.0
	3억~5억원 미만	(23)	39.1	47.8	8.7	4.3
	5억~10억원 미만	(20)	35.0	25.0	10.0	30.0
	10억원 이상	(24)	45.8	33.3	4.2	16.7
종사자	5명 이하	(43)	41.9	37.2	7.0	14.0
	6~10명	(28)	28.6	46.4	10.7	14.3
	11~20명	(14)	50.0	28.6	0.0	21.4
	21명 이상	(5)	40.0	40.0	0.0	20.0

문항7) 구두계약으로 프로젝트를 진행 완료하였으나 계약서 미비로 인해 비용 결제를 거부당한 경험이 있다.

〈표-부록2-13〉 구두계약 진행 후 계약서 미비로 인한 비용결제 거부 총 피해비용

(단위 : 개, %)

		사례 수	피해비용					
			5백만원 미만	5백만원~2천만원 미만	2천만원~5천만원 미만	5천만원~1억원 미만	1억원~2억원 미만	2억원 이상
전체		(90)	15.6	48.9	24.4	5.6	4.4	1.1
지역	수도권	(66)	15.2	47.0	22.7	7.6	6.1	1.5
	충청강원권	(5)	40.0	40.0	20.0	0.0	0.0	0.0
	호남권	(8)	0.0	75.0	25.0	0.0	0.0	0.0
	경상권	(10)	10.0	50.0	40.0	0.0	0.0	0.0
	제주	(1)	100.0	0.0	0.0	0.0	0.0	0.0
기업규모	1억원 미만	(3)	33.3	66.7	0.0	0.0	0.0	0.0
	1억~3억원 미만	(20)	20.0	60.0	15.0	5.0	0.0	0.0
	3억~5억원 미만	(23)	13.0	65.2	21.7	0.0	0.0	0.0
	5억~10억원 미만	(20)	20.0	25.0	35.0	10.0	10.0	0.0
	10억원 이상	(24)	8.3	41.7	29.2	8.3	8.3	4.2
종사자	5명 이하	(43)	20.9	58.1	14.0	4.7	2.3	0.0
	6~10명	(28)	14.3	35.7	42.9	3.6	3.6	0.0
	11~20명	(14)	7.1	50.0	14.3	14.3	14.3	0.0
	21명 이상	(5)	0.0	40.0	40.0	0.0	0.0	20.0

문항7) 구두계약으로 프로젝트를 진행 완료하였으나 계약서 미비로 인해 비용 결제를 거부당한 경험이 있다.

〈표-부록2-14〉 구두계약 진행 후 계약서 미비로 인한 비용결제 거부 분쟁 대상 (단위 : 개, %)

	사례 수	분쟁 대상						
		대기업	중소기업	정부 공공기관	디자인 전문회사	디자인 지원기관	기타	
전체	(90)	20.0	70.0	20.0	4.4	3.3	8.9	
지역	수도권	(66)	24.2	72.7	16.7	6.1	1.5	9.1
	충청강원권	(5)	0.0	60.0	40.0	0.0	0.0	0.0
	호남권	(8)	25.0	75.0	12.5	0.0	12.5	12.5
	경상권	(10)	0.0	60.0	30.0	0.0	10.0	10.0
	제주	(1)	0.0	0.0	100.0	0.0	0.0	0.0
기업규모	1억원 미만	(3)	0.0	100.0	0.0	0.0	0.0	0.0
	1억~3억원 미만	(20)	15.0	65.0	15.0	10.0	0.0	10.0
	3억~5억원 미만	(23)	8.7	82.6	26.1	0.0	8.7	0.0
	5억~10억원 미만	(20)	30.0	80.0	15.0	0.0	0.0	20.0
	10억원 이상	(24)	29.2	50.0	25.0	8.3	4.2	8.3
종사자	5명 이하	(43)	11.6	74.4	16.3	4.7	2.3	11.6
	6~10명	(28)	21.4	75.0	21.4	7.1	7.1	3.6
	11~20명	(14)	35.7	50.0	35.7	0.0	0.0	7.1
	21명 이상	(5)	40.0	60.0	0.0	0.0	0.0	20.0

문항7) 구두계약으로 프로젝트를 진행 완료하였으나 계약서 미비로 인해 비용 결제를 거부당한 경험이 있다.

〈표-부록2-15〉 계약서 작성시 용역발주처에게 과도하게 유리한 계약조항 요구당한 경험 유무

(단위 : 개, %)

	사례 수	경험 유무		
		있다	없다	
전체	(303)	32.3	67.7	
지역	수도권	(191)	37.7	62.3
	충청강원권	(24)	29.2	70.8
	호남권	(35)	25.7	74.3
	경상권	(46)	19.6	80.4
	제주	(7)	14.3	85.7
기업규모	1억원 미만	(17)	29.4	70.6
	1억~3억원 미만	(67)	25.4	74.6
	3억~5억원 미만	(58)	50.0	50.0
	5억~10억원 미만	(65)	32.3	67.7
	10억원 이상	(96)	27.1	72.9
종사자	5명 이하	(118)	40.7	59.3
	6~10명	(95)	27.4	72.6
	11~20명	(62)	29.0	71.0
	21명 이상	(28)	21.4	78.6

문항8) 계약서 작성 시, “용역발주처(갑)”에게 과도하게 유리한 계약조항을 요구당한 경험이 있다.

〈표-부록2-16〉 계약서 작성시 용역발주처에게 유리한 계약조항 요구당한 피해 경험 횟수

(단위 : 개, %)

		사례 수	피해경험 횟수			
			1회	2회	3회	4회 이상
전체		(98)	27.6	35.7	5.1	31.6
지역	수도권	(72)	25.0	36.1	5.6	33.3
	충청강원권	(7)	0.0	42.9	14.3	42.9
	호남권	(9)	55.6	22.2	0.0	22.2
	경상권	(9)	33.3	44.4	0.0	22.2
	제주	(1)	100.0	0.0	0.0	0.0
기업규모	1억원 미만	(5)	40.0	60.0	0.0	0.0
	1억~3억원 미만	(17)	23.5	29.4	0.0	47.1
	3억~5억원 미만	(29)	34.5	31.0	6.9	27.6
	5억~10억원 미만	(21)	23.8	33.3	9.5	33.3
	10억원 이상	(26)	23.1	42.3	3.8	30.8
종사자	5명 이하	(48)	31.3	31.3	6.3	31.3
	6~10명	(26)	26.9	34.6	3.8	34.6
	11~20명	(18)	27.8	38.9	5.6	27.8
	21명 이상	(6)	0.0	66.7	0.0	33.3

문항8) 계약서 작성 시, “용역발주처(갑)” 에게 과도하게 유리한 계약조항을 요구당한 경험이 있다.

〈표-부록2-17〉 계약서 작성시 용역발주처에게 유리한 계약조항 요구당한 피해 경험 분쟁 대상

(단위 : 개, %)

		사례 수	분쟁 대상					기타
			대기업	중소기업	정부 공공기관	디자인 전문회사	디자인 지원기관	
전체		(98)	32.7	54.1	33.7	2.0	5.1	6.1
지역	수도권	(72)	41.7	52.8	27.8	1.4	4.2	8.3
	충청강원권	(7)	14.3	71.4	57.1	14.3	14.3	0.0
	호남권	(9)	11.1	55.6	44.4	0.0	0.0	0.0
	경상권	(9)	0.0	55.6	44.4	0.0	11.1	0.0
	제주	(1)	0.0	0.0	100.0	0.0	0.0	0.0
기업규모	1억원 미만	(5)	20.0	80.0	20.0	0.0	0.0	0.0
	1억~3억원 미만	(17)	35.3	58.8	29.4	11.8	5.9	5.9
	3억~5억원 미만	(29)	24.1	65.5	31.0	0.0	3.4	3.4
	5억~10억원 미만	(21)	42.9	57.1	28.6	0.0	4.8	9.5
	10억원 이상	(26)	34.6	30.8	46.2	0.0	7.7	7.7
종사자	5명 이하	(48)	31.3	62.5	31.3	4.2	2.1	4.2
	6~10명	(26)	30.8	50.0	34.6	0.0	11.5	7.7
	11~20명	(18)	33.3	44.4	44.4	0.0	0.0	5.6
	21명 이상	(6)	50.0	33.3	16.7	0.0	16.7	16.7

문항8) 계약서 작성 시, “용역발주처(갑)” 에게 과도하게 유리한 계약조항을 요구당한 경험이 있다.

〈표-부록2-18〉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당한 경험 유무 (단위 : 개, %)

		사례 수	경험 유무	
			있다	없다
전체		(303)	29.0	71.0
지역	수도권	(191)	33.0	67.0
	충청강원권	(24)	37.5	62.5
	호남권	(35)	22.9	77.1
	경상권	(46)	17.4	82.6
	제주	(7)	.0	100.0
기업규모	1억원 미만	(17)	23.5	76.5
	1억~3억원 미만	(67)	32.8	67.2
	3억~5억원 미만	(58)	39.7	60.3
	5억~10억원 미만	(65)	26.2	73.8
	10억원 이상	(96)	22.9	77.1
종사자	5명 이하	(118)	40.7	59.3
	6~10명	(95)	23.2	76.8
	11~20명	(62)	22.6	77.4
	21명 이상	(28)	14.3	85.7

문항9) 디자인개발 프로젝트 진행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당한 경험이 있다.

〈표-부록2-19〉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당한 경험 횟수 (단위 : 개, %)

		사례 수	피해경험 횟수			
			1회	2회	3회	4회 이상
전체		(88)	40.9	35.2	8.0	15.9
지역	수도권	(63)	44.4	30.2	7.9	17.5
	충청강원권	(9)	22.2	55.6	11.1	11.1
	호남권	(8)	37.5	37.5	12.5	12.5
	경상권	(8)	37.5	50.0	0.0	12.5
	제주	-	-	-	-	-
기업규모	1억원 미만	(4)	50.0	50.0	0.0	0.0
	1억~3억원 미만	(22)	27.3	50.0	9.1	13.6
	3억~5억원 미만	(23)	52.2	21.7	8.7	17.4
	5억~10억원 미만	(17)	17.6	35.3	17.6	29.4
	10억원 이상	(22)	59.1	31.8	0.0	9.1
종사자	5명 이하	(48)	37.5	35.4	12.5	14.6
	6~10명	(22)	36.4	36.4	4.5	22.7
	11~20명	(14)	57.1	28.6	0.0	14.3
	21명 이상	(4)	50.0	50.0	0.0	0.0

문항9) 디자인개발 프로젝트 진행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당한 경험이 있다.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표-부록2-20〉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당한 경험 분쟁 대상 (단위 : 개, %)

		사례 수	분쟁 대상					
			대기업	중소기업	정부 공공기관	디자인 전문회사	디자인 지원기관	기타
전체		(88)	23.9	71.6	15.9	3.4	1.1	6.8
지역	수도권	(63)	33.3	68.3	14.3	4.8	1.6	7.9
	충청강원권	(9)	0.0	66.7	33.3	0.0	0.0	11.1
	호남권	(8)	0.0	87.5	12.5	0.0	0.0	0.0
	경상권	(8)	0.0	87.5	12.5	0.0	0.0	0.0
	제주	-	-	-	-	-	-	-
기업규모	1억원 미만	(4)	0.0	100.0	0.0	0.0	0.0	0.0
	1억~3억원 미만	(22)	27.3	68.2	13.6	4.5	0.0	9.1
	3억~5억원 미만	(23)	4.3	82.6	21.7	0.0	0.0	0.0
	5억~10억원 미만	(17)	35.3	70.6	23.5	5.9	0.0	11.8
	10억원 이상	(22)	36.4	59.1	9.1	4.5	4.5	9.1
종사자	5명 이하	(48)	14.6	75.0	16.7	4.2	0.0	8.3
	6~10명	(22)	22.7	81.8	9.1	0.0	0.0	0.0
	11~20명	(14)	50.0	50.0	28.6	0.0	7.1	14.3
	21명 이상	(4)	50.0	50.0	0.0	25.0	0.0	0.0

문항9) 디자인개발 프로젝트 진행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당한 경험이 있다.

〈표-부록2-21〉 중도계약 해지시에 소요된 비용이 일방적으로 불인정된 경험 유무 (단위 : 개, %)

		사례 수	경험 유무	
			있다	없다
전체		(303)	32.0	68.0
지역	수도권	(191)	35.6	64.4
	충청강원권	(24)	45.8	54.2
	호남권	(35)	28.6	71.4
	경상권	(46)	15.2	84.8
	제주	(7)	14.3	85.7
기업규모	1억원 미만	(17)	29.4	70.6
	1억~3억원 미만	(67)	34.3	65.7
	3억~5억원 미만	(58)	46.6	53.4
	5억~10억원 미만	(65)	29.2	70.8
	10억원 이상	(96)	24.0	76.0
종사자	5명 이하	(118)	41.5	58.5
	6~10명	(95)	29.5	70.5
	11~20명	(62)	24.2	75.8
	21명 이상	(28)	17.9	82.1

문항10) 중도계약 해지 시에 소요된 비용(개발비, 인건비등)이 일방적으로 불인정된 경험이 있다.



〈표-부록2-22〉 중도계약 해지시에 소요된 비용이 일반적으로 불인정된 경험 횟수 (단위 : 개, %)

		사례 수	피해경험 횟수			
			1회	2회	3회	4회 이상
전체		(97)	39.2	28.9	7.2	24.7
지역	수도권	(68)	38.2	27.9	4.4	29.4
	충청강원권	(11)	36.4	9.1	27.3	27.3
	호남권	(10)	40.0	50.0	10.0	0.0
	경상권	(7)	42.9	42.9	0.0	14.3
	제주	(1)	100.0	0.0	0.0	0.0
기업규모	1억원 미만	(5)	40.0	40.0	0.0	20.0
	1억~3억원 미만	(23)	39.1	21.7	17.4	21.7
	3억~5억원 미만	(27)	44.4	22.2	3.7	29.6
	5억~10억원 미만	(19)	26.3	31.6	5.3	36.8
	10억원 이상	(23)	43.5	39.1	4.3	13.0
종사자	5명 이하	(49)	36.7	26.5	8.2	28.6
	6~10명	(28)	35.7	35.7	7.1	21.4
	11~20명	(15)	53.3	13.3	6.7	26.7
	21명 이상	(5)	40.0	60.0	0.0	0.0

문항10) 중도계약 해지 시에 소요된 비용(개발비, 인건비등)이 일반적으로 불인정된 경험이 있다.

〈표-부록2-23〉 중도계약 해지시에 소요된 비용이 일반적으로 불인정된 경험 총 피해비용

(단위 : 개, %)

		사례 수	피해비용					
			5백만원 미만	5백만원~2천만원 미만	2천만원~5천만원 미만	5천만원~1억원 미만	1억원~2억원 미만	2억원 이상
전체		(97)	32.0	45.4	15.5	4.1	1.0	2.1
지역	수도권	(68)	27.9	48.5	14.7	4.4	1.5	2.9
	충청강원권	(11)	36.4	36.4	27.3	0.0	0.0	0.0
	호남권	(10)	40.0	50.0	0.0	10.0	0.0	0.0
	경상권	(7)	57.1	28.6	14.3	0.0	0.0	0.0
	제주	(1)	0.0	0.0	100.0	0.0	0.0	0.0
기업규모	1억원 미만	(5)	80.0	20.0	0.0	0.0	0.0	0.0
	1억~3억원 미만	(23)	26.1	56.5	17.4	0.0	0.0	0.0
	3억~5억원 미만	(27)	25.9	63.0	11.1	0.0	0.0	0.0
	5억~10억원 미만	(19)	42.1	26.3	21.1	5.3	5.3	0.0
	10억원 이상	(23)	26.1	34.8	17.4	13.0	0.0	8.7
종사자	5명 이하	(49)	30.6	61.2	8.2	0.0	0.0	0.0
	6~10명	(28)	39.3	25.0	25.0	7.1	0.0	3.6
	11~20명	(15)	26.7	33.3	13.3	13.3	6.7	6.7
	21명 이상	(5)	20.0	40.0	40.0	0.0	0.0	0.0

문항10) 중도계약 해지 시에 소요된 비용(개발비, 인건비등)이 일반적으로 불인정된 경험이 있다.

〈표-부록2-24〉 중도계약 해지시에 소요된 비용이 일방적으로 불인정된 경험 분쟁 대상

(단위 : 개, %)

	사례 수	분쟁 대상						
		대기업	중소기업	정부 공공기관	디자인 전문회사	디자인 지원기관	기타	
전체	(97)	22.7	74.2	21.6	3.1	2.1	6.2	
지역	수도권	(68)	29.4	70.6	22.1	4.4	2.9	7.4
	충청강원권	(11)	9.1	81.8	36.4	0.0	0.0	0.0
	호남권	(10)	10.0	90.0	0.0	0.0	0.0	10.0
	경상권	(7)	0.0	85.7	14.3	0.0	0.0	0.0
	제주	(1)	0.0	0.0	100.0	0.0	0.0	0.0
기업규모	1억원 미만	(5)	0.0	100.0	20.0	0.0	20.0	0.0
	1억~3억원 미만	(23)	21.7	73.9	17.4	4.3	0.0	4.3
	3억~5억원 미만	(27)	11.1	81.5	25.9	0.0	0.0	3.7
	5억~10억원 미만	(19)	31.6	84.2	21.1	0.0	0.0	5.3
	10억원 이상	(23)	34.8	52.2	21.7	8.7	4.3	13.0
종사자	5명 이하	(49)	16.3	81.6	24.5	2.0	2.0	4.1
	6~10명	(28)	21.4	71.4	17.9	0.0	0.0	3.6
	11~20명	(15)	40.0	66.7	26.7	6.7	0.0	20.0
	21명 이상	(5)	40.0	40.0	0.0	20.0	20.0	0.0

문항10) 중도계약 해지 시에 소요된 비용(개발비, 인건비등)이 일방적으로 불인정된 경험이 있다.

〈표-부록2-25〉 일방적 해지로 인해 다른 프로젝트 수행기회를 상실한 경험 유무

(단위 : 개, %)

	사례 수	경험 유무		
		있다	없다	
전체	(303)	26.4	73.6	
지역	수도권	(191)	32.5	67.5
	충청강원권	(24)	33.3	66.7
	호남권	(35)	11.4	88.6
	경상권	(46)	13.0	87.0
	제주	(7)	.0	100.0
기업규모	1억원 미만	(17)	17.6	82.4
	1억~3억원 미만	(67)	28.4	71.6
	3억~5억원 미만	(58)	32.8	67.2
	5억~10억원 미만	(65)	27.7	72.3
	10억원 이상	(96)	21.9	78.1
종사자	5명 이하	(118)	33.9	66.1
	6~10명	(95)	25.3	74.7
	11~20명	(62)	21.0	79.0
	21명 이상	(28)	10.7	89.3

문항11) 일방적 해지로 인해 다른 프로젝트 수행기회를 상실한 경우가 있다.

〈표-부록2-26〉 일방적 해지로 인해 다른 프로젝트 수행기회를 상실한 경험 횟수 (단위 : 개, %)

		사례 수	피해경험 횟수			
			1회	2회	3회	4회 이상
전체		(80)	51.3	20.0	7.5	21.3
지역	수도권	(62)	46.8	22.6	6.5	24.2
	충청강원권	(8)	50.0	12.5	25.0	12.5
	호남권	(4)	75.0	25.0	0.0	0.0
	경상권	(6)	83.3	0.0	0.0	16.7
	제주	(3)	66.7	33.3	0.0	0.0
기업규모	1억원 미만	(19)	57.9	15.8	10.5	15.8
	1억~3억원 미만	(19)	47.4	15.8	10.5	26.3
	3억~5억원 미만	(18)	38.9	16.7	5.6	38.9
	5억~10억원 미만	(21)	57.1	28.6	4.8	9.5
	10억원 이상	(40)	52.5	17.5	10.0	20.0
종사자	5명 이하	(24)	45.8	25.0	8.3	20.8
	6~10명	(13)	46.2	23.1	0.0	30.8
	11~20명	(3)	100.0	0.0	0.0	0.0
	21명 이상	(5)	40.0	60.0	0.0	0.0

문항11) 일방적 해지로 인해 다른 프로젝트 수행기회를 상실한 경우가 있다.

〈표-부록2-27〉 일방적 해지로 인해 다른 프로젝트 수행기회를 상실한 경험 총 피해비용 (단위 : 개, %)

		사례 수	피해비용					
			5백만원 미만	5백만원~2천만원 미만	2천만원~5천만원 미만	5천만원~1억원 미만	1억원~2억원 이상	
전체		(80)	15.0	42.5	23.8	6.3	6.3	6.3
지역	수도권	(62)	16.1	32.3	27.4	8.1	8.1	8.1
	충청강원권	(8)	12.5	75.0	12.5	0.0	0.0	0.0
	호남권	(4)	25.0	75.0	0.0	0.0	0.0	0.0
	경상권	(6)	0.0	83.3	16.7	0.0	0.0	0.0
	제주	(3)	100.0	0.0	0.0	0.0	0.0	0.0
기업규모	1억원 미만	(19)	15.8	68.4	5.3	5.3	0.0	5.3
	1억~3억원 미만	(19)	0.0	57.9	36.8	0.0	5.3	0.0
	3억~5억원 미만	(18)	22.2	22.2	33.3	5.6	11.1	5.6
	5억~10억원 미만	(21)	9.5	28.6	23.8	14.3	9.5	14.3
	10억원 이상	(40)	17.5	52.5	17.5	2.5	5.0	5.0
종사자	5명 이하	(24)	16.7	45.8	29.2	4.2	0.0	4.2
	6~10명	(13)	7.7	15.4	23.1	15.4	23.1	15.4
	11~20명	(3)	0.0	0.0	66.7	33.3	0.0	0.0
	21명 이상	(5)	20.0	40.0	40.0	0.0	0.0	0.0

문항11) 일방적 해지로 인해 다른 프로젝트 수행기회를 상실한 경우가 있다.

〈표-부록2-28〉 일방적 해지로 인해 다른 프로젝트 수행기회를 상실한 경험 분쟁 대상 (단위 : 개, %)

	사례 수	분쟁 대상						
		대기업	중소기업	정부 공공기관	디자인 전문회사	디자인 지원기관	기타	
전체	(80)	31.3	63.8	18.8	2.5	1.3	11.3	
지역	수도권	(62)	40.3	61.3	16.1	3.2	1.6	11.3
	충청강원권	(8)	0.0	75.0	37.5	0.0	0.0	0.0
	호남권	(4)	0.0	100.0	0.0	0.0	0.0	25.0
	경상권	(6)	0.0	50.0	33.3	0.0	0.0	16.7
	제주	(3)	0.0	100.0	0.0	0.0	0.0	0.0
기업규모	1억원 미만	(19)	36.8	52.6	21.1	5.3	0.0	5.3
	1억~3억원 미만	(19)	21.1	73.7	26.3	0.0	0.0	5.3
	3억~5억원 미만	(18)	38.9	66.7	11.1	5.6	0.0	27.8
	5억~10억원 미만	(21)	33.3	57.1	19.0	0.0	4.8	9.5
	10억원 이상	(40)	30.0	65.0	20.0	5.0	0.0	12.5
종사자	5명 이하	(24)	25.0	62.5	12.5	0.0	0.0	8.3
	6~10명	(13)	38.5	69.2	30.8	0.0	7.7	15.4
	11~20명	(3)	66.7	33.3	0.0	0.0	0.0	0.0
	21명 이상	(5)	40.0	40.0	0.0	20.0	20.0	0.0

문항11) 일방적 해지로 인해 다른 프로젝트 수행기회를 상실한 경우가 있다.

〈표-부록2-29〉 제안서 제출 후 내부사정으로 프로젝트가 무산되었다고 일방적으로 통보 받은 경험 유무 (단위 : 개, %)

	사례 수	경험 유무		
		있다	없다	
전체	(303)	36.3	63.7	
지역	수도권	(191)	44.5	55.5
	충청강원권	(24)	33.3	66.7
	호남권	(35)	25.7	74.3
	경상권	(46)	15.2	84.8
	제주	(7)	14.3	85.7
기업규모	1억원 미만	(17)	29.4	70.6
	1억~3억원 미만	(67)	28.4	71.6
	3억~5억원 미만	(58)	53.4	46.6
	5억~10억원 미만	(65)	33.8	66.2
	10억원 이상	(96)	34.4	65.6
종사자	5명 이하	(118)	42.4	57.6
	6~10명	(95)	37.9	62.1
	11~20명	(62)	30.6	69.4
	21명 이상	(28)	17.9	82.1

문항12)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내부사정으로 프로젝트가 무산되었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은 경험이 있다.
(피해비용의 기준 : 제안 준비기간에 투입된 실비)

〈표-부록2-30〉 제안서 제출 후 내부사정으로 프로젝트가 무산되었다고 일방적으로 통보 받은 경험 횟수 (단위 : 개, %)

		사례 수	피해경험 횟수			
			1회	2회	3회	4회 이상
전체		(110)	33,6	28,2	10,9	27,3
지역	수도권	(85)	34,1	28,2	11,8	25,9
	충청강원권	(8)	25,0	25,0	25,0	25,0
	호남권	(9)	33,3	22,2	0,0	44,4
	경상권	(7)	28,6	42,9	0,0	28,6
	제주	(1)	100,0	0,0	0,0	0,0
기업규모	1억원 미만	(5)	60,0	20,0	0,0	20,0
	1억~3억원 미만	(19)	26,3	26,3	15,8	31,6
	3억~5억원 미만	(31)	41,9	22,6	9,7	25,8
	5억~10억원 미만	(22)	27,3	31,8	0,0	40,9
	10억원 이상	(33)	30,3	33,3	18,2	18,2
종사자	5명 이하	(50)	36,0	26,0	8,0	30,0
	6~10명	(36)	36,1	22,2	11,1	30,6
	11~20명	(19)	31,6	31,6	15,8	21,1
	21명 이상	(5)	0,0	80,0	20,0	0,0

문항12)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내부사정으로 프로젝트가 무산되었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은 경험이 있다.
(피해비용의 기준 : 제안 준비기간에 투입된 실비)

〈표-부록2-31〉 제안서 제출 후 내부사정으로 프로젝트가 무산되었다고 일방적으로 통보 받은 경험 피해비용 (단위 : 개, %)

		사례 수	피해비용					
			5백만원 미만	5백만원~2천만원 미만	2천만원~5천만원 미만	5천만원~1억원 미만	1억원~2억원 미만	2억원 이상
전체		(110)	19,1	36,4	24,5	13,6	0,9	5,5
지역	수도권	(85)	16,5	31,8	27,1	16,5	1,2	7,1
	충청강원권	(8)	12,5	62,5	25,0	0,0	0,0	0,0
	호남권	(9)	33,3	55,6	0,0	11,1	0,0	0,0
	경상권	(7)	28,6	42,9	28,6	0,0	0,0	0,0
	제주	(1)	100,0	0,0	0,0	0,0	0,0	0,0
기업규모	1억원 미만	(5)	40,0	40,0	20,0	0,0	0,0	0,0
	1억~3억원 미만	(19)	10,5	47,4	31,6	5,3	0,0	5,3
	3억~5억원 미만	(31)	16,1	51,6	25,8	6,5	0,0	0,0
	5억~10억원 미만	(22)	22,7	27,3	27,3	18,2	4,5	0,0
	10억원 이상	(33)	21,2	21,2	18,2	24,2	0,0	15,2
종사자	5명 이하	(50)	18,0	46,0	24,0	10,0	0,0	2,0
	6~10명	(36)	22,2	36,1	22,2	16,7	0,0	2,8
	11~20명	(19)	21,1	15,8	21,1	15,8	5,3	21,1
	21명 이상	(5)	0,0	20,0	60,0	20,0	0,0	0,0

문항12)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내부사정으로 프로젝트가 무산되었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은 경험이 있다.
(피해비용의 기준 : 제안 준비기간에 투입된 실비)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표-부록2-32〉 제안서 제출 후 내부사정으로 프로젝트가 무산되었다고 일방적으로 통보 받은
경험 분쟁대상 (단위 : 개, %)

	사례 수	분쟁 대상						
		대기업	중소기업	정부 공공기관	디자인 전문회사	디자인 지원기관	기타	
전체	(110)	25.5	70.0	23.6	2.7	3.6	6.4	
지역	수도권	(85)	30.6	69.4	18.8	3.5	3.5	7.1
	충청강원권	(8)	12.5	62.5	37.5	0.0	0.0	0.0
	호남권	(9)	11.1	88.9	33.3	0.0	11.1	11.1
	경상권	(7)	0.0	71.4	42.9	0.0	0.0	0.0
	제주	(1)	0.0	0.0	100.0	0.0	0.0	0.0
기업규모	1억원 미만	(5)	20.0	100.0	0.0	0.0	0.0	0.0
	1억~3억원 미만	(19)	31.6	63.2	15.8	10.5	0.0	5.3
	3억~5억원 미만	(31)	19.4	74.2	29.0	0.0	6.5	3.2
	5억~10억원 미만	(22)	27.3	63.6	27.3	4.5	4.5	18.2
	10억원 이상	(33)	27.3	69.7	24.2	0.0	3.0	3.0
종사자	5명 이하	(50)	26.0	62.0	24.0	6.0	2.0	8.0
	6~10명	(36)	22.2	75.0	22.2	0.0	5.6	8.3
	11~20명	(19)	26.3	78.9	31.6	0.0	5.3	0.0
	21명 이상	(5)	40.0	80.0	0.0	0.0	0.0	0.0

문항12)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내부사정으로 프로젝트가 무산되었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은 경험이 있다.
(피해비용의 기준 : 제안 준비기간에 투입된 실비)

〈표-부록2-33〉 시안경쟁 PT에 참가하여 리젝트피를 받지 못한 경험 유무여부 (단위 : 개, %)

	사례 수	경험 유무		
		있다	없다	
전체	(303)	38.6	61.4	
지역	수도권	(191)	47.1	52.9
	충청강원권	(24)	29.2	70.8
	호남권	(35)	31.4	68.6
	경상권	(46)	19.6	80.4
	제주	(7)	.0	100.0
기업규모	1억원 미만	(17)	23.5	76.5
	1억~3억원 미만	(67)	32.8	67.2
	3억~5억원 미만	(58)	53.4	46.6
	5억~10억원 미만	(65)	38.5	61.5
	10억원 이상	(96)	36.5	63.5
종사자	5명 이하	(118)	46.6	53.4
	6~10명	(95)	36.8	63.2
	11~20명	(62)	33.9	66.1
	21명 이상	(28)	21.4	78.6

문항13) 시안경쟁PT에 참가하여 리젝트피(제안서 보상비)를 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
(시안경쟁PT 시 아이디어만 받고 비용을 주지 않은 경우를 포함)



〈표-부록2-34〉 시안경쟁 PT에 참가하여 리젝트피를 받지 못한 경험 횟수 (단위 : 개, %)

		사례 수	피해경험 횟수			
			1회	2회	3회	4회 이상
전체		(117)	17,9	22,2	11,1	48,7
지역	수도권	(90)	16,7	22,2	13,3	47,8
	충청강원권	(7)	14,3	14,3	0,0	71,4
	호남권	(11)	27,3	18,2	9,1	45,5
	경상권	(9)	22,2	33,3	0,0	44,4
	제주	(4)	25,0	25,0	0,0	50,0
기업규모	1억원 미만	(22)	9,1	36,4	18,2	36,4
	1억~3억원 미만	(31)	29,0	22,6	3,2	45,2
	3억~5억원 미만	(25)	20,0	12,0	8,0	60,0
	5억~10억원 미만	(35)	11,4	20,0	17,1	51,4
	10억원 이상	(55)	23,6	21,8	12,7	41,8
종사자	5명 이하	(35)	14,3	22,9	8,6	54,3
	6~10명	(21)	14,3	23,8	9,5	52,4
	11~20명	(6)	0,0	16,7	16,7	66,7
	21명 이상	(5)	0,0	80,0	20,0	0,0

문항13) 시안경쟁PT에 참가하여 리젝트피(제안서 보상비)를 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
(시안경쟁PT 시 아이디어만 받고 비용을 주지 않은 경우를 포함)

〈표-부록2-35〉 시안경쟁 PT에 참가하여 리젝트피를 받지 못한 경험 총 피해비용 (단위 : 개, %)

		사례 수	피해비용			
			5백만원 미만	5백만원~2천만원 미만	2천만원~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전체		(117)	21,4	37,6	22,2	18,8
지역	수도권	(90)	21,1	34,4	24,4	20,0
	충청강원권	(7)	28,6	57,1	0,0	14,3
	호남권	(11)	18,2	63,6	18,2	0,0
	경상권	(9)	22,2	22,2	22,2	33,3
	제주	-	-	-	-	-
기업규모	1억원 미만	(4)	50,0	25,0	25,0	0,0
	1억~3억원 미만	(22)	18,2	54,5	18,2	9,1
	3억~5억원 미만	(31)	19,4	45,2	22,6	12,9
	5억~10억원 미만	(25)	16,0	40,0	16,0	28,0
	10억원 이상	(35)	25,7	20,0	28,6	25,7
종사자	5명 이하	(55)	21,8	49,1	18,2	10,9
	6~10명	(35)	20,0	31,4	22,9	25,7
	11~20명	(21)	23,8	19,0	33,3	23,8
	21명 이상	(6)	16,7	33,3	16,7	33,3

문항13) 시안경쟁PT에 참가하여 리젝트피(제안서 보상비)를 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
(시안경쟁PT 시 아이디어만 받고 비용을 주지 않은 경우를 포함)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표-부록2-36〉 시안경쟁 PT에 참가하여 리젝트피를 받지 못한 경험 분쟁 대상 (단위 : 개, %)

	사례 수	분쟁 대상						
		대기업	중소기업	정부 공공기관	디자인 전문회사	디자인 지원기관	기타	
전체	(117)	37.6	59.8	46.2	3.4	6.0	6.0	
지역	수도권	(90)	45.6	60.0	41.1	4.4	5.6	6.7
	충청강원권	(7)	14.3	42.9	71.4	0.0	14.3	0.0
	호남권	(11)	9.1	81.8	54.5	0.0	0.0	9.1
	경상권	(9)	11.1	44.4	66.7	0.0	11.1	0.0
	제주	(4)	50.0	75.0	25.0	0.0	25.0	0.0
기업규모	1억원 미만	(22)	36.4	45.5	40.9	9.1	9.1	4.5
	1억~3억원 미만	(31)	32.3	74.2	41.9	0.0	3.2	3.2
	3억~5억원 미만	(25)	44.0	68.0	40.0	0.0	0.0	16.0
	5억~10억원 미만	(35)	37.1	48.6	60.0	5.7	8.6	2.9
	10억원 이상	(55)	36.4	56.4	40.0	3.6	3.6	7.3
종사자	5명 이하	(35)	40.0	71.4	48.6	5.7	8.6	5.7
	6~10명	(21)	33.3	57.1	61.9	0.0	9.5	0.0
	11~20명	(6)	50.0	33.3	33.3	0.0	0.0	16.7
	21명 이상	(5)	40.0	80.0	0.0	0.0	0.0	0.0

문항13) 시안경쟁PT에 참가하여 리젝트피(제안서 보상비)를 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
(시안경쟁PT 시 아이디어만 받고 비용을 주지 않은 경우를 포함)

〈표-부록2-37〉 계약 후 무리한 디자인개발 방향 변경 및 수정작업을 요구당한 경험 유무

(단위 : 개, %)

	사례 수	경험 유무		
		있다	없다	
전체	(303)	42.6	57.4	
지역	수도권	(191)	49.2	50.8
	충청강원권	(24)	45.8	54.2
	호남권	(35)	31.4	68.6
	경상권	(46)	26.1	73.9
	제주	(7)	14.3	85.7
기업규모	1억원 미만	(17)	41.2	58.8
	1억~3억원 미만	(67)	40.3	59.7
	3억~5억원 미만	(58)	58.6	41.4
	5억~10억원 미만	(65)	38.5	61.5
	10억원 이상	(96)	37.5	62.5
종사자	5명 이하	(118)	50.0	50.0
	6~10명	(95)	41.1	58.9
	11~20명	(62)	40.3	59.7
	21명 이상	(28)	21.4	78.6

문항14) 계약 후 무리한 디자인개발 방향변경 및 수정작업을 요구당한 경험이 있다.

〈표-부록2-38〉 계약 후 무리한 디자인개발 방향 변경 및 수정작업을 요구당한 경험 횟수

(단위 : 개, %)

		사례 수	피해경험 횟수			
			1회	2회	3회	4회 이상
전체		(129)	26.4	18.6	11.6	43.4
지역	수도권	(94)	23.4	19.1	13.8	43.6
	충청강원권	(11)	27.3	18.2	9.1	45.5
	호남권	(11)	36.4	18.2	9.1	36.4
	경상권	(12)	33.3	16.7	0.0	50.0
	제주	(1)	100.0	0.0	0.0	0.0
기업규모	1억원 미만	(7)	57.1	0.0	0.0	42.9
	1억~3억원 미만	(27)	22.2	14.8	18.5	44.4
	3억~5억원 미만	(34)	26.5	17.6	14.7	41.2
	5억~10억원 미만	(25)	20.0	16.0	8.0	56.0
	10억원 이상	(36)	27.8	27.8	8.3	36.1
종사자	5명 이하	(59)	28.8	16.9	11.9	42.4
	6~10명	(39)	30.8	12.8	12.8	43.6
	11~20명	(25)	16.0	28.0	12.0	44.0
	21명 이상	(6)	16.7	33.3	0.0	50.0

문항14) 계약 후 무리한 디자인개발 방향변경 및 수정작업을 요구당한 경험이 있다.

〈표-부록2-39〉 계약 후 무리한 디자인개발 방향 변경 및 수정작업을 요구당한 경험 총 피해 비용

(단위 : 개, %)

		사례 수	피해비용					
			5백만원 미만	5백만원~2천만원 미만	2천만원~5천만원 미만	5천만원~1억원 미만	1억원~2억원 미만	2억원 이상
전체		(129)	16.3	42.6	20.2	13.2	5.4	2.3
지역	수도권	(94)	14.9	41.5	23.4	10.6	6.4	3.2
	충청강원권	(11)	27.3	27.3	9.1	36.4	0.0	0.0
	호남권	(11)	9.1	90.9	0.0	0.0	0.0	0.0
	경상권	(12)	25.0	25.0	16.7	25.0	8.3	0.0
	제주	(1)	0.0	0.0	100.0	0.0	0.0	0.0
기업규모	1억원 미만	(7)	57.1	42.9	0.0	0.0	0.0	0.0
	1억~3억원 미만	(27)	22.2	48.1	7.4	22.2	0.0	0.0
	3억~5억원 미만	(34)	5.9	55.9	32.4	2.9	2.9	0.0
	5억~10억원 미만	(25)	20.0	32.0	16.0	20.0	12.0	0.0
	10억원 이상	(36)	11.1	33.3	25.0	13.9	8.3	8.3
종사자	5명 이하	(59)	15.3	54.2	16.9	10.2	3.4	0.0
	6~10명	(39)	23.1	30.8	20.5	17.9	5.1	2.6
	11~20명	(25)	12.0	32.0	20.0	16.0	12.0	8.0
	21명 이상	(6)	0.0	50.0	50.0	0.0	0.0	0.0

문항14) 계약 후 무리한 디자인개발 방향변경 및 수정작업을 요구당한 경험이 있다.

〈표-부록2-40〉 계약 후 무리한 디자인개발 방향 변경 및 수정작업을 요구당한 경험 분쟁 대상

(단위 : 개, %)

	사례 수	분쟁 대상						
		대기업	중소기업	정부 공공기관	디자인 전문회사	디자인 지원기관	기타	
전체	(129)	34.1	69.0	39.5	3.9	3.1	5.4	
지역	수도권	(94)	43.6	71.3	36.2	5.3	3.2	7.4
	충청강원권	(11)	9.1	63.6	45.5	0.0	0.0	0.0
	호남권	(11)	9.1	81.8	45.5	0.0	0.0	0.0
	경상권	(12)	8.3	50.0	50.0	0.0	8.3	0.0
	제주	(1)	0.0	0.0	100.0	0.0	0.0	0.0
기업규모	1억원 미만	(7)	28.6	100.0	28.6	0.0	14.3	0.0
	1억~3억원 미만	(27)	29.6	70.4	29.6	7.4	0.0	3.7
	3억~5억원 미만	(34)	23.5	73.5	38.2	0.0	2.9	2.9
	5억~10억원 미만	(25)	48.0	72.0	36.0	4.0	0.0	16.0
	10억원 이상	(36)	38.9	55.6	52.8	5.6	5.6	2.8
종사자	5명 이하	(59)	28.8	69.5	35.6	5.1	1.7	5.1
	6~10명	(39)	35.9	71.8	38.5	0.0	2.6	5.1
	11~20명	(25)	40.0	64.0	56.0	4.0	8.0	8.0
	21명 이상	(6)	50.0	66.7	16.7	16.7	0.0	0.0

문항14) 계약 후 무리한 디자인개발 방향변경 및 수정작업을 요구당한 경험이 있다.

〈표-부록2-41〉 계약내용과는 상관없는 별도의 개발을 무상 혹은 낮은 가격으로 요구당한 경험 유무

(단위 : 개, %)

	사례 수	경험 유무		
		있다	없다	
전체	(303)	41.9	58.1	
지역	수도권	(191)	49.2	50.8
	충청강원권	(24)	45.8	54.2
	호남권	(35)	31.4	68.6
	경상권	(46)	23.9	76.1
	제주	(7)	.0	100.0
기업규모	1억원 미만	(17)	41.2	58.8
	1억~3억원 미만	(67)	37.3	62.7
	3억~5억원 미만	(58)	56.9	43.1
	5억~10억원 미만	(65)	38.5	61.5
	10억원 이상	(96)	38.5	61.5
종사자	5명 이하	(118)	48.3	51.7
	6~10명	(95)	38.9	61.1
	11~20명	(62)	40.3	59.7
	21명 이상	(28)	28.6	71.4

문항15) 계약내용과는 상관없는 별도의 개발을 (무상 혹은 낮은 가격으로) 요구당한 경험이 있다.

〈표-부록2-42〉 계약내용과는 상관없는 별도의 개발을 무상 혹은 낮은 가격으로 요구당한 경험 횟수

(단위 : 개, %)

		사례 수	피해경험 횟수			
			1회	2회	3회	4회 이상
전체		(127)	19,7	29,9	8,7	41,7
지역	수도권	(94)	19,1	30,9	8,5	41,5
	충청강원권	(11)	9,1	27,3	9,1	54,5
	호남권	(11)	18,2	27,3	18,2	36,4
	경상권	(11)	36,4	27,3	0,0	36,4
	제주	-	-	-	-	-
기업규모	1억원 미만	(7)	42,9	0,0	0,0	57,1
	1억~3억원 미만	(25)	20,0	24,0	8,0	48,0
	3억~5억원 미만	(33)	18,2	30,3	6,1	45,5
	5억~10억원 미만	(25)	8,0	40,0	12,0	40,0
	10억원 이상	(37)	24,3	32,4	10,8	32,4
종사자	5명 이하	(57)	17,5	24,6	7,0	50,9
	6~10명	(37)	21,6	43,2	5,4	29,7
	11~20명	(25)	24,0	20,0	8,0	48,0
	21명 이상	(8)	12,5	37,5	37,5	12,5

문항15) 계약내용과는 상관없는 별도의 개발을 (무상 혹은 낮은 가격으로) 요구당한 경험이 있다.

〈표-부록2-43〉 계약내용과는 상관없는 별도의 개발을 무상 혹은 낮은 가격으로 요구당한 경험 총 피해 비용

(단위 : 개, %)

		사례 수	피해비용					
			5백만원 미만	5백만원~2천만원 미만	2천만원~5천만원 미만	5천만원~1억원 미만	1억원~2억원 이상	
전체		(127)	26,0	41,7	20,5	7,1	2,4	2,4
지역	수도권	(94)	27,7	37,2	20,2	8,5	3,2	3,2
	충청강원권	(11)	9,1	54,5	27,3	9,1	0,0	0,0
	호남권	(11)	18,2	81,8	0,0	0,0	0,0	0,0
	경상권	(11)	36,4	27,3	36,4	0,0	0,0	0,0
	제주	(7)	71,4	28,6	0,0	0,0	0,0	0,0
기업규모	1억원 미만	(25)	20,0	48,0	24,0	8,0	0,0	0,0
	1억~3억원 미만	(33)	18,2	57,6	18,2	6,1	0,0	0,0
	3억~5억원 미만	(25)	28,0	32,0	28,0	8,0	4,0	0,0
	5억~10억원 미만	(37)	27,0	32,4	18,9	8,1	5,4	8,1
	10억원 이상	(57)	26,3	54,4	15,8	3,5	0,0	0,0
종사자	5명 이하	(37)	32,4	32,4	24,3	8,1	2,7	0,0
	6~10명	(25)	16,0	28,0	20,0	16,0	8,0	12,0
	11~20명	(8)	25,0	37,5	37,5	0,0	0,0	0,0
	21명 이상	(6)	0,0	50,0	50,0	0,0	0,0	0,0

문항15) 계약내용과는 상관없는 별도의 개발을 (무상 혹은 낮은 가격으로) 요구당한 경험이 있다.

〈표-부록2-44〉 계약내용과는 상관없는 별도의 개발을 무상 혹은 낮은 가격으로 요구당한 경험 분쟁 대상 (단위 : 개, %)

	사례 수	분쟁 대상						
		대기업	중소기업	정부 공공기관	디자인 전문회사	디자인 지원기관	기타	
전체	(127)	29.1	70.9	29.9	3.9	3.1	7.1	
지역	수도권	(94)	36.2	71.3	24.5	5.3	3.2	8.5
	충청강원권	(11)	9.1	72.7	36.4	0.0	0.0	0.0
	호남권	(11)	9.1	81.8	54.5	0.0	0.0	9.1
	경상권	(11)	9.1	54.5	45.5	0.0	9.1	0.0
	제주	-	-	-	-	-	-	-
기업규모	1억원 미만	(7)	0.0	100.0	0.0	0.0	0.0	0.0
	1억~3억원 미만	(25)	28.0	76.0	20.0	8.0	0.0	4.0
	3억~5억원 미만	(33)	30.3	75.8	30.3	0.0	3.0	6.1
	5억~10억원 미만	(25)	32.0	80.0	24.0	8.0	4.0	12.0
	10억원 이상	(37)	32.4	51.4	45.9	2.7	5.4	8.1
종사자	5명 이하	(57)	24.6	78.9	26.3	7.0	0.0	5.3
	6~10명	(37)	29.7	75.7	16.2	0.0	5.4	10.8
	11~20명	(25)	36.0	48.0	60.0	0.0	4.0	8.0
	21명 이상	(8)	37.5	62.5	25.0	12.5	12.5	0.0

문항15) 계약내용과는 상관없는 별도의 개발을 (무상 혹은 낮은 가격으로) 요구당한 경험이 있다.

〈표-부록2-45〉 결과물 납품 후 결과물에 대한 추가 요구를 당한 경험 유무 (단위 : 개, %)

	사례 수	경험 유무		
		있다	없다	
전체	(303)	35.0	65.0	
지역	수도권	(191)	40.8	59.2
	충청강원권	(24)	37.5	62.5
	호남권	(35)	25.7	74.3
	경상권	(46)	21.7	78.3
	제주	(7)	.0	100.0
기업규모	1억원 미만	(17)	23.5	76.5
	1억~3억원 미만	(67)	25.4	74.6
	3억~5억원 미만	(58)	51.7	48.3
	5억~10억원 미만	(65)	35.4	64.6
	10억원 이상	(96)	33.3	66.7
종사자	5명 이하	(118)	37.3	62.7
	6~10명	(95)	34.7	65.3
	11~20명	(62)	33.9	66.1
	21명 이상	(28)	28.6	71.4

문항16) 결과물 납품 완료 후, 결과물에 대하여 추가 요구를 당한 경험이 있다.

〈표-부록2-46〉 결과물 납품 후 결과물에 대한 추가 요구를 당한 경험 횟수 (단위 : 개, %)

		사례 수	피해경험 횟수			
			1회	2회	3회	4회 이상
전체		(106)	28.3	24.5	12.3	34.9
지역	수도권	(78)	26.9	24.4	15.4	33.3
	충청강원권	(9)	11.1	22.2	11.1	55.6
	호남권	(9)	44.4	22.2	0.0	33.3
	경상권	(10)	40.0	30.0	0.0	30.0
	제주	-	-	-	-	-
기업규모	1억원 미만	(4)	25.0	25.0	0.0	50.0
	1억~3억원 미만	(17)	23.5	11.8	17.6	47.1
	3억~5억원 미만	(30)	30.0	33.3	6.7	30.0
	5억~10억원 미만	(23)	21.7	17.4	26.1	34.8
	10억원 이상	(32)	34.4	28.1	6.3	31.3
종사자	5명 이하	(44)	27.3	20.5	15.9	36.4
	6~10명	(33)	33.3	24.2	12.1	30.3
	11~20명	(21)	23.8	28.6	9.5	38.1
	21명 이상	(8)	25.0	37.5	0.0	37.5

문항16) 결과물 납품 완료 후, 결과물에 대하여 추가 요구를 당한 경험이 있다.

〈표-부록2-47〉 결과물 납품 후 결과물에 대한 추가 요구를 당한 경험 총 피해 비용 (단위 : 개, %)

		사례 수	피해비용					
			5백만원 미만	5백만원~2천만원 미만	2천만원~5천만원 미만	5천만원~1억원 미만	1억원~2억원 미만	2억원 이상
전체		(106)	26.4	45.3	16.0	6.6	2.8	2.8
지역	수도권	(78)	28.2	42.3	16.7	6.4	2.6	3.8
	충청강원권	(9)	0.0	77.8	22.2	0.0	0.0	0.0
	호남권	(9)	44.4	55.6	0.0	0.0	0.0	0.0
	경상권	(10)	20.0	30.0	20.0	20.0	10.0	0.0
	제주	-	-	-	-	-	-	-
기업규모	1억원 미만	(4)	50.0	50.0	0.0	0.0	0.0	0.0
	1억~3억원 미만	(17)	11.8	64.7	17.6	5.9	0.0	0.0
	3억~5억원 미만	(30)	33.3	50.0	10.0	6.7	0.0	0.0
	5억~10억원 미만	(23)	30.4	34.8	17.4	8.7	8.7	0.0
	10억원 이상	(32)	21.9	37.5	21.9	6.3	3.1	9.4
종사자	5명 이하	(44)	29.5	54.5	11.4	4.5	0.0	0.0
	6~10명	(33)	27.3	45.5	9.1	12.1	6.1	0.0
	11~20명	(21)	14.3	28.6	33.3	4.8	4.8	14.3
	21명 이상	(8)	37.5	37.5	25.0	0.0	0.0	0.0

문항16) 결과물 납품 완료 후, 결과물에 대하여 추가 요구를 당한 경험이 있다.

〈표-부록2-48〉 결과물 납품 후 결과물에 대한 추가 요구를 당한 경험 분쟁 대상 (단위 : 개, %)

		사례 수	분쟁 대상					
			대기업	중소기업	정부 공공기관	디자인 전문회사	디자인 지원기관	기타
전체		(106)	23.6	64.2	34.9	4.7	1.9	5.7
지역	수도권	(78)	29.5	64.1	29.5	6.4	1.3	7.7
	충청강원권	(9)	11.1	77.8	33.3	0.0	0.0	0.0
	호남권	(9)	11.1	77.8	44.4	0.0	0.0	0.0
	경상권	(10)	0.0	40.0	70.0	0.0	10.0	0.0
	제주	-	-	-	-	-	-	-
기업규모	1억원 미만	(4)	25.0	100.0	25.0	0.0	0.0	0.0
	1억~3억원 미만	(17)	23.5	70.6	17.6	11.8	0.0	5.9
	3억~5억원 미만	(30)	20.0	66.7	33.3	0.0	3.3	3.3
	5억~10억원 미만	(23)	26.1	73.9	30.4	8.7	0.0	13.0
	10억원 이상	(32)	25.0	46.9	50.0	3.1	3.1	3.1
종사자	5명 이하	(44)	18.2	70.5	27.3	9.1	0.0	9.1
	6~10명	(33)	27.3	72.7	30.3	0.0	3.0	3.0
	11~20명	(21)	28.6	47.6	61.9	0.0	4.8	4.8
	21명 이상	(8)	25.0	37.5	25.0	12.5	0.0	0.0

문항16) 결과물 납품 완료 후, 결과물에 대하여 추가 요구를 당한 경험이 있다.

〈표-부록2-49〉 프로젝트 완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비 지급을 지연하거나 거부당한 경험 유무

(단위 : 개, %)

		사례 수	경험 유무	
			있다	없다
전체		(303)	29.4	70.6
지역	수도권	(191)	35.6	64.4
	충청강원권	(24)	25.0	75.0
	호남권	(35)	20.0	80.0
	경상권	(46)	15.2	84.8
	제주	(7)	14.3	85.7
기업규모	1억원 미만	(17)	23.5	76.5
	1억~3억원 미만	(67)	29.9	70.1
	3억~5억원 미만	(58)	44.8	55.2
	5억~10억원 미만	(65)	29.2	70.8
	10억원 이상	(96)	20.8	79.2
종사자	5명 이하	(118)	38.1	61.9
	6~10명	(95)	28.4	71.6
	11~20명	(62)	21.0	79.0
	21명 이상	(28)	14.3	85.7

문항17) 프로젝트 완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비 지급을 지연하거나 거부당한 경험이 있다.

〈표-부록2-50〉 프로젝트 완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비 지급을 지연하거나 거부당한 경험 횟수

(단위 : 개, %)

		사례 수	피해경험 횟수			
			1회	2회	3회	4회 이상
전체		(89)	31,5	27,0	6,7	34,8
지역	수도권	(68)	27,9	27,9	5,9	38,2
	충청강원권	(6)	16,7	50,0	0,0	33,3
	호남권	(7)	28,6	28,6	28,6	14,3
	경상권	(7)	71,4	0,0	0,0	28,6
	제주	(1)	100,0	0,0	0,0	0,0
기업규모	1억원 미만	(4)	50,0	0,0	0,0	50,0
	1억~3억원 미만	(20)	40,0	35,0	5,0	20,0
	3억~5억원 미만	(26)	30,8	26,9	15,4	26,9
	5억~10억원 미만	(19)	15,8	15,8	5,3	63,2
	10억원 이상	(20)	35,0	35,0	0,0	30,0
종사자	5명 이하	(45)	31,1	26,7	11,1	31,1
	6~10명	(27)	37,0	25,9	3,7	33,3
	11~20명	(13)	23,1	23,1	0,0	53,8
	21명 이상	(4)	25,0	50,0	0,0	25,0

문항17) 프로젝트 완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비 지급을 지연하거나 거부당한 경험이 있다.

〈표-부록2-51〉 프로젝트 완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비 지급을 지연하거나 거부당한 경험 총 피해 비용

(단위 : 개, %)

		사례 수	피해비용					
			5백만원 미만	5백만원~2천만원 미만	2천만원~5천만원 미만	5천만원~1억원 미만	1억원~2억원 미만	2억원 이상
전체		(89)	18,0	41,6	15,7	12,4	10,1	2,2
지역	수도권	(68)	20,6	33,8	17,6	14,7	10,3	2,9
	충청강원권	(6)	0,0	83,3	0,0	0,0	16,7	0,0
	호남권	(7)	0,0	85,7	14,3	0,0	0,0	0,0
	경상권	(7)	14,3	42,9	14,3	14,3	14,3	0,0
	제주	(1)	100,0	0,0	0,0	0,0	0,0	0,0
기업규모	1억원 미만	(4)	75,0	0,0	25,0	0,0	0,0	0,0
	1억~3억원 미만	(20)	20,0	60,0	5,0	10,0	5,0	0,0
	3억~5억원 미만	(26)	11,5	61,5	15,4	3,8	7,7	0,0
	5억~10억원 미만	(19)	15,8	26,3	15,8	26,3	15,8	0,0
	10억원 이상	(20)	15,0	20,0	25,0	15,0	15,0	10,0
종사자	5명 이하	(45)	17,8	51,1	13,3	11,1	6,7	0,0
	6~10명	(27)	25,9	40,7	11,1	14,8	7,4	0,0
	11~20명	(13)	7,7	7,7	23,1	15,4	30,8	15,4
	21명 이상	(4)	0,0	50,0	50,0	0,0	0,0	0,0

문항17) 프로젝트 완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비 지급을 지연하거나 거부당한 경험이 있다.

〈표-부록2-52〉 프로젝트 완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비 지급을 지연하거나 거부당한 경험 분쟁 대상 (단위 : 개, %)

	사례 수	분쟁 대상						
		대기업	중소기업	정부 공공기관	디자인 전문회사	디자인 지원기관	기타	
전체	(89)	21,3	77,5	22,5	7,9	2,2	9,0	
지역	수도권	(68)	25,0	77,9	20,6	10,3	1,5	8,8
	충청강원권	(6)	16,7	66,7	50,0	0,0	0,0	0,0
	호남권	(7)	14,3	85,7	14,3	0,0	14,3	14,3
	경상권	(7)	0,0	85,7	14,3	0,0	0,0	14,3
	제주	(1)	0,0	0,0	100,0	0,0	0,0	0,0
기업규모	1억원 미만	(4)	0,0	100,0	0,0	0,0	0,0	0,0
	1억~3억원 미만	(20)	5,0	80,0	15,0	15,0	0,0	5,0
	3억~5억원 미만	(26)	19,2	73,1	11,5	0,0	3,8	11,5
	5억~10억원 미만	(19)	31,6	84,2	31,6	15,8	0,0	15,8
	10억원 이상	(20)	35,0	70,0	40,0	5,0	5,0	5,0
종사자	5명 이하	(45)	15,6	73,3	20,0	11,1	2,2	11,1
	6~10명	(27)	18,5	85,2	18,5	3,7	0,0	7,4
	11~20명	(13)	38,5	76,9	46,2	0,0	7,7	7,7
	21명 이상	(4)	50,0	75,0	0,0	25,0	0,0	0,0

문항17) 프로젝트 완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비 지급을 지연하거나 거부당한 경험이 있다.

〈표-부록2-53〉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불인정 경험 유무 (단위 : 개, %)

	사례 수	경험 유무		
		있다	없다	
전체	(303)	30,0	70,0	
지역	수도권	(191)	34,6	65,4
	충청강원권	(24)	37,5	62,5
	호남권	(35)	28,6	71,4
	경상권	(46)	13,0	87,0
	제주	(7)	.0	100,0
기업규모	1억원 미만	(17)	11,8	88,2
	1억~3억원 미만	(67)	28,4	71,6
	3억~5억원 미만	(58)	44,8	55,2
	5억~10억원 미만	(65)	26,2	73,8
	10억원 이상	(96)	28,1	71,9
종사자	5명 이하	(118)	31,4	68,6
	6~10명	(95)	33,7	66,3
	11~20명	(62)	27,4	72,6
	21명 이상	(28)	17,9	82,1

문항18)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이 불인정된 경험이 있다.

〈표-부록2-54〉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불인정 경험 횟수

(단위 : 개, %)

		사례 수	피해경험 횟수			
			1회	2회	3회	4회 이상
전체		(91)	29.7	23.1	11.0	36.3
지역	수도권	(66)	25.8	22.7	13.6	37.9
	충청강원권	(9)	33.3	22.2	11.1	33.3
	호남권	(10)	20.0	30.0	0.0	50.0
	경상권	(6)	83.3	16.7	0.0	0.0
	제주	-	-	-	-	-
기업규모	1억원 미만	(2)	0.0	100.0	0.0	0.0
	1억~3억원 미만	(19)	31.6	15.8	10.5	42.1
	3억~5억원 미만	(26)	30.8	15.4	19.2	34.6
	5억~10억원 미만	(17)	23.5	23.5	5.9	47.1
	10억원 이상	(27)	33.3	29.6	7.4	29.6
종사자	5명 이하	(37)	24.3	16.2	16.2	43.2
	6~10명	(32)	43.8	18.8	9.4	28.1
	11~20명	(17)	17.6	29.4	5.9	47.1
	21명 이상	(5)	20.0	80.0	0.0	0.0

문항18)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이 불인정된 경험이 있다.

〈표-부록2-55〉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불인정 경험 총 피해 비용

(단위 : 개, %)

		사례 수	피해비용					
			5백만원 미만	5백만원~2천만원 미만	2천만원~5천만원 미만	5천만원~1억원 미만	1억원~2억원 이상	
전체		(91)	16.5	46.2	15.4	13.2	5.5	3.3
지역	수도권	(66)	19.7	36.4	16.7	15.2	7.6	4.5
	충청강원권	(9)	11.1	66.7	11.1	11.1	0.0	0.0
	호남권	(10)	10.0	80.0	10.0	0.0	0.0	0.0
	경상권	(6)	0.0	66.7	16.7	16.7	0.0	0.0
	제주	-	-	-	-	-	-	-
기업규모	1억원 미만	(2)	100.0	0.0	0.0	0.0	0.0	0.0
	1억~3억원 미만	(19)	10.5	63.2	10.5	15.8	0.0	0.0
	3억~5억원 미만	(26)	3.8	73.1	19.2	0.0	3.8	0.0
	5억~10억원 미만	(17)	23.5	35.3	17.6	11.8	11.8	0.0
	10억원 이상	(27)	22.2	18.5	14.8	25.9	7.4	11.1
종사자	5명 이하	(37)	10.8	70.3	8.1	8.1	2.7	0.0
	6~10명	(32)	28.1	37.5	18.8	9.4	3.1	3.1
	11~20명	(17)	5.9	11.8	17.6	35.3	17.6	11.8
	21명 이상	(5)	20.0	40.0	40.0	0.0	0.0	0.0

문항18)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이 불인정된 경험이 있다.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표-부록2-56〉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불인정 경험 분쟁 대상

(단위 : 개, %)

	사례 수	분쟁 대상						
		대기업	중소기업	정부 공공기관	디자인 전문회사	디자인 지원기관	기타	
전체	(91)	26.4	69.2	35.2	4.4	2.2	4.4	
지역	수도권	(66)	31.8	65.2	33.3	6.1	1.5	6.1
	충청강원권	(9)	11.1	77.8	33.3	0.0	0.0	0.0
	호남권	(10)	20.0	90.0	50.0	0.0	10.0	0.0
	경상권	(6)	0.0	66.7	33.3	0.0	0.0	0.0
	제주	-	-	-	-	-	-	-
기업규모	1억원 미만	(2)	0.0	50.0	100.0	0.0	0.0	0.0
	1억~3억원 미만	(19)	15.8	84.2	26.3	5.3	0.0	5.3
	3억~5억원 미만	(26)	23.1	76.9	30.8	3.8	3.8	3.8
	5억~10억원 미만	(17)	23.5	82.4	23.5	11.8	0.0	5.9
	10억원 이상	(27)	40.7	44.4	48.1	0.0	3.7	3.7
종사자	5명 이하	(37)	21.6	78.4	40.5	8.1	2.7	2.7
	6~10명	(32)	15.6	71.9	18.8	3.1	0.0	6.3
	11~20명	(17)	47.1	52.9	58.8	0.0	5.9	5.9
	21명 이상	(5)	60.0	40.0	20.0	0.0	0.0	0.0

문항18)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이 불인정된 경험이 있다.

〈표-부록2-57〉 계약에서 규정한 책임한도를 벗어난 지식재산권 저촉문제를 이유로 배상을 요구당한 경험 유무

(단위 : 개, %)

	사례 수	경험 유무		
		있다	없다	
전체	(303)	6.3	93.7	
지역	수도권	(191)	7.3	92.7
	충청강원권	(24)	8.3	91.7
	호남권	(35)	.0	100.0
	경상권	(46)	6.5	93.5
	제주	(7)	.0	100.0
기업규모	1억원 미만	(17)	5.9	94.1
	1억~3억원 미만	(67)	9.0	91.0
	3억~5억원 미만	(58)	10.3	89.7
	5억~10억원 미만	(65)	4.6	95.4
	10억원 이상	(96)	3.1	96.9
종사자	5명 이하	(118)	8.5	91.5
	6~10명	(95)	5.3	94.7
	11~20명	(62)	6.5	93.5
	21명 이상	(28)	.0	100.0

문항19) 계약에서 규정한 책임한도를 벗어난 지식재산권 저촉문제를 이유로 배상을 요구당한 경험이 있다.

〈표-부록2-58〉 계약에서 규정한 책임한도를 벗어난 지식재산권 저촉문제를 이유로 배상을 요구당한 경험 횟수 (단위 : 개, %)

		사례 수	피해경험 횟수			
			1회	2회	3회	4회 이상
전체		(19)	68.4	21.1	5.3	5.3
지역	수도권	(14)	57.1	28.6	7.1	7.1
	충청강원권	(2)	100.0	0.0	0.0	0.0
	호남권	-	-	-	-	-
	경상권	(3)	100.0	0.0	0.0	0.0
	제주	-	-	-	-	-
기업규모	1억원 미만	(1)	100.0	0.0	0.0	0.0
	1억~3억원 미만	(6)	83.3	0.0	16.7	0.0
	3억~5억원 미만	(6)	66.7	33.3	0.0	0.0
	5억~10억원 미만	(3)	66.7	33.3	0.0	0.0
	10억원 이상	(3)	33.3	33.3	0.0	33.3
종사자	5명 이하	(10)	80.0	10.0	10.0	0.0
	6~10명	(5)	80.0	20.0	0.0	0.0
	11~20명	(4)	25.0	50.0	0.0	25.0
	21명 이상	-	-	-	-	-

문항19) 계약에서 규정한 책임한도를 벗어난 지식재산권 저촉문제를 이유로 배상을 요구당한 경험이 있다.

〈표-부록2-59〉 계약에서 규정한 책임한도를 벗어난 지식재산권 저촉문제를 이유로 배상을 요구당한 경험 총 피해비용 (단위 : 개, %)

		사례 수	피해비용					
			5백만원 미만	5백만원~2천만원 미만	2천만원~5천만원 미만	5천만원~1억원 미만	1억원~2억원 미만	2억원 이상
전체		(19)	42.1	31.6	21.1	-	5.3	-
지역	수도권	(14)	35.7	35.7	21.4	-	7.1	-
	충청강원권	(2)	50.0	50.0	0.0	-	0.0	-
	호남권	-	-	-	-	-	-	-
	경상권	(3)	66.7	0.0	33.3	-	0.0	-
	제주	-	-	-	-	-	-	-
기업규모	1억원 미만	(1)	0.0	100.0	0.0	-	0.0	-
	1억~3억원 미만	(6)	33.3	33.3	33.3	-	0.0	-
	3억~5억원 미만	(6)	50.0	33.3	16.7	-	0.0	-
	5억~10억원 미만	(3)	0.0	33.3	33.3	-	33.3	-
	10억원 이상	(3)	100.0	0.0	0.0	-	0.0	-
종사자	5명 이하	(10)	30.0	60.0	10.0	-	0.0	-
	6~10명	(5)	40.0	0.0	60.0	-	0.0	-
	11~20명	(4)	75.0	0.0	0.0	-	25.0	-
	21명 이상	-	-	-	-	-	-	-

문항19) 계약에서 규정한 책임한도를 벗어난 지식재산권 저촉문제를 이유로 배상을 요구당한 경험이 있다.

〈표-부록2-60〉 계약에서 규정한 책임한도를 벗어난 지식재산권 저촉문제를 이유로 배상을 요구당한 경험 분쟁 대상 (단위 : 개, %)

	사례 수	분쟁 대상						
		대기업	중소기업	정부 공공기관	디자인 전문회사	디자인 지원기관	기타	
전체	(19)	21.1	68.4	21.1	5.3	15.8	5.3	
지역	수도권	(14)	28.6	71.4	21.4	7.1	14.3	0.0
	충청강원권	(2)	0.0	50.0	0.0	0.0	50.0	0.0
	호남권	-	-	-	-	-	-	-
	경상권	(3)	0.0	66.7	33.3	0.0	0.0	33.3
	제주	-	-	-	-	-	-	-
기업규모	1억원 미만	(1)	0.0	100.0	0.0	0.0	100.0	0.0
	1억~3억원 미만	(6)	33.3	83.3	16.7	0.0	0.0	0.0
	3억~5억원 미만	(6)	16.7	66.7	16.7	16.7	16.7	0.0
	5억~10억원 미만	(3)	0.0	33.3	33.3	0.0	0.0	33.3
	10억원 이상	(3)	33.3	66.7	33.3	0.0	33.3	0.0
종사자	5명 이하	(10)	30.0	80.0	20.0	0.0	20.0	0.0
	6~10명	(5)	0.0	60.0	0.0	20.0	0.0	20.0
	11~20명	(4)	25.0	50.0	50.0	0.0	25.0	0.0
	21명 이상	-	-	-	-	-	-	-

문항19) 계약에서 규정한 책임한도를 벗어난 지식재산권 저촉문제를 이유로 배상을 요구당한 경험이 있다.

〈표-부록2-61〉 경쟁입찰에 제출한 시안을 무단으로 도용당한 경험 유무 (단위 : 개, %)

	사례 수	경험 유무		
		있다	없다	
전체	(303)	24.8	75.2	
지역	수도권	(191)	29.8	70.2
	충청강원권	(24)	20.8	79.2
	호남권	(35)	20.0	80.0
	경상권	(46)	13.0	87.0
	제주	(7)	.0	100.0
기업규모	1억원 미만	(17)	11.8	88.2
	1억~3억원 미만	(67)	20.9	79.1
	3억~5억원 미만	(58)	31.0	69.0
	5억~10억원 미만	(65)	24.6	75.4
	10억원 이상	(96)	26.0	74.0
종사자	5명 이하	(118)	33.9	66.1
	6~10명	(95)	20.0	80.0
	11~20명	(62)	21.0	79.0
	21명 이상	(28)	10.7	89.3

문항20) 경쟁 입찰에 참여하여 제출한 시안을 본인의 사용허락 없이 무단으로 도용당한 경험이 있다.

〈표-부록2-62〉경쟁입찰에 제출한 시안을 무단으로 도용당한 경험횟수

(단위 : 개, %)

		사례 수	피해경험 횟수			
			1회	2회	3회	4회 이상
전체		(75)	33.3	32.0	8.0	26.7
지역	수도권	(57)	31.6	31.6	10.5	26.3
	충청강원권	(5)	40.0	40.0	0.0	20.0
	호남권	(7)	57.1	14.3	0.0	28.6
	경상권	(6)	16.7	50.0	0.0	33.3
	제주	-	-	-	-	-
기업규모	1억원 미만	(2)	100.0	0.0	0.0	0.0
	1억~3억원 미만	(14)	28.6	42.9	14.3	14.3
	3억~5억원 미만	(18)	55.6	16.7	5.6	22.2
	5억~10억원 미만	(16)	6.3	43.8	12.5	37.5
	10억원 이상	(25)	32.0	32.0	4.0	32.0
종사자	5명 이하	(40)	37.5	30.0	10.0	22.5
	6~10명	(19)	31.6	42.1	10.5	15.8
	11~20명	(13)	23.1	23.1	0.0	53.8
	21명 이상	(3)	33.3	33.3	0.0	33.3

문항20) 경쟁 입찰에 참여하여 제출한 시안을 본인의 사용허락 없이 무단으로 도용당한 경험이 있다.

〈표-부록2-63〉 경쟁입찰에 제출한 시안을 무단으로 도용당한 경험 총 피해비용

(단위 : 개, %)

		사례 수	피해비용					
			5백만원 미만	5백만원~2천만원 미만	2천만원~5천만원 미만	5천만원~1억원 미만	1억원~2억원 이상	
전체		(75)	12.0	38.7	22.7	9.3	8.0	9.3
지역	수도권	(57)	10.5	36.8	24.6	7.0	8.8	12.3
	충청강원권	(5)	20.0	60.0	0.0	0.0	20.0	0.0
	호남권	(7)	14.3	42.9	28.6	14.3	0.0	0.0
	경상권	(6)	16.7	33.3	16.7	33.3	0.0	0.0
	제주	-	-	-	-	-	-	-
기업규모	1억원 미만	(2)	50.0	0.0	0.0	0.0	50.0	0.0
	1억~3억원 미만	(14)	7.1	50.0	28.6	7.1	0.0	7.1
	3억~5억원 미만	(18)	22.2	44.4	27.8	0.0	5.6	0.0
	5억~10억원 미만	(16)	12.5	37.5	25.0	12.5	6.3	6.3
	10억원 이상	(25)	4.0	32.0	16.0	16.0	12.0	20.0
종사자	5명 이하	(40)	15.0	40.0	30.0	5.0	5.0	5.0
	6~10명	(19)	10.5	52.6	0.0	15.8	10.5	10.5
	11~20명	(13)	7.7	23.1	23.1	15.4	7.7	23.1
	21명 이상	(3)	0.0	0.0	66.7	0.0	33.3	0.0

문항20) 경쟁 입찰에 참여하여 제출한 시안을 본인의 사용허락 없이 무단으로 도용당한 경험이 있다.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표-부록2-64〉 경쟁입찰에 제출한 시안을 무단으로 도용당한 경험 분쟁 대상 (단위 : 개, %)

		사례 수	분쟁 대상					
			대기업	중소기업	정부 공공기관	디자인 전문회사	디자인 지원기관	기타
전체		(75)	37.3	62.7	33.3	12.0	1.3	8.0
지역	수도권	(57)	45.6	68.4	31.6	10.5	1.8	8.8
	충청강원권	(5)	20.0	60.0	40.0	0.0	0.0	0.0
	호남권	(7)	14.3	57.1	28.6	14.3	0.0	14.3
	경상권	(6)	0.0	16.7	50.0	33.3	0.0	0.0
	제주	-	-	-	-	-	-	-
기업규모	1억원 미만	(2)	0.0	50.0	0.0	50.0	0.0	0.0
	1억~3억원 미만	(14)	28.6	64.3	28.6	7.1	0.0	7.1
	3억~5억원 미만	(18)	33.3	61.1	33.3	5.6	0.0	0.0
	5억~10억원 미만	(16)	37.5	81.3	25.0	18.8	0.0	18.8
	10억원 이상	(25)	48.0	52.0	44.0	12.0	4.0	8.0
종사자	5명 이하	(40)	25.0	65.0	27.5	10.0	0.0	7.5
	6~10명	(19)	42.1	63.2	26.3	26.3	5.3	10.5
	11~20명	(13)	61.5	61.5	69.2	0.0	0.0	0.0
	21명 이상	(3)	66.7	33.3	0.0	0.0	0.0	33.3

문항20) 경쟁 입찰에 참여하여 제출한 시안을 본인의 사용허락 없이 무단으로 도용당한 경험이 있다.

〈표-부록2-65〉 계약조항 외에 디자인 개발에 따른 모든 지식재산권 양도를 요구당한 경험 유무

(단위 : 개, %)

		사례 수	경험 유무	
			있다	없다
전체		(303)	24.4	75.6
지역	수도권	(191)	29.8	70.2
	충청강원권	(24)	16.7	83.3
	호남권	(35)	8.6	91.4
	경상권	(46)	21.7	78.3
	제주	(7)	.0	100.0
기업규모	1억원 미만	(17)	11.8	88.2
	1억~3억원 미만	(67)	17.9	82.1
	3억~5억원 미만	(58)	37.9	62.1
	5억~10억원 미만	(65)	24.6	75.4
	10억원 이상	(96)	22.9	77.1
종사자	5명 이하	(118)	28.0	72.0
	6~10명	(95)	28.4	71.6
	11~20명	(62)	17.7	82.3
	21명 이상	(28)	10.7	89.3

문항21) 계약조항 외에 디자인 개발에 따른 모든 지식재산권의 양도를 요구당한 경험이 있다.

〈표-부록2-66〉 계약조항 외에 디자인 개발에 따른 모든 지식재산권 양도를 요구당한 경험 횟수

(단위 : 개, %)

		사례 수	피해경험 횟수			
			1회	2회	3회	4회 이상
전체		(74)	20,3	24,3	8,1	47,3
지역	수도권	(57)	19,3	19,3	5,3	56,1
	충청강원권	(4)	25,0	25,0	0,0	50,0
	호남권	(3)	0,0	33,3	66,7	0,0
	경상권	(10)	30,0	50,0	10,0	10,0
	제주	-	-	-	-	-
기업규모	1억원 미만	(2)	0,0	50,0	0,0	50,0
	1억~3억원 미만	(12)	25,0	16,7	8,3	50,0
	3억~5억원 미만	(22)	27,3	18,2	4,5	50,0
	5억~10억원 미만	(16)	6,3	31,3	6,3	56,3
	10억원 이상	(22)	22,7	27,3	13,6	36,4
종사자	5명 이하	(33)	21,2	21,2	6,1	51,5
	6~10명	(27)	25,9	22,2	11,1	40,7
	11~20명	(11)	9,1	36,4	0,0	54,5
	21명 이상	(3)	0,0	33,3	33,3	33,3

문항21) 계약조항 외에 디자인 개발에 따른 모든 지식재산권의 양도를 요구당한 경험이 있다.

〈표-부록2-67〉 계약조항 외에 디자인 개발에 따른 모든 지식재산권 양도를 요구당한 경험 총 피해비용

(단위 : 개, %)

		사례 수	피해비용					
			5백만원 미만	5백만원~2천만원 미만	2천만원~5천만원 미만	5천만원~1억원 미만	1억원~2억원 이상	
전체		(74)	9,5	48,6	14,9	9,5	6,8	10,8
지역	수도권	(57)	10,5	43,9	14,0	8,8	8,8	14,0
	충청강원권	(4)	0,0	75,0	25,0	0,0	0,0	0,0
	호남권	(3)	0,0	66,7	33,3	0,0	0,0	0,0
	경상권	(10)	10,0	60,0	10,0	20,0	0,0	0,0
	제주	-	-	-	-	-	-	-
기업규모	1억원 미만	(2)	50,0	50,0	0,0	0,0	0,0	0,0
	1억~3억원 미만	(12)	0,0	66,7	0,0	8,3	16,7	8,3
	3억~5억원 미만	(22)	9,1	68,2	22,7	0,0	0,0	0,0
	5억~10억원 미만	(16)	6,3	31,3	6,3	31,3	12,5	12,5
	10억원 이상	(22)	13,6	31,8	22,7	4,5	4,5	22,7
종사자	5명 이하	(33)	6,1	57,6	9,1	9,1	9,1	9,1
	6~10명	(27)	18,5	44,4	14,8	14,8	3,7	3,7
	11~20명	(11)	0,0	27,3	27,3	0,0	9,1	36,4
	21명 이상	(3)	0,0	66,7	33,3	0,0	0,0	0,0

문항21) 계약조항 외에 디자인 개발에 따른 모든 지식재산권의 양도를 요구당한 경험이 있다.

〈표-부록2-68〉 계약조항 외에 디자인 개발에 따른 모든 지식재산권 양도를 요구당한 경험 분쟁대상

(단위 : 개, %)

	사례 수	분쟁 대상						
		대기업	중소기업	정부 공공기관	디자인 전문회사	디자인 지원기관	기타	
전체	(74)	41.9	68.9	39.2	6.8	4.1	5.4	
지역	수도권	(57)	50.9	66.7	38.6	8.8	3.5	7.0
	충청강원권	(4)	0.0	75.0	50.0	0.0	0.0	0.0
	호남권	(3)	33.3	100.0	33.3	0.0	0.0	0.0
	경상권	(10)	10.0	70.0	40.0	0.0	10.0	0.0
	제주	-	-	-	-	-	-	-
기업규모	1억원 미만	(2)	50.0	100.0	50.0	0.0	50.0	0.0
	1억~3억원 미만	(12)	50.0	66.7	41.7	8.3	0.0	8.3
	3억~5억원 미만	(22)	27.3	63.6	36.4	0.0	0.0	0.0
	5억~10억원 미만	(16)	31.3	81.3	37.5	12.5	6.3	6.3
	10억원 이상	(22)	59.1	63.6	40.9	9.1	4.5	9.1
종사자	5명 이하	(33)	33.3	69.7	36.4	9.1	3.0	6.1
	6~10명	(27)	37.0	70.4	37.0	7.4	3.7	3.7
	11~20명	(11)	72.7	72.7	63.6	0.0	9.1	0.0
	21명 이상	(3)	66.7	33.3	0.0	0.0	0.0	33.3

문항21) 계약조항 외에 디자인 개발에 따른 모든 지식재산권의 양도를 요구당한 경험이 있다.

〈표-부록2-69〉 프로젝트 진행 중 용역발주처로부터 모욕감이나 굴욕감 느낀 경험 유무

(단위 : 개, %)

	사례 수	경험 유무		
		있다	없다	
전체	(303)	38.0	62.0	
지역	수도권	(191)	44.5	55.5
	충청강원권	(24)	37.5	62.5
	호남권	(35)	22.9	77.1
	경상권	(46)	26.1	73.9
	제주	(7)	14.3	85.7
기업규모	1억원 미만	(17)	47.1	52.9
	1억~3억원 미만	(67)	31.3	68.7
	3억~5억원 미만	(58)	53.4	46.6
	5억~10억원 미만	(65)	32.3	67.7
	10억원 이상	(96)	35.4	64.6
종사자	5명 이하	(118)	44.9	55.1
	6~10명	(95)	34.7	65.3
	11~20명	(62)	37.1	62.9
	21명 이상	(28)	21.4	78.6

문항22)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용역발주처(갑)” 으로부터 모욕감이나 굴욕감을 느낀 경험이 있다.

(응대회피, 지연, 무시 등)

〈표-부록2-70〉 프로젝트 진행 중 용역발주처로부터 모욕감이나 굴욕감 느낀 경험 횟수

(단위 : 개, %)

		사례 수	피해경험 횟수			
			1회	2회	3회	4회 이상
전체		(115)	22,6	23,5	10,4	43,5
지역	수도권	(85)	23,5	22,4	11,8	42,4
	충청강원권	(9)	11,1	22,2	0,0	66,7
	호남권	(8)	25,0	25,0	12,5	37,5
	경상권	(12)	16,7	33,3	8,3	41,7
	제주	(1)	100,0	0,0	0,0	0,0
기업규모	1억원 미만	(8)	25,0	25,0	12,5	37,5
	1억~3억원 미만	(21)	23,8	38,1	4,8	33,3
	3억~5억원 미만	(31)	32,3	16,1	3,2	48,4
	5억~10억원 미만	(21)	9,5	14,3	19,0	57,1
	10억원 이상	(34)	20,6	26,5	14,7	38,2
종사자	5명 이하	(53)	24,5	24,5	3,8	47,2
	6~10명	(33)	18,2	24,2	15,2	42,4
	11~20명	(23)	26,1	17,4	17,4	39,1
	21명 이상	(6)	16,7	33,3	16,7	33,3

문항22)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용역발주처(갑)” 으로부터 모욕감이나 굴욕감을 느낀 경험이 있다.
(응대회피, 자연, 무시 등)

〈표-부록2-71〉 프로젝트 진행 중 용역발주처로부터 모욕감이나 굴욕감 느낀 경험 분쟁 대상

(단위 : 개, %)

		사례 수	분쟁 대상					
			대기업	중소기업	정부 공공기관	디자인 전문회사	디자인 지원기관	기타
전체		(115)	34,8	63,5	47,0	6,1	7,8	5,2
지역	수도권	(85)	43,5	67,1	41,2	7,1	7,1	4,7
	충청강원권	(9)	11,1	66,7	66,7	0,0	0,0	0,0
	호남권	(8)	0,0	50,0	75,0	0,0	0,0	25,0
	경상권	(12)	16,7	50,0	50,0	8,3	25,0	0,0
	제주	(1)	0,0	0,0	100,0	0,0	0,0	0,0
기업규모	1억원 미만	(8)	12,5	87,5	37,5	0,0	25,0	0,0
	1억~3억원 미만	(21)	28,6	66,7	42,9	9,5	0,0	4,8
	3억~5억원 미만	(31)	29,0	54,8	48,4	3,2	6,5	3,2
	5억~10억원 미만	(21)	52,4	85,7	47,6	9,5	4,8	9,5
	10억원 이상	(34)	38,2	50,0	50,0	5,9	11,8	5,9
종사자	5명 이하	(53)	30,2	69,8	50,9	7,5	5,7	5,7
	6~10명	(33)	33,3	66,7	33,3	3,0	9,1	6,1
	11~20명	(23)	47,8	47,8	65,2	4,3	8,7	4,3
	21명 이상	(6)	33,3	50,0	16,7	16,7	16,7	0,0

문항22)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용역발주처(갑)” 으로부터 모욕감이나 굴욕감을 느낀 경험이 있다.
(응대회피, 자연, 무시 등)

〈표-부록2-72〉 프로젝트 진행 중 과도한 항응 접대요구를 받은 경험 유무 (단위 : 개, %)

		사례 수	경험 유무	
			있다	없다
전체		(303)	15,8	84,2
지역	수도권	(191)	18,8	81,2
	충청강원권	(24)	20,8	79,2
	호남권	(35)	2,9	97,1
	경상권	(46)	13,0	87,0
	제주	(7)	.0	100,0
기업규모	1억원 미만	(17)	11,8	88,2
	1억~3억원 미만	(67)	10,4	89,6
	3억~5억원 미만	(58)	27,6	72,4
	5억~10억원 미만	(65)	16,9	83,1
	10억원 이상	(96)	12,5	87,5
종사자	5명 이하	(118)	22,0	78,0
	6~10명	(95)	12,6	87,4
	11~20명	(62)	14,5	85,5
	21명 이상	(28)	3,6	96,4

문항23)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과도한 항응접대를 요구받은 사례가 있다.

〈표-부록2-73〉 프로젝트 진행 중 과도한 항응 접대요구를 받은 경험 횟수 (단위 : 개, %)

		사례 수	피해경험 횟수			
			1회	2회	3회	4회 이상
전체		(48)	20,8	31,3	6,3	41,7
지역	수도권	(36)	22,2	30,6	8,3	38,9
	충청강원권	(5)	20,0	40,0	0,0	40,0
	호남권	(1)	0,0	0,0	0,0	100,0
	경상권	(6)	16,7	33,3	0,0	50,0
	제주	-	-	-	-	-
기업규모	1억원 미만	(2)	50,0	50,0	0,0	0,0
	1억~3억원 미만	(7)	14,3	14,3	14,3	57,1
	3억~5억원 미만	(16)	31,3	50,0	6,3	12,5
	5억~10억원 미만	(11)	18,2	18,2	0,0	63,6
	10억원 이상	(12)	8,3	25,0	8,3	58,3
종사자	5명 이하	(26)	23,1	38,5	7,7	30,8
	6~10명	(12)	25,0	25,0	0,0	50,0
	11~20명	(9)	11,1	11,1	11,1	66,7
	21명 이상	(1)	0,0	100,0	0,0	0,0

문항23)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과도한 항응접대를 요구받은 사례가 있다.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표-부록2-74〉 프로젝트 진행 중 과도한 항응 접대요구를 받은 경험 총 피해비용

(단위 : 개, %)

		사례 수	피해비용			
			50만원 미만	50만원~100만원 미만	100만원~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전체		(48)	6.3	16.7	45.8	31.3
지역	수도권	(36)	2.8	13.9	50.0	33.3
	충청강원권	(5)	0.0	40.0	20.0	40.0
	호남권	(1)	0.0	0.0	100.0	0.0
	경상권	(6)	33.3	16.7	33.3	16.7
	제주	-	-	-	-	-
기업규모	1억원 미만	(2)	0.0	50.0	50.0	0.0
	1억~3억원 미만	(7)	0.0	28.6	42.9	28.6
	3억~5억원 미만	(16)	6.3	31.3	43.8	18.8
	5억~10억원 미만	(11)	18.2	0.0	45.5	36.4
	10억원 이상	(12)	0.0	0.0	50.0	50.0
종사자	5명 이하	(26)	3.8	26.9	50.0	19.2
	6~10명	(12)	16.7	8.3	50.0	25.0
	11~20명	(9)	0.0	0.0	22.2	77.8
	21명 이상	(1)	0.0	0.0	100.0	0.0

문항23)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과도한 항응접대를 요구받은 사례가 있다.

〈표-부록2-75〉 프로젝트 진행 중 과도한 항응 접대요구를 받은 경험 분쟁 대상

(단위 : 개, %)

		사례 수	분쟁 대상					
			대기업	중소기업	정부 공공기관	디자인 전문회사	디자인 지원기관	기타
전체		(48)	25.0	62.5	39.6	4.2	6.3	6.3
지역	수도권	(36)	33.3	75.0	27.8	5.6	0.0	5.6
	충청강원권	(5)	0.0	40.0	100.0	0.0	20.0	0.0
	호남권	(1)	0.0	0.0	100.0	0.0	0.0	0.0
	경상권	(6)	0.0	16.7	50.0	0.0	33.3	16.7
	제주	-	-	-	-	-	-	-
기업규모	1억원 미만	(2)	50.0	50.0	0.0	0.0	0.0	0.0
	1억~3억원 미만	(7)	0.0	57.1	57.1	14.3	14.3	14.3
	3억~5억원 미만	(16)	25.0	62.5	31.3	0.0	6.3	6.3
	5억~10억원 미만	(11)	36.4	81.8	36.4	0.0	9.1	0.0
	10억원 이상	(12)	25.0	50.0	50.0	8.3	0.0	8.3
종사자	5명 이하	(26)	19.2	57.7	30.8	3.8	3.8	7.7
	6~10명	(12)	33.3	66.7	41.7	8.3	16.7	8.3
	11~20명	(9)	33.3	66.7	66.7	0.0	0.0	0.0
	21명 이상	(1)	0.0	100.0	0.0	0.0	0.0	0.0

문항23)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과도한 항응접대를 요구받은 사례가 있다.

〈표-부록2-76〉 개발결과물의 하자를 이유로 잔금 지연 혹은 못받은 경험 유무

(단위 : 개, %)

		사례 수	경험 유무	
			있다	없다
전체		(303)	32.3	67.7
지역	수도권	(191)	37.2	62.8
	충청강원권	(24)	29.2	70.8
	호남권	(35)	25.7	74.3
	경상권	(46)	23.9	76.1
	제주	(7)	0.0	100.0
기업규모	1억원 미만	(17)	29.4	70.6
	1억~3억원 미만	(67)	32.8	67.2
	3억~5억원 미만	(58)	41.4	58.6
	5억~10억원 미만	(65)	30.8	69.2
	10억원 이상	(96)	28.1	71.9
종사자	5명 이하	(118)	37.3	62.7
	6~10명	(95)	28.4	71.6
	11~20명	(62)	32.3	67.7
	21명 이상	(28)	25.0	75.0

문항30) 개발결과물의 하자를 이유로 잔금을 지연 또는 못 받은 경험이 있다.

〈표-부록2-77〉 개발결과물의 하자를 이유로 잔금 지연 혹은 못 받은 경험 횟수

(단위 : 개, %)

		사례 수	피해경험 횟수			
			1회	2회	3회	4회 이상
전체		(98)	36.7	29.6	8.2	25.5
지역	수도권	(71)	32.4	26.8	7.0	33.8
	충청강원권	(7)	28.6	42.9	28.6	0.0
	호남권	(9)	55.6	33.3	11.1	0.0
	경상권	(11)	54.5	36.4	0.0	9.1
	제주	-	-	-	-	-
기업규모	1억원 미만	(5)	40.0	20.0	40.0	0.0
	1억~3억원 미만	(22)	27.3	45.5	13.6	13.6
	3억~5억원 미만	(24)	50.0	20.8	4.2	25.0
	5억~10억원 미만	(20)	25.0	45.0	5.0	25.0
	10억원 이상	(27)	40.7	14.8	3.7	40.7
종사자	5명 이하	(44)	36.4	34.1	11.4	18.2
	6~10명	(27)	33.3	40.7	7.4	18.5
	11~20명	(20)	45.0	5.0	5.0	45.0
	21명 이상	(7)	28.6	28.6	0.0	42.9

문항30) 개발결과물의 하자를 이유로 잔금을 지연 또는 못 받은 경험이 있다.

〈표-부록2-78〉 개발결과물의 하자를 이유로 잔금 지연 혹은 못받은 경험 총 피해비용

(단위 : 개, %)

	사례 수	피해비용						
		5백만원 미만	5백만원~2천만원 미만	2천만원~5천만원 미만	5천만원~1억원 미만	1억원~2억원 미만	2억원 이상	
전체	(98)	27.6	39.8	17.3	8.2	5.1	2.0	
지역	수도권	(71)	16.9	42.3	21.1	11.3	5.6	2.8
	충청강원권	(7)	71.4	28.6	0.0	0.0	0.0	0.0
	호남권	(9)	55.6	44.4	0.0	0.0	0.0	0.0
	경상권	(11)	45.5	27.3	18.2	0.0	9.1	0.0
	제주	-	-	-	-	-	-	-
기업규모	1억원 미만	(5)	40.0	40.0	20.0	0.0	0.0	0.0
	1억~3억원 미만	(22)	45.5	31.8	13.6	4.5	4.5	0.0
	3억~5억원 미만	(24)	29.2	58.3	8.3	0.0	0.0	4.2
	5억~10억원 미만	(20)	25.0	30.0	25.0	5.0	15.0	0.0
	10억원 이상	(27)	11.1	37.0	22.2	22.2	3.7	3.7
종사자	5명 이하	(44)	34.1	52.3	6.8	4.5	2.3	0.0
	6~10명	(27)	33.3	33.3	18.5	3.7	7.4	3.7
	11~20명	(20)	10.0	30.0	30.0	15.0	10.0	5.0
	21명 이상	(7)	14.3	14.3	42.9	28.6	0.0	0.0

문항30) 개발결과물의 하자를 이유로 잔금을 지연 또는 못 받은 경험이 있다.

〈표-부록2-79〉 개발결과물의 하자를 이유로 잔금 지연 혹은 못받은 경험 분쟁 대상

(단위 : 개, %)

	사례 수	분쟁 대상						
		대기업	중소기업	정부 공공기관	디자인 전문회사	디자인 지원기관	기타	
전체	(98)	21.4	73.5	12.2	3.1	3.1	10.2	
지역	수도권	(71)	29.6	71.8	14.1	4.2	2.8	9.9
	충청강원권	(7)	0.0	57.1	28.6	0.0	0.0	14.3
	호남권	(9)	0.0	88.9	0.0	0.0	0.0	11.1
	경상권	(11)	0.0	81.8	0.0	0.0	9.1	9.1
	제주	-	-	-	-	-	-	-
기업규모	1억원 미만	(5)	20.0	80.0	0.0	0.0	0.0	0.0
	1억~3억원 미만	(22)	9.1	86.4	13.6	4.5	4.5	4.5
	3억~5억원 미만	(24)	8.3	66.7	16.7	0.0	8.3	12.5
	5억~10억원 미만	(20)	25.0	75.0	10.0	5.0	0.0	15.0
	10억원 이상	(27)	40.7	66.7	11.1	3.7	0.0	11.1
종사자	5명 이하	(44)	9.1	75.0	11.4	4.5	2.3	11.4
	6~10명	(27)	22.2	81.5	3.7	0.0	0.0	11.1
	11~20명	(20)	45.0	60.0	25.0	5.0	5.0	5.0
	21명 이상	(7)	28.6	71.4	14.3	0.0	14.3	14.3

문항30) 개발결과물의 하자를 이유로 잔금을 지연 또는 못 받은 경험이 있다.

〈표-부록2-80〉 표준계약서 활용 경험 유무

(단위 : 개, %)

		사례 수	경험 유무	
			있다	없다
전체		(303)	48.8	51.2
지역	수도권	(191)	54.5	45.5
	충청강원권	(24)	41.7	58.3
	호남권	(35)	34.3	65.7
	경상권	(46)	43.5	56.5
	제주	(7)	28.6	71.4
기업규모	1억원 미만	(17)	52.9	47.1
	1억~3억원 미만	(67)	37.3	62.7
	3억~5억원 미만	(58)	50.0	50.0
	5억~10억원 미만	(65)	50.8	49.2
	10억원 이상	(96)	54.2	45.8
종사자	5명 이하	(118)	44.9	55.1
	6~10명	(95)	47.4	52.6
	11~20명	(62)	51.6	48.4
	21명 이상	(28)	64.3	35.7

문항31) 표준계약서 양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다.

〈표-부록2-81〉 표준계약서 활용 경험 횟수

(단위 : 개, %)

		사례 수	피해경험 횟수			
			1회	2회	3회	4회 이상
전체		(148)	12.8	13.5	6.1	67.6
지역	수도권	(104)	9.6	13.5	8.7	68.3
	충청강원권	(10)	10.0	10.0	0.0	80.0
	호남권	(12)	16.7	16.7	0.0	66.7
	경상권	(20)	30.0	15.0	0.0	55.0
	제주	(2)	0.0	0.0	0.0	100.0
기업규모	1억원 미만	(9)	11.1	22.2	0.0	66.7
	1억~3억원 미만	(25)	16.0	16.0	16.0	52.0
	3억~5억원 미만	(29)	13.8	6.9	6.9	72.4
	5억~10억원 미만	(33)	9.1	15.2	0.0	75.8
	10억원 이상	(52)	13.5	13.5	5.8	67.3
종사자	5명 이하	(53)	15.1	15.1	13.2	56.6
	6~10명	(45)	13.3	11.1	0.0	75.6
	11~20명	(32)	3.1	15.6	6.3	75.0
	21명 이상	(18)	22.2	11.1	0.0	66.7

문항31) 표준계약서 양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다.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표-부록2-82〉 표준계약서 활용 경험 총 용역비 규모

(단위 : 개, %)

		사례 수	용역비 규모					
			5백만원 미만	5백만원~2천만원 미만	2천만원~5천만원 미만	5천만원~1억원 미만	1억원~2억원 이상	
전체		(148)	8.1	36.5	20.3	14.9	5.4	14.9
지역	수도권	(104)	5.8	39.4	16.3	17.3	4.8	16.3
	충청강원권	(10)	20.0	10.0	40.0	20.0	0.0	10.0
	호남권	(12)	8.3	25.0	33.3	8.3	8.3	16.7
	경상권	(20)	15.0	40.0	20.0	5.0	10.0	10.0
	제주	(2)	0.0	50.0	50.0	0.0	0.0	0.0
기업규모	1억원 미만	(9)	0.0	77.8	22.2	0.0	0.0	0.0
	1억~3억원 미만	(25)	20.0	52.0	12.0	8.0	4.0	4.0
	3억~5억원 미만	(29)	6.9	31.0	20.7	24.1	6.9	10.3
	5억~10억원 미만	(33)	3.0	39.4	24.2	15.2	6.1	12.1
	10억원 이상	(52)	7.7	23.1	21.2	15.4	5.8	26.9
종사자	5명 이하	(53)	13.2	49.1	13.2	13.2	1.9	9.4
	6~10명	(45)	2.2	35.6	24.4	17.8	6.7	13.3
	11~20명	(32)	9.4	28.1	28.1	12.5	3.1	18.8
	21명 이상	(18)	5.6	16.7	16.7	16.7	16.7	2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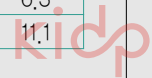
문항31) 표준계약서 양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다.

〈표-부록2-83〉 표준계약서 활용 경험 대상

(단위 : 개, %)

		사례 수	경험 대상					
			대기업	중소기업	정부 공공기관	디자인 전문회사	디자인 지원기관	기타
전체		(148)	27.0	60.8	47.3	4.1	3.4	2.7
지역	수도권	(104)	35.6	64.4	40.4	4.8	1.9	2.9
	충청강원권	(10)	10.0	50.0	70.0	0.0	10.0	10.0
	호남권	(12)	8.3	75.0	50.0	8.3	8.3	0.0
	경상권	(20)	5.0	45.0	65.0	0.0	0.0	0.0
	제주	(2)	0.0	0.0	100.0	0.0	50.0	0.0
기업규모	1억원 미만	(9)	11.1	55.6	44.4	0.0	11.1	0.0
	1억~3억원 미만	(25)	24.0	72.0	44.0	0.0	4.0	0.0
	3억~5억원 미만	(29)	27.6	51.7	48.3	3.4	6.9	0.0
	5억~10억원 미만	(33)	30.3	60.6	63.6	6.1	3.0	0.0
	10억원 이상	(52)	28.8	61.5	38.5	5.8	0.0	7.7
종사자	5명 이하	(53)	18.9	62.3	50.9	5.7	7.5	0.0
	6~10명	(45)	28.9	53.3	53.3	0.0	2.2	0.0
	11~20명	(32)	34.4	62.5	40.6	3.1	0.0	6.3
	21명 이상	(18)	33.3	72.2	33.3	11.1	0.0	11.1

문항31) 표준계약서 양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다.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2015

디자인전문회사 피해실태조사

발행처의 사전 승인 없이 무단전재를 금하며, 가공·인용할 때에는
한국디자인진흥원, (사)한국디자인기업협회에서 제작한
「2015 디자인전문회사 피해실태조사」라고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2015년 12월 인쇄

2015년 12월 발행

발행처 : 한국디자인진흥원
(1349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Tel. 031-780-2104

(사)한국디자인기업협회
(06088)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02
Tel. 02-3445-5398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